



2022.8.2.

국회입법조사처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2.8.2.

국회입법조사처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 총괄** 강대훈 (경제산업조사실장)
- 분야별 총괄** 고 원 (정치행정조사실장 직무대리)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실장 직무대리)
- 기획 및 조정**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조규범 (법제사법팀장)
형혁규 (외교안보팀장)
박영원 (행정안전팀장)
이은정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세진 (재정경제팀장)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정민주 (국토해양팀장)
한인상 (환경노동팀장)
김정연 (교육문화팀장)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상묵 (보건복지여성팀장)
- 작성** 김준현·허라운·황인욱·정지연·박인환·임재범·임언선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박진웅·정혜진·이수환·송지민·김영국·유영국·최은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양혜자·최정민·김형진·양수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편지은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박소영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편집** 공희정 (재정경제팀 행정실무원)
이혜진 (금융공정거래팀 행정실무원)
장윤진 (행정안전팀 행정실무원)
손혜린 (재정경제팀 입법조사원)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문을 여는 2022년 국정감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여 의원님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시작으로 매년 국정감사를 대비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의원님의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은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9권에 나누어 담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서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못한 사정으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가 누락되어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온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보고서 역시 의미있는 국정감사 주제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가 의원님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만 흠

목 차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 | |
|--|----|
| 국무조정실 | 5 |
| 청년정책 | 5 |
| 공정거래위원회 | 9 |
|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 | 9 |
|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 상이한 법 해석·적용 문제의 해소 :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 관련 | 12 |
|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대응 방향 | 15 |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제도 마련 | 18 |
|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3 |
| 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 | 26 |
| 동의의결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 30 |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 33 |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 36 |
| 동의의결제도 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 38 |
|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41 |
| 효율적인 공정거래 전문교육 기능 확대 방안 | 43 |
|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개선방안 | 45 |
| 순환경제의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 | 47 |
| SNS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50 |
| 금융위원회 | 52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 52 |
|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55 |

| | |
|---------------------------------------|-----|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 57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59 |
|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 62 |
|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 65 |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 68 |
|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 71 |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 74 |
|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 77 |
|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 80 |
|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 82 |
|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 85 |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 88 |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 90 |
|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 93 |
|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 95 |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 97 |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 99 |
|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101 |
| 조직화·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 103 |
| 소액후불결제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106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 108 |
|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0 |
|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 113 |
| 상황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 115 |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118 |
|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 120 |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 123 |
|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 126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128 |
|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 128 |
|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정비 | 131 |
|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 134 |
| 공익신고 보상금 | 137 |
| 부패방지 법률 일원화 | 139 |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142 |
| 국가보훈처 | 144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 | 144 |
| 보훈대상 심사제도 | 147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50 |
| 마이데이터 사업 | 150 |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 153 |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 155 |
|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로부터의 아동 보호 강화 | 157 |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 | |
|----------------------------------|-----|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163 |
|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 165 |

기획재정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 | |
|---------------------------|-----|
| 기획재정부 | 173 |
|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 173 |
|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 176 |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178 |
|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 운영 필요 | 181 |
|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논의 | 183 |
| 협동조합 운영관리 개선 방안 | 185 |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제도 개선 과제 | 187 |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관련 | 189 |
|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논의 | 192 |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 195 |
| 서비스산업 활성화 | 197 |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 199 |
|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 201 |
|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 | 203 |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국제유가 | 205 |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통상 | 207 |
|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 209 |
| 국가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 211 |
| 규제개선과 혁신성장 | 213 |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 215 |
|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 218 |
| 매출에누리과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 개선 | 221 |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 224 |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 226 |



| | |
|-------------------------------|------------|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 | 229 |
|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 232 |
|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235 |
| 법인세제 개편 | 238 |
| 주요국과의 조세부담 비교 | 243 |
|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 247 |
| 법인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세제정책 | 249 |
| 상속세제 과세방식 | 252 |
|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 254 |
|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58 |
| 횡재세 논의현황 및 효과 | 261 |
| 세수추계 오차 개선 | 264 |
| 소득세 세율 및 구간 조정 논의 | 267 |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 270 |
| 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 272 |
|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 275 |
|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 277 |
| 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 280 |
|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 | 282 |
|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 | 285 |
|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 289 |
| MSCI와 WGBI 편입 | 291 |
|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상향조정 | 294 |
| | |
| 국세청 | 296 |
| 주류통신판매 관련 논의 | 296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 299 |
|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방안 | 301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 304 |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방안 | 307 |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 방안 310

관세청 314

관세불복 대응역량 제고 필요 314

조달청 316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제도개선 316

혁신조달 제도 활성화 방안 319

통계청 322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관련 322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제고 324

한국재정정보원 32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327

차세대 디브레인의 안정적인 정착 330

국제원산지정보원 332

FTA-PASS 활용도 개선 등 332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37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338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정무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정무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1 현황

- 기술문명의 전환, 경제 구조의 고도화,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 '20년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점차 청년정책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는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청년정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청년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한시조직이었던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21.6.)함¹⁾
- 향후 5년간('21-'25) 중장기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20.12.)되었고 그에 따른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 수립('21.3.)된 데 이어, 제2차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22.2.~3.)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걸쳐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가 마련되고 각 과제별 소관 부처가 정해짐
 -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1) '19년 5월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이후 국무조정실에 '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의 폭넓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청년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였음

치단체에서는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08개 과제)에 이어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76개 과제)를 수립·집행하고 있음

■ 청년정책 주요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되었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졌고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정책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처별 업무량과 범위가 확대되었음('21년 308개 과제, 약 23.8조원 → '22년 376개 과제, 약 24.6조원)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신설되었고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와 기존에 과단위 조직이 있던 고용노동부에는 팀 단위로 인력이 보강되었음('21.9.)
-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²⁾을 신설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간 협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전담조직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 2021년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를 분야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21.1.1.)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³⁾하였고, 청년들에게 IT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약 13.9만개('20.7.~'21.10.)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
- 주거 분야: 청년 전·월세 부담을 완화를 위한 저리 대출 상품 운용,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운영을 통하여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함
-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였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지원액은 대폭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으며, 교육-일자리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침
- 복지·문화 분야: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⁴⁾ 신설,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도입 등으로 청년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출발 자산 형성을 도움

2) 청년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가장 먼저 신설되었고('15.1.), 세종특별자치시를 끝으로('21.9.) 모든 광역자치체에서 신설됨

3) '21년 10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전체 380,240명이며, 그 중 청년은 235,748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2%를 차지함

4) 청년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지원금 18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식

- 참여·권리 분야: 청년참여 거버넌스 사업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청년위원회(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 및 청년네트워크(청년정책 제안기구)가 증가⁵⁾하였고, 청년참여 거버넌스 권역별 워크숍을 '21년 5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청년의 참여·권리가 확대됨

2 향후 논의 사항

- 2021년은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의 협업으로 청년 정책이 추진되었고,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제1·2차 시행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청년정책이 점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잡아나가고 있음
- 다만, 청년정책의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체감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보다 확대·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집행뿐 아니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청년정책과정을 관리·강화함으로써 추진과제가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평가 시에는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여야 함
 - 또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관계부처 간 협업 시스템 및 중앙·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정책 수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상시 공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SNS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를 적극 홍보하고, 청년 참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별·세대별·지역별로 문제해결 방식을 점차 정교화하는 정책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신규 과제 발굴 시 '2023년 시행계획' 또는 종합대책, 계기별 청년대책 등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과제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함
 - 또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중장기 '기본계획'과의 방향성이 동일한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5) (지자체 청년위원회) 139개, 청년위원 1,115명('20.7.) → 182개, 1,375명('21.7.), (지자체 청년네트워크) 111개, 청년위원 5,166명('20.7.) → 243개, 8,129명('21.7.)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양수란 ☎ : 02-6788-4346

관련부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 : 044-200-6326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

1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법·정책 추진계획을 통하여 꾸준히 밝혀 왔음
-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기본 규범 정립’,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 제도화’를 실천과제 등으로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구분 | | 실천과제 | 추진과제 |
|---------------------|------|-----------------------|---|
|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1 |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기본 규범 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
| | 2022 |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

-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⁶⁾ 제정과 ‘전자상거래법’⁷⁾ 전면 개정에 집중해 왔음
- 이외에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시스

6)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본격화, 2020.9.28. 보도자료.

7)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체계 전면 정비 /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의 실효성 있는 방지와 구제에 역점, 2021.3.5. 보도자료.

템 구축' 등 다양한 법·정책적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음

- 2022.6.17. 기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제정안은 정부안 등을 포함하여 9건의 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양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의 관할권 관련 부침이 있었으며, 그 제개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예규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⁸⁾ 마련하여 행정예고한 바 있음
- 한편, 새 정부는 '자율규제와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규율의 기본 방향임을 국정과제를 통하여 제시함⁹⁾
 - 정부는 플랫폼 정책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¹⁰⁾

2 향후 논의 사항

- 플랫폼 내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기존 경쟁규범의 적절한 작용을 기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EU, 미국,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존 규제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음
 -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 역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범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향후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추진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기존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8) 공정위,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1.6. 보도참고자료.

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06면.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플랫폼 정책,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2022.06.21.

- 플랫폼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범부처 플랫폼 정책 합동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당국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 044-200-4484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 상이한 법 해석·적용 문제의 해소 :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 관련

1 현황

- 최근 공정위는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하여 제재 처분(이하 ‘해상운임 담합 제재’)을 취한 바 있음
 - 2022.1. 공정위는 2003.12.부터 2018.12.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하여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22.6.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2.부터 2019.5.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1.부터 2018.12.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116조]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반면, 「해운법」 제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해운법 제29조 제1항]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 절차적 요건: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제2항)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제6항)

- 내용적 요건: 공동행위 탈퇴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항) 및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금지(제5항) 등

■ 이상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 처분을 두고 공정위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
|-----------------------|--|
| <p>공정거래위원회</p> | <p>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음</p> |
| <p>해양수산부</p> | <p>공정위의 이러한 처분이, ① 사실상 공동행위 폐지에 따른 화주 피해 증가, ② 해외 연쇄 제재와 외교적 마찰, ③ 아시아 역내 해운 네트워크 상실, ④ 수출입 물류 경쟁력 약화, ⑤ 국적선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p> |

■ 한편, 위성곤 의원 등 19인은 2021.7.22. 이와 관련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 동 일부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신설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 제29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선사들의 공동행위 규제 관할은 해수부에 주어지게 됨

2 향후 논의 사항

-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조정되지만, 경쟁이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거나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쟁이 배제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규제로서 이른바 ‘경쟁대체적 규제’에 관한 논의는 해운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와 다른 산업규제당국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상호존중하고 소관 법·해석 적용상 부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필요함
-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의 범위 및 그 기준은 물론 해당 산업규제 규범상의 내용적·절차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실무적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이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간 상이한 법 해석·적용에 따른 문제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 공정위와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와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체계 구축 논의의 병행이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 : 044-200-4576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대응 방향

1 현황

1) 사익편취 규제의 법적 근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¹¹⁾(현행 제47조¹²⁾)는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소속 집단의 총수(동일인)나 그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2013.8.13. 법 개정시 도입됨
 -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적용 요건, 행위 유형 및 적용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음

2)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관련 해석상 쟁점: “부당성”과 “정상가격”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한 해석상 쟁점이 있음
 -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이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과 다르다고 보아 부당성, 즉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총수 일가가 과도한 지분을 가진 회사로 이익이 집중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동 조의 입법과정, 최종적인 법률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목적에 비추어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각 호에서 정한 행위의 총족 여부와 별도로 그와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판단함¹³⁾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해석
 - 법원은 정상가격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이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상가격에 관한 공정위의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95호, 2014.2.14. 시행.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661호, 2022.6.29. 시행.

13) 서울고등법원 2017.9.1. 선고 2017누36153 판결.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함¹⁴⁾

3) 대법원의 최근 판단: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위법”

- 대법원은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¹⁵⁾
 - 대법원은 공정위가 정상거래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음은 물론, 당해 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도모하는 등의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이번 판결은 구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에 관한 것으로,¹⁶⁾ 대법원이 동 조에 따른 ‘부당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대법원은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또한 대법원은 이때의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법원 계류중인 유사 사건의 소송 경과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6.15. 기준)인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14)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9.1. 선고 2017누36153 판결.

15)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16) 공정위 2017.1.10. 의결 제2017-009호 - ‘기업집단 한진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 사건명 | 소송 진행 상황 |
|--|---------------------|
| 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대법원 계류 (고법 승소) |
|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 고등법원 계류 |
|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 대법원 계류 (고법 일부승소) |
|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고등법원 계류 |
|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고등법원 계류 |

2 향후 논의 사항

- 앞서 설명한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위가 2017.9.1.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고등법원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 고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향후 사건절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 여부의 입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화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효적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의 부당성 관련 판시 부분을 관련 심사지침 등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됨
 - 한편,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가 사문화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기되어 온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부당성’ 삭제 주장¹⁷⁾ 역시 관련 규정의 개정 논의에서 고려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 : 044-200-4166

17) 경실련,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2022.5.25.(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제도 마련

1 현황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의 배경과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또는 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말함
 - 원자재 등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한 바 있음¹⁸⁾
-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 5.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한 것이 비하여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하였음¹⁹⁾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률]

(Base : 응답자 전체, n=209, 단위: 개, %)

| 구분 | 사례수 | 평균 |
|------------|------|---------|
| | | 납품단가상승률 |
| [전체] | 209 | 47.6 |
| 업종 | 제조 | 49.5 |
| | 건설 | 28.3 |
| | 서비스 | 28.5 |
| 주사용 원재료 | 금속 | 52.5 |
| | 석유화학 | 54.3 |
| | 펄프 | 31.4 |
| | 기타 | 38.7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2.5., [표 6] 재편집

18)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2022.5.22. 보도자료.

19)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2.5., 4-6면 참조.

[2020년 대비 2021년 납품단가 상승률]

(Base : 응답자 전체, n=209, 단위: 개, %)

| 구분 | | 사례수 | 평균 |
|------------|------|-----|---------|
| | | | 납품단가상승률 |
| [전체] | | 209 | 10.2 |
| 업종 | 제조 | 190 | 10.2 |
| | 건설 | 9 | 8.4 |
| | 서비스 | 10 | 12.0 |
| 주사용 원재료 | 금속 | 115 | 11.8 |
| | 석유화학 | 22 | 7.3 |
| | 펄프 | 11 | 11.1 |
| | 기타 | 61 | 8.2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2.5., [표 7] 재편집

- 한편, 동 의견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0%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이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응답함²⁰⁾
- 관련 논의가 10년 넘게 지속되었음에도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최근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남.²¹⁾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등 입법적 개선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명시적 도입이 아닌 대체적 방안 제시에 그침

20)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결과보고서, 11면. 업종별로 살펴보면,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는 응답이 ‘건설(8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사용 원재료별로 살펴보면 ‘금속(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1) 동 제도에 대하여, ‘인플레이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정부가 가격 보장하면 누가 원가절감 하나…어디에도 없는 반시장·계약자유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제발전한국경제신문, “[시사이슈 찬반토론]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2022.6.20. 기사; 국민일보, “14년 만에 꺼낸 납품단가 연동제… ‘상생 vs 개입’ 팽팽 - 입장 차 커 하반기 추진 안갯속”, 2022.6.21. 기사 참조.

[납품단가 연동제 찬반 의견]

| 찬성 | 반대 |
|-------------------------|--------------------|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분담 필요 | 시장경제원리에 위배 |
| 협상력 차이로 자율조정 사실상 불가능 | 소비자 피해 우려 |
| 불공정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 | 담합 우려 |
| 수급사업자가 성장해야 원사업자도 성장 | 해외로의 거래처 변경 가능성 증대 |

2)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및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 제20대 대선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새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음²²⁾
-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이 모두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2021.11.3. 김경만 의원 등 19인²³⁾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6)을 발의함
 - 동 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022.6.9. 강민국 의원 등 10인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 개선 및 대·중소기업 상생의 보다 근본적 정착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43)을 발의함
 - 동 개정법률안은 거래당사자 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이른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의6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22.4.8. 김정재 의원 등 10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22)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64면. 과제목표: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주요내용: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협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 개선.

23) 김경만 의원 등 19인은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13099)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74)을 발의함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22.6.14. 정태호 의원 등 10인은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원재료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906)을 발의함
 - 동 개정법률안은 별도의 조정신청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할 경우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위·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주요 원료 가격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향후 논의 사항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도급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경우, 연동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 상승의 기준, 연동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당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여 합의된 사항을 시행령상 반영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 논의가 필요함

- 한편, 동일 또는 유사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무 부처가 다른 법률 개정안에 담고 있는 만큼 동 제도 운영의 소관 부처 문제와 함께 제도 전반의 기준, 양 법률 간의 해석, 적용상 관계에 대한 조율에 필요한 논의가 요구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 044-200-4584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 현황

-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써 수사의 단서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²⁴⁾ 만약 법률상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고발은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추요건이 됨²⁵⁾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의하면 동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²⁶⁾ 이를 통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함²⁷⁾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를 근거로 산출한 점수 기준으로 고발여부 판단함(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²⁸⁾
 - 공정위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됨
- 소추요건으로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지만, 반면 공정위의 고발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음
 - 공정위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과다하게 행사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공정위 전속고발권 행사에 관한 상반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그 폐지가 주장되기도 하였음
 - 2013년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

24) 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458 판결.

25) 권오승·홍명수, 「경제법」(제14판), 법문사, 2021, 439면.

26) 공정위 소관 법률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공정위 예규 제379호, 2021.12.20. 시행)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27)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36 결정.

28) 공정위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으로 확대하는²⁹⁾ 동시에, 이들의 고발요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제도’를 도입함

- 다만, 의무고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 기관의 고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왔음
 - 중소기업기업부, 조달청 등의 소극고발요청이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음³⁰⁾
- 의무고발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의무고발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 연도 | 접수(건) | 처리완료(건) | | | 검토 중(건) |
|-------|-------|---------|-----|----|---------|
| | | 고발요청 | 미고발 | 계 | |
| 2014년 | 5 | 5 | | 5 | - |
| 2015년 | 6 | 6 | | 6 | - |
| 2016년 | 3 | 3 | | 3 | - |
| 2017년 | 5 | 5 | | 5 | - |
| 2018년 | 7 | 7 | | 7 | - |
| 2019년 | 10 | 10 | | 10 | - |
| 2020년 | 20 | 20 | | 20 | - |
| 2021년 | 13 | 13 | | 13 | - |
| 2022년 | 1 | 1 | | 1 | - |
| 계 | 70 | 70 | | 70 | |

〈출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 이러한 이유로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 사업자, 유관 단체 등이 자유롭게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됨³¹⁾

29) 강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이슈와 논점」제119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7., 2면: “이들 기관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경쟁정책 이외의 관점에서 고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검찰이 보유한 고발요청권과의 차이점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중소기업계에 미친 피해 정도(중기청),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조달청), 사회적 파급효과(감사원)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0) 아시아경제, [2020국감] 中企 피해 ‘의무고발요청’ 고발률 9.4% “적극 행사해야”, 2020.10.8. 기사; 이데일리, [2021국감] “의무고발요청제도, 유명무실…조달청 소극행정 결과”, 2021.10.5. 기사. 반면 2021년에는 중기부의 고발요청 남발을 지적하는 기사가 확인되기도 함. 더중앙, [단독]중기부, 기업 부담 늘리는 ‘고발요청’ 남발…3.5배 급증, 2021.8.16. 기사.

31) 강지원, 앞의 보고서, 1면.

| 전속고발권 찬반의 요지 |

| 유지 입장 | 폐지 입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 ● 형사적 제재의 통제가 어려움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일 경우 헌법상 보장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 현재(2022.6.2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위 소관 법률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8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 한편, 새 정부 역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³²⁾
 - 심각한 반칙 행위에 대한 원칙적 고발 및 객관적 고발 기준 마련
 -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 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2 향후 논의 사항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개선 또는 폐지 요구가 지속되어 오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실무적 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함
 - 공정위의 고발 여부 판단을 위한 법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고시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출 점수 기준(1.8점)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고시와 지침의 개정이 요구됨
 - 의무고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화가 어려웠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와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 간 낮은 수준의 협력(MOU 등)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 044-200-4171

3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63면.

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

1 현황

-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상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다크패턴(Dark Pattern, 소위 ‘소비유도상술’ 또는 ‘눈속임 설계’)에 대한 보편적이며 합의된 정의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속성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음³³⁾
 - 다크패턴 디자인은 이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이너인 Harry Brignull이 2011년 제시한 개념으로 ‘그 속성상 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인식됨
 - 다크패턴은 일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내리지 않았을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UI)로 볼 수 있음³⁴⁾
 - 이처럼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방식 또는 은밀한 조작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즉, 이용자 내지 소비자 기만행위로서 성격을 가짐³⁵⁾
- 온라인 내지 모바일을 통한 거래 규모의 급속한 증가 상황에서³⁶⁾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다크패턴 이용실태와 그 피해 상황의 파악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음

| 온라인쇼핑 거래액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증감율 | |
|----|---------|---------|---------|---------|------------|-------|
| 기간 | 1/4분기 | | | | 전년 동 분기 대비 | |
| 대상 | 온라인 | 모바일 | 온라인 | 모바일 | 온라인 | 모바일 |
| 수치 | 368,301 | 247,966 | 446,917 | 313,169 | 21.3% | 26.3% |

33) OECD, Roundtable on Dark Commercial Patterns Online – Summary of discussion, 2021.2.19., pp. 4-5.

34) OECD, Ibid, p. 4.

35) OECD, Ibid, p. 4; 국무조정실·공정위 공동발표, 비대면·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 위한 청사진 발표, 2020.12.30. 보도자료, 2면.

36) 한국소비자원,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 2021.6., 3면(표 2-1). 한편, 정보통신연구원[모바일앱 카테고리별 시장구조 및 이용시간의 변화(2019년~2020년), 2021.3.]에 의하면 2020년 모바일앱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총 이용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크패턴은 Harry Brignull, Conti & Sobieski, Colin M. Gray 등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유형이 분류되어 왔으며,³⁷⁾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그러한 분류 체계에 기초해 다크패턴을 12가지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조작화하여³⁸⁾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 유형 | 속성 | 다크패턴 유형의 조작화 |
|---------|----------------|---|
| 가격비교 방지 | 제한 정보은닉 | 쇼핑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배치하여 가격 비교를 방지하는 것으로 첫 화면에서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아닌 브랜드나 입점 쇼핑몰로 순위를 매기는 것 등 |
| 강제 작업 | 제한 | 잠금 해제를 위해 N초 동안 동영상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광고를 제거하려면 유료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
| 개인정보 공유 | 비대칭/제한 정보숨김 |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 |
| 미끼와 스위치 | 기만 | 상세설명을 보려고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로 연결되거나, 상품 페이지를 눌렀으나 다른 앱 설치로 연결되는 것 |
| 사회적 증거 | 은밀 기만 |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후기, 협찬 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후기 삭제, 친구 초대 시 이익을 제공받기 등 사회적 관계성을 이용함 |
| 선택 강요 | 비대칭 | 가입 거절이나 정기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려고 할 때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되물으며 거절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 |
| 속임수 질문 | 비대칭 은밀 |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약관 외 선택 약관도 동의하기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마케팅 알람 수신이 기본으로 설정된 것 |
| 숨겨진 가격 | 정보은닉 | 광고 첫 화면과 달리 최종 결제단계에서 배송료나 세금,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것 |
| 자동결제 | 정보은닉 기만 | 무료 또는 할인서비스 이후 사전고지 없이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것 |
| 주의집중 분산 | 은밀 | 더 비싼 제품이 기본으로 설정됨(사전 선택),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는 옵션은 작거나 흐린 글자, 구입 옵션은 굵거나 큰 문자 또는 화려한 색상(시각적 간섭) |
| 해지 방해 | 제한 | 정기구독 상품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추는 경우, 앱 내에서 해지가 안 되는 경우, 가입은 쉬우나 탈퇴는 앱에서 어려운 경우 등 |
| 압박 판매 | 은밀/기만 정보은닉 | 판매 완료, 세일 완료, 재고 부족, 높은 수요, 남아 있는 상품 1개, 등 이용자들이 구매에 충동을 느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소비자원의 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결과 100개의 모바일앱에서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어, 각 앱 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⁹⁾

37) 이에 관하여는 한국소비자원, 앞의 실태조사, 5-7면.

38) 한국소비자원, 앞의 실태조사, 13-14면(설정 알람 또는 광고 등의 단순팝업 등 반복간섭형 유형은 동 조사에서제외, 한 앱당 동일 유형의 다크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더라도 1회 적용으로 표시).

39) 한국소비자원, 앞의 실태조사, 14-15면.

- 조사대상 100개 앱 중 97%(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으며, 각 앱 당 다크패턴이 한 개도 없는 경우부터 최대 6개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 개의 앱에서 다크패턴이 1개 포함된 앱은 13개(13%), 2개 포함된 앱은 27개(27%), 3개 포함된 앱은 35개(35%), 4개 포함된 앱은 15개(15%), 5개 포함된 앱은 6개(6%), 6개까지 포함된 앱은 1개(1%)였음
 - 앞서 제시한 12개 유형의 다크패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 유형으로 53개(19.8%)였으며, ‘자동 결제’ 유형 37개(13.8%), ‘선택 강요’ 유형 28개(10.4%), ‘해지 방해’ 유형과 ‘압박 판매’ 유형이 각 27개 (10.1%), ‘사회적 증거’ 유형이 25개 (9.6%)로 조사됨

■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미 다크패턴의 문제를 인식하고 규범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⁴⁰⁾

- EU의 경우, 2022.4.23. EU 의회와 이사회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최종안 제39조의a를 통해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DSA 합의안 도출에 한 달 정도 앞선 3월 2일 EU 데이터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에 관한 지침: 이를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Guidelines 3/2022 on Dark patterns) 초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민주당 Mark Warner, 공화당 Deb Fischer 의원 등이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IT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 이용자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 DETOUR Act)이 2019.4.9. 발의된 바 있으며, 2023.1.1.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CPRA)은 다크패턴을 통해서는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가 확보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다크패턴의 속성상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음

- 이용우 의원 등 13인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유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제8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950)을 2022.6.14. 발의하였음

40) 우리나라의 경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의 적극 시정계획을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밝히 바 있다.

2 향후 논의 사항

-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이용자 기만적 속성을 가진 온라인 거래상의 행위로서 다크패턴 유형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더라도 법적 규제가 요구되는 유형과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하여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경우라도, 금지행위로 포섭하기 위한 구성요건, 위법성 판단의 표지 및 금지유형 등을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만적 속성을 지닌 온라인 거래상의 다양한 상술들을 다크패턴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포섭하여 단일한 법률에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행위의 속성을 엄밀히 따져 개별 법률로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됨
 - 다크패턴의 속성상 전자상거래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규제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크패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기만적 이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 내지 소비자 피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사업활동방해 등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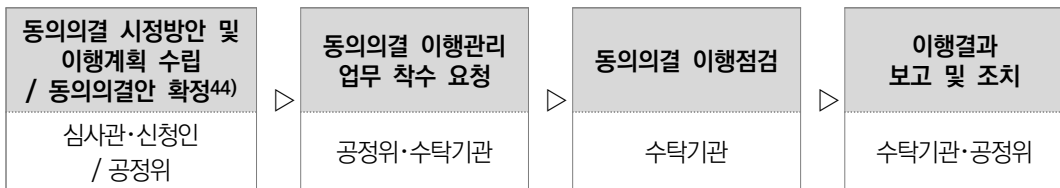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 044-200-4469

동의의결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1 현황

- ‘동의의결이행관리’(이하 ‘이행관리’)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이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함⁴¹⁾
 - 동의의결 확정 후 그 이행의 효과성 내지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였음⁴²⁾
 -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의 균형 그리고 동의의결안의 내용적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동의의결안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따라서 ‘신청인의 자발적 시정조치 이행 담보를 위한 후속조치 단계’로서 이행관리는 동의의결제도의 본래적 취지 구현을 위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음⁴³⁾
- 2020.4.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음(법 제90조 제7항)
 - 이행관리 업무 내용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규칙’) 제14조의2 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밖에 공정위가 원활한 이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이에 포함됨
 - 동 이행관리의 일반적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동의의결 이행점검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수행하고,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안내 - 동의의결 이행관리: <http://www.kofair.or.kr/newp/ConsentOrder.jsp> 참조.
 42) 한국경제, ‘기업에 뒤통수 맞은 공정위… SAP코리아 허위 동의의결 논란’, ’17.10.31. 기사; 경향신문, ‘불공정거래에 일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20.8.23. 기사; 전자신문, ‘ICT 분야 동의의결 올해 첫발…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사후관리’ 필수’, ’20.8.24. 기사 등 참조.
 43) 유영국,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실효적 운영을 위한 보완 방안”, 「경쟁법연구」 제45권, 한국경쟁법학회, 2022, 318면.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외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행관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지고 있음
 - 이른바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⁴⁵⁾ 이행관리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임
 - 최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하여 공정위가 절차 개시를 결정한⁴⁶⁾ 만큼 수탁기관에 의한 본격적 이행관리를 기대할 수 있음
- 수탁기관으로서 조정원과 소비자원은 이행관리 업무의 수탁에 앞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관리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신설을 예정 중임

2 향후 논의 사항

- 수탁기관에 의해 이행관리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 법률 및 절차규칙의 보완을 위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됨⁴⁷⁾
 - 이행관리업무의 위수탁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절차규칙 상으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이에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행관리업무 위탁의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절차규칙은 공정위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에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제공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3년에 이르는 짧은 이행 기한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의 효과성 유지를 위하여 이행관리 단계에 있더라도 신청인 스스로 그 시정방안과 이행계획 일부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필요
 - 심사관과 신청인 간 시정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수탁기관장의 실무적 판단 내지 의견제시의 절차적 보장 필요⁴⁸⁾

44) 공정위는 법 제90조 제7항에 의하여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는 의결서 주문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명시하게 된다.

45)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2.5.31. 보도참고자료

46) 공정위,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2.6.7. 보도참고자료.

47) 유영국, 앞의 글, 327-333면 참조.

48) 이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시정방안과 이행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다 적절한 이행점검 방식의

- 이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행관리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동의를결 확정 시 당해 의결서에 이행관리기관을 특정 하면서 이행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⁴⁹⁾ 명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상 1일당 2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규모가 큰 사업자,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이를 관망하자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 한 동의를결 이행의 강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⁵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보완 및 그 상한의 상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 : 02-6788-4587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 : 044-200-4166

마련이 가능해짐. 유영국, 앞의 글, 330-331면.

49) 이와 관련하여, 동의를결 신청인과 이행관리인·이행관리기구가 체결하는 이른바, 이행관리 계약(Monitor Agreement)을 통해 당해 계약상 의무 수행에 따른 '비용'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행관리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나 이행관리기관의 업무상 피해에 대한 신청인의 배상 의무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50) 박세환, “동의를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제2세션 토론문(미공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2021.12.10., 자료집 93-94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현황

-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함께 발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2022년 5월 1일, 공정위는 총 76개의 기업집단을 지정하였는데, 그 중 자연인 동일인이 있는 기업집단은 총 66개, 법인인 동일인이 있는 기업집단은 총 10개임⁵¹⁾

| 2022년 동일인이 자연인 또는 법인인 기업집단의 현황 |

| | | |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 40개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한진, 카카오, 두산, 엘에스, DL, 부영, 중흥건설, 미래에셋, 네이버,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하림, 에이치디씨, 효성, 영풍,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호반건설, SM, 넷마블, 케이씨씨, 넥슨, DB, 태영, 코오롱,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
| |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 | 7개 |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에이치엠엠, 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
| 공시대상 기업집단 |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 26개 | 태광, 금호석유화학, 장금상선, 동원, 한라, 삼천리, 다우키움, 아모레퍼시픽, 엠디엠, 동국제강, 크래프트, 삼양, 애경, 대방건설, 중앙, 하이트진로,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유진, 보성, KG, 아이에스지주,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
| |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 | 3개 |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지엠 |

-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게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를 부여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4장의 범위), 동일인을 기점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계열회사 등(동일인관련자⁵²⁾)의 범위를 정하여 기업집단 규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한

51)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 5대 집단 내 순위 변동, 해운·건설·정보기술 집단 순위 상승 및 PEF 전업집단 제외 -”, 보도자료 <별첨 1>, 2022.4.27.

5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각호는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다는 점에서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동일인”의 개념은 공정거래법에 명시적으로 그 의미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업집단 정의 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법인) 또는 회사가 아닌 자(자연인)로 추정하고 있음(동법 제2조제11호각목)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가 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은 소위 ‘총수’라고 불리는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임
-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범위 확정에 핵심이 되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의 지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지분율 기준’과 ‘지배력 기준’으로 나누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지분율 기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무의결권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출자자로 되어 있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지배력 기준)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⁵³⁾

2 향후 논의 사항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기점으로 기업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일인의 개념의 마련, 기업집단 현실을 고려한 동일인 지정요건의 보완, 동일인 지정에 대한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과 관련하여 향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일인 정의 마련 및 지정요건의 보완)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뿐만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53) 한편, 대법원은 ‘지배’의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아니라 현재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부합한 동일인 지정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일인이 3-4세로 승계됨에 따라 동일인의 지분을 및 지배력이 희석되고 있는 점,⁵⁴⁾ 동일인보다 지분이 많은 기관투자자가 출현하고 있는 점 등 기존의 '사실상 지배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⁵⁵⁾
- 특히,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집단의 외국 국적 특수관계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무적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⁵⁶⁾
-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 기업집단이 동일인 변경의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⁵⁷⁾
 -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실상 다른 자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집단이 동일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공정위가 동일인을 확정하지 못해 전체 대 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었음⁵⁸⁾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 044-200-4849

54) 최은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2019.8.7., 3면.

55) 신영수,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 2022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22.6.13., 46면.

56) 기사, “공정위, ‘쿠팡 딜레마’ 용역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2022.4.8.,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4071524548760102068>>, 최종방문일 2022.6.23. 등

57)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법경제학회, 2020.12., 577면.

58) 기사 “한진그룹, 차기 총수 놓고 이견…공정위, 동일인 지정 연기”, 2019.5.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08000748>>, 최종방문일 2022.6.23.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1 현황

-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대규모’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정부가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정부의 지원과 특혜 받은 소수의 기업이나 기업집단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정 과정에서 마련됨⁵⁹⁾
-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자산규모 → 순위 → 자산규모)해 왔으며,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시행 2021년 12월 20일)⁶⁰⁾을 통해 현재의 형태를 마련하게 되었음⁶¹⁾

|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화 |

| 연도 | 1987 | 1993 | 2002 | 2009 | 2016 | 2017 | 2020 |
|--------------|----------|----------|------|------|-------|------|-----------|
| 기준 | 자산규모 | 순위 | 자산규모 | | | | |
| 공시대상 기업집단 | - | | | | | 5조 원 | |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4,000억 원 | 30대 기업집단 | 2조 원 | 5조 원 | 10조 원 | | GDP의 0.5% |

자료: 최은진·이수환(2022)

- 그동안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지정기준으로 두는 방식은 그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적절한 자산총액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환경의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59)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법문사, 2022., 527면.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61) 최은진·이수환,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이슈와 논점」 제1957호, 2022.6.9., 2면.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GDP)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주장이 2020년 법 전부개정에 반영된 것임⁶²⁾

2 향후 논의 사항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장기적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 전 지정기준의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플랫폼 및 IT 등 혁신 산업 분야의 기업집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2022년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IT 주력집단들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순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⁶³⁾
 - 카카오(2016년 최초 지정, 65위 → 현재 15위), 네이버(2017년 최초 지정, 51위 → 현재 22위), 넷마블(2018년 최초 지정, 57위 → 35위), 넥슨(2017년 최초 지정, 56위 → 39위)
- 특히, 플랫폼 및 IT 주력집단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덜해지고 있음에 따라, 자산규모 외에 다양한 지표를 기업집단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⁴⁾
 - 예컨대,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수나 계열회사 수, 주요 플랫폼의 영향력의 크기, 기술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유 정도 등이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보완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 : 044-200-4849

62) 최난설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상사법 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6면.

63)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 5대 집단 내 순위 변동, 해운·건설·정보기술 집단 순위 상승 및 PEF 전업집단 제외 -”, 보도자료, 2022.4.27., 11면.

64) 신현윤·홍명수·강상엽, 『대기업집단 규제론』, 법문사, 2022, 119면.

동의의결제도 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1 현황

-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공정거래법 제89조)
 - 동의의결의 절차는 ① 동의의결의 신청 → ② 개시여부 결정 → ③ 동의의결안(잠정) 결정 → ④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⑤ 동의의결안(최종) 확정 → ⑥ 이행관리 순으로 진행됨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외에 표시광고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제7조의2, 2014년 신설), 2021년 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하도급법(제24조의9, 2022.7.12. 시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2022.7.5. 시행),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2022.7.5.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2022.7.5. 시행)의 개정으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음
- 동의의결제도는 규제당국인 공정위의 입장에서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일방적인 시정조치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및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 등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⁶⁵⁾
 -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쟁당국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동의의결로 마련된 시정방안이 실행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경쟁당국이 정식절차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근절보다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적당히 타협하여 업무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존재함⁶⁶⁾
- 이에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각 사건별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 검찰과 사전

65) 신현윤, 「경제법(제8판)」, 법문사, 2020, 385면.

66)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제5판)」, 법문사, 2022, 754면.

협의를 해야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⁶⁷⁾

-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어 만 10년이 지났으며, 2014년 표시광고법에도 도입되어 동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재 기준으로 총 19개 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인용 10건, 기각 9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⁶⁸⁾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플랫폼 및 IT 분야 등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과 간의 비교형량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사건조사나 심의·소송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⁶⁹⁾
-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온 이행관리 부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정원 및 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⁷⁰⁾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인용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⁷¹⁾하는 등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동의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성 공동행위의 경우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공동행위는 그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성 공동행위⁷²⁾는 제한하되 연성 공동행위⁷³⁾는 동의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⁷⁴⁾

67) 신현윤, 앞의 책(2020).

68)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22.6.24.

69) 김형배,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전면개정판)」, 도서출판 삼일, 2022, 1007면.

70)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71)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 2022.5.31.

72)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공동행위의 유형 (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 시장·고객의 할당 등)

73)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유형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 (동의를결 기각결정 사건에 대한 판단 근거 공개) 현재까지 동의를결 신청 건수 자체가 적은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률 저조의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동의를결이 인용된 사례뿐만 아니라, 기각된 사례의 경우에도 공정위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동의를결의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⁵⁾
- 동의를결의 수용 여부가 공정위의 재량사항이라 하더라도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국의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과
☎ : 044-200-4131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 74) 한편, 동의를결제도의 장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분야의 하나인 공동행위를 배제시킴으로써 손해배상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공동행위를 모두 일괄적으로 동의를결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현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신영수, “동의를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문, 한국경쟁법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9.28., 20면.
- 75) 최난설현, “최근 동의를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2022, 한국상사법학회, 536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현황

-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73조)
 - 현재 조정원이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로는 공정거래법(일반 불공정거래행위⁷⁶⁾),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음⁷⁷⁾
- 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사건은 종료되며,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⁷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동법 제78조)
 - 공정위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해서는 안되며(동법 제77조제6항),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는 면제됨(동법 제78조제4항)
- 한편, 공정위는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의 대리점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원 외에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도 조정신청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⁷⁹⁾
 - 이에 공정위는 조정원과 4개의 지자체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기관 간 일관성이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이하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음⁸⁰⁾

76) 공정거래법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제1항)에 한하여 분쟁조정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77)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과별로 총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78)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 쌍방은 분쟁조정 효력에 구속되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수락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함.

79)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보도참고자료, 2019.2.1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부산시 이양 확대”, 보도자료, 2020.2.10.

8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 2022.4.7.

2 향후 논의 사항

- 공정위에서 마련한 운영지침안은 크게 △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 신청의 보완 절차, △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 조사 방법, △ 조정 현황 통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⁸¹⁾ 각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구체적 절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 운영지침안은 분쟁조정 업무의 운영지침 등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두고 있다는 점, △ 아직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누적된 분쟁조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최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해 일관적인 분쟁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됨
- 이에 그동안 많은 조정 사례로 축적된 조정원의 조정 노하우 등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⁸²⁾
 - 조정원의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이후 2020년도까지 연속으로 3,000건(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 가맹, 약관, 대리점, 유통 분야 합계)이 넘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분쟁조정 성립률 또한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⁸³⁾
- 참고로, 조정원은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분쟁조정 사례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⁸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확대하여 조정원과 각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사례뿐만 아니라 분야별·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핵심이 되는 분쟁조정 기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 044-200-43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총괄팀
☎ : 02-6363-9240

81) 공정거래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82) 최은진,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2021.12.9.

8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보도자료, 2021.2.10.

84)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홈페이지, <<https://fairnet.kofair.or.kr/case/index.do>>, 최종방문일 2022.6.24.

효율적인 공정거래 전문교육 기능 확대 방안

1 현황

- 공정위는 경쟁정책 운영의 일환인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 확산 유도⁸⁵⁾’의 방안으로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12항 및 제13항)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포함 관련 법률에 중요한 개정 또는 심결(판결)이 있거나 특정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이해 제고와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⁸⁶⁾
 -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 교육, 2022.3.29. 실시
 -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2020.12.24. 배포
 -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카르텔 예방교육, 2018.11.2. 실시
- 한편, 조정원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 전문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2011년부터 실시·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구제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의 인식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⁸⁷⁾
 - 2021년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수행하였음
 - 가맹분야 재발방지 및 피해예방 교육, 영세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대상, 21회 실시
 -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221명), 11회 실시
 - 공공기관(6개 기관, 168명) 대상 공정거래교육 실시

2 향후 논의 사항

- 공정위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이해 제고와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자체적으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 등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

8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경쟁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86) 공정거래위원회, “2022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2022.1.5., 7면.

8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022.1.21., 2면.

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현재 조정원이 실시하고 있는 공정거래교육의 교육내용은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기관으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진 횟수 또한 적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조정원 홈페이지의 공정거래교육 안내에도 구체적인 교육의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 없이 공정거래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는 문제도 있음⁸⁸⁾
- 향후 조정원이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기관으로서 공정위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경쟁 자율 준수 문화의 확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자 맞춤형 교육 등을 개발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정원의 핵심업무가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등이며, 현실적으로 교육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과 부족한 내부 인력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시장경제교육원'을 운영하여 매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특화된 약 60개의 오프라인 및 약 4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교육이수명령에 따른 준법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공정거래 전문 교육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⁸⁹⁾
 - 협력 추진 방안으로는, 분쟁조정 또는 동의를결 이행관리 등 조정원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내용은 조정원의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그 외의 공정거래 분야 전반의 교육 등은 협력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

| | |
|-------------|--|
| 작성자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 044-200-43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교육홍보팀 ☎ : 02-6363-9161 |

8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업무안내 > 공정거래교육, <<http://www.kofair.or.kr/newp/Education.jsp>>

8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s://edu.kfcf.or.kr/>>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개선방안

1 현황

-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및 결정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분쟁조정을 마쳐야 함(동법 제65조)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66조)
 -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은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당사자의 요구’, ‘현장조사’,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자문’, ‘시험검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27조제2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 내용 및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소비자기본법」 제67조)
 - 만약,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소비자원의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음⁹⁰⁾

|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일)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5. |
|--------|-------|-------|-------|-------|---------|
| 신청건수 | 3,147 | 3,392 | 5,265 | 4,803 | 1,781 |
| 처리건수 | 3,081 | 3,608 | 4,407 | 4,229 | 2,058 |
| 미결건수 | 1,283 | 1,073 | 1,931 | 2,505 | 2,228 |
| 평균처리일수 | 97 | 83 | 80 | 109 | 110 |

자료: 한국소비자원(2022)

90)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22.6.20.

2 향후 논의 사항

- 소비자원에서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의 평균처리일수는 ‘2018년 97일, 2019년 83일, 2020년 80일, 2021년 109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정을 종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은 신유형 소비의 증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처리량이 따라가지 못한 미결 건이 누적 증가된 결과로 통계상 평균 처리일수가 증가하였다고 밝혔음⁹¹⁾
 - 2019년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건은 3,392건, 2020년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건은 5,26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신청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관련 품목 접수가 폭증한 점을 들 수 있음⁹²⁾
- 그러나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건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분쟁조정 평균처리일수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30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함
 - 한편, 최근 복잡한 유형의 분쟁조정 유형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 전문 인력의 충원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 044-200-441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 : 043-880-5554

91) 한국소비자원, 국회입법조사처 요청자료, 2022.6.20.

9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례 100선”, 2020, 24면.

순환경제의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

1 현황

-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구조 하에 다량의 폐기물 발생, 자원고갈 및 공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 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⁹³⁾
 - 순환경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되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 ‘대량생산 - 소비 - 수리 - 재사용 - 재활용 - 대량생산’의 순환구조를 추구하고 있음
-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순환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위해 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소비자 수리권(right to repair)”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⁹⁴⁾
 - (EU) 2020년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제품의 설계, 소비자의 역할, 생산 공정들에서의 순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⁹⁵⁾ 최근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⁹⁶⁾과 「소비자 권리지침(Consumer Right Directive)」 및 「불공정상관행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rective)」을 개정⁹⁷⁾하여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미 상원·하원 등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소비자 수리권 관련 보장과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음⁹⁸⁾

93) 기사, “소비자의 수리권, 고장난 스마트폰 집에서 고칠 수 있을까?”, 2022.5.4.,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4>>, 최종방문일 2022.6.2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10대 국정과제”- 89면, 2022.5.3., 154면.,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26면.

94) 김재영,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논의동향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14호, 한국소비자원, 2021.6.29., 10-14면.

95) EU Commission,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2020.3.11.

96)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21 of 1 October 2019.

97) 이승진,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 발제문, 2022.7.22., 39면.

98) 박소영·김경민,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10호, 2021.10.12., 7면.

-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 FTC에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명령을 내림
- FTC 소비자 수리권 보장 관련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채택 : 미국 독점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수리권 제한 사례 조사 및 관련 조치 강구 계획 마련
- 미 상원·하원 : 전자제품 분야 소비자 수리권 보장 관련 법안 발의
- 뉴욕주 “디지털 공정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 Senate Bill S4104A)”, 미국 최초로 주의회를 통과(2022.6.3.)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우리나라 또한 소비자 수리권의 내용을 일부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 대부분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설명서 제공 등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 신설하고자 하는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각기 다른 법령과 소관위원회에 마련되어 있어 법적 체계 정합성이 미흡한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소비자 수리권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 제안자 | 의안번호 | 발의 법안 및 내용 | 소관위원회 |
|-------------|---------|--|---------------|
| 임이자의원 등 10인 | 2115831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환경노동위원회 |
| 송옥주의원 등 10인 | 2111207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
| 김상희의원 등 10인 | 2112523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핸드폰 제조업자의 부품 공급 및 판매 의무 등을 신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강은미의원 등 11인 | 2113302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 수리권의 정의 및 사업자의 제품설명서 및 부품 공급 의무 등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
| 조수진의원 등 11인 | 2115160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 부과 하는 규정 신설 | 정무위원회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한편,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비자의 권리로서 수리권 행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⁹⁹⁾ 중 하나로 소비자 수리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예컨대, 「소비자기본법」 제4조제2호의 “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물품등을 선택·사용·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향후 구체적인 순환경제 정책이 환경, 산업, 소비자 측면(제품설계-제조·생산-유통·판매-소비-수리·재사용)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간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추진 및 법집행 등 과정에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EU가 「에코디자인지침」은 EU집행위원회 환경총국에서, 「소비자권리지침」과 「불공정 상관행지침」은 EU집행위원회 소비자총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 044-200-4414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 : 043-880-5682

99) 「소비자기본법」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SNS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현황

- 소셜미디어의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SNS 플랫폼 내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인플루언서의 게시물 작성 및 SNS 후기 등)은 기존 광고에 피로감이 누적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¹⁰⁰⁾
 - 실제로 한국갤럽의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SNS 후기가 TV광고 또는 매장광고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⁰¹⁾

| 상품구매 선택에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 |

| 구분 | 가격 | 성능 | 디자인 | 브랜드 | SNS후기 | TV광고 | 매장광고 |
|----|------|------|------|------|-------|------|------|
| 점수 | 4.19 | 4.17 | 3.94 | 3.74 | 3.53 | 3.25 | 3.04 |

주 : 상품구매에 선택을 주는 영향에 대해 1점(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영향을 준다)으로 응답
자료: 한국갤럽(2018)

-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¹⁰²⁾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¹⁰³⁾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월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가 16.8건으로 2016년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⁰⁴⁾

| SNS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10. | 합계 |
|-------|-------------|-------------|--------------|---------------|---------------|---------------|-----|
| 인스타그램 | 13 | 49 | 67 | 120 | 138 | 99 | 486 |
| 페이스북 | 19 | 35 | 39 | 19 | 23 | 20 | 155 |
| 유튜브 | 0 | 0 | 2 | 9 | 30 | 49 | 90 |
| 합계 | 32 (2.7) | 84 (7.0) | 108 (9.0) | 148 (12.3) | 191 (15.9) | 168 (16.8) | 731 |

자료: 한국소비자원(2022)

- 100) 송봉현, "표시광고법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경제법연구」 제19호, 한국경제법학회, 114-115면.
101)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2.2.; 한국갤럽, "인스타그램 광고 관련 소비자인식 조사". 2018.12.
102)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임.
103)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건 제목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입력한 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사례를 기준으로 상담 건수를 집계하였음.
10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위의 보도자료(2022).

-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에 대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 응답자의 약 52%는 SNS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부당광고가 많은 편이며, △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 사용 경험과 관련하여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약 24.8%(1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¹⁰⁵⁾

2 향후 논의 사항

- 한편, SNS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와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적발 및 시정을 위하여 공정위 및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율시정과 부당광고 신고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SNS의 부당광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69.9%, 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62.5%, 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41.5%, 156명)’의 답변 결과가 나왔음¹⁰⁶⁾
- 공정위 및 소비자원의 상시 모니터링으로만으로는 신속한 적발에 이은 SNS 부당광고의 시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당광고를 발견하였을 때 그 신고 방법과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부당광고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
|------|--|
| 작성 자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은진 ☎ : 02-6788-4586 |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 044-200-4425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 : 043-880-5712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교육기획팀 ☎ : 043-880-5733 |

105) 한국소비자원은 2021.11.5. - 2021.11.12.의 기간(약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위의 보도자료(2022).

106)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위의 보도자료(2022).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1 현황

■ 착오송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2021. 1. 5. 법률 제17878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음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증가¹⁰⁷⁾하였으며,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소송¹⁰⁸⁾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음
-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한 후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2.5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9,836건(145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¹⁰⁹⁾

- '22.5월말 기준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2억원을 회수¹¹⁰⁾하여 소요비용¹¹¹⁾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8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착오송금반

107) 예금보험공사, 2021 연차보고서, p.89. 착오송금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018년 13만 4천건(2,965억원), 2019년 15만 8천건(3,203억원) 2020년 20만건(4,64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108) 송금액 1백만원 기준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 60만원 이상 소요

109)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예보, '22.5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022.6.20.

110)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급명령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함

111)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지원신청 중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22.5월말 기준 51.6%에 해당함

- 제도 도입 이후 월 평균 반환지원 신청자는 900명 수준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제도 도입시 연간 적용대상으로 추산한 5만3천명¹¹²⁾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신청인의 절반 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¹¹³⁾
-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¹¹⁴⁾은 96.0%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며,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41일, 지급명령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
 - 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액심판(3천만원 이하) 기준 소 제기부터 승소시까지 최소 6개월(사실조회 2개월+본안소송 4개월 이상)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수준(자진반환의 경우 2주~1개월 이내, 지급명령 단계에서 회수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비해서는 미진한 상황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 |

('22.5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 건 | 금액 |
|------------|----------|-------|--------|
| 반환지원 현황 | 신청 총계 | 9,836 | 14,482 |
| | ① 지원 대상* | 4,459 | 6,149 |
| | ② 심사중 | 624 | 828 |
| | ③ 지원 비대상 | 4,753 | 7,505 |
| 반환현황 | 반환 총계 | 2,964 | 3,719 |
| | 자진반환 | 2,858 | 3,518 |
| | 지급명령 | 106 | 201 |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건
 자료: 예금보험공사

2 향후 논의 사항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수를 확대하고,

112)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 8.2만건 중 5만원~1천만 원 대상(압류, 사기거래 등은 제외)

113) 지원 비대상 사유는 ①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4%), ② 송금인의 신청 철회(20.7%), ③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4,753건) 중 64.5%를 차지함

114)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신청자 대비 지원 비대상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 2022년 1월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6%가 착오송금 지원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¹¹⁵⁾

■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신청부터 반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반환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판단 및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의 확보, 수취인에 대한 반환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하여 반환지원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설치된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착오송금액 5만원~1천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착오송금액 5백만원~1천만원 구간의 지원신청 건수는 전체 신청 대비 8.7%(872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43.7%(6,330억원)인데, 소액사건의 기준인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¹⁶⁾
- 또한 간편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취인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간편결제송금업자를 추가하여 연락처 송금 등 간편송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11

115) 인크루트 보도자료, 성인 남녀 응답자 66.0%_ "실수로 다른 곳에 착오송금한 경험 있다", 22.01.06.;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지원제도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116)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1 현황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출판물·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117) ① 일대일 방식의 차별화된 투자자문이 허용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동질적인 자문만 제공 가능하다는 점, ②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 등록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투자자문업과 차이가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업자 수는 2,008개에 달하며¹¹⁸⁾, 특히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등),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고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진입요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진입·영업·퇴출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¹¹⁹⁾
 - 부적격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18)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https://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2022.06.22. 방문

119)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건의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247호), 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104호)]이 발의되어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규정이 부재하여 표시광고법 등 일반 소비자 법규가 적용되고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을 통한 재진입이 가능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퇴출에 한계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식 리딩방 입장 후 1:1 투자자문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점검·단속에 한계가 있었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문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 변경시에도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¹²⁰⁾
 -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수익률 허위 표시를 금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적격 업체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도 대표자와 같이 재진입을 제한하도록 퇴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 02-2100-2661·2663

120) 현재는 대표자 변경시에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1 현황

-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금융감독보다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로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감독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¹²¹⁾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¹²²⁾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함께 감독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현행 중층적 감독체계는 양 기관의 역할에 혼선을 빚게 하여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감독기능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혁 |

| 구 분 | | ~1998.4. | 1998.4.~2008.2. | 2008.2.~ |
|----------|------|------------------------------------|-----------------------------------|-----------|
| 국제금융 |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 국내 금융 | 금융정책 | |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 금융감독위원회 |
| | 감독정책 | 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 |
| | 감독집행 | | | |
| | | | | |
| | | | | |
| 비 고 | | 재정경제원이 국내금융 감독기능을 제외한 경제금융정책 전반 관장 | 통합감독기구 출범 (위원장/원장 겸임) | 위원장/원장 분리 |

자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크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통합,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기구 운영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

121) IMF에서도 2013년 한국의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감독당국의 목표가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있다(tilted to the promo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고 지적한바 있음; 박선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1.4, 2021.12. pp.259-284.

122)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3건의 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84호),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937호),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477호)]이 발의되어 있음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¹²³⁾고 주장함.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금융행정의 비효율, 책임성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중복규제의 가능성 및 기관 간 판단 차이 또는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한 감독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면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독점함에 따라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정책·집행 기능의 통합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¹²⁴⁾도 제시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 추구가 용이할 수 있으며, 시장 친화적 금융감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권을 민간기관에 부여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 등 공법상 법리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감독체계는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토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어떻게 감독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25·2874

123) 김경신·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13.

124) 양준모,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윤창현 국회의원 세미나 자료집, 2020.7.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함

-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¹²⁵⁾(원가)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차등 구조로 시행하고 있음¹²⁶⁾
-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¹²⁷⁾에서 정하며, 금융당국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¹²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¹²⁹⁾

- 우대수수료율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125) ① 자금조달비용, ② 위험관리비용, ③ 일반관리비용, ④ 승인·정산비용, ⑤ 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하여 적격비용을 산출함

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2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128) 카드 고객과 가맹점과 같이 상호 이질적인 집단이 플랫폼(카드결제서비스)을 통해 상호작용해 상대방의 시장 참여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장

129) 윤종문,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 여신금융지 제53호, 2018.06.

카드론이 확대되고 신용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할부, 할인·적립 등 혜택을 축소하거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¹³⁰⁾

-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통보한 후 개별 가맹점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동네마트 등 일반가맹점은 사실상 협상 권한이 없어 카드사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협상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적격 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카드사는 이미 우대수수료율 관련 정책에 따라 중소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총 적격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가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¹³¹⁾

|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추이 |

| 연매출액 | 2012.9. | | 2015.1. | | 2016.1. | | 2017.7. | | 2019.1. | | 2022.1~ | | | | | |
|-----------|---------|------|---------|------|---------|------|---------|------|---------|------|---------|-------|------|------|-------|------|
| | 신용 | 체크 | 신용 | 체크 | 신용 | 체크 | 신용 | 체크 | 신용 | 체크 | 신용 | 체크 | | | | |
| 2억원 이하 | 1.5% | 1.0% | 1.5% | 1.0% | 0.8% | 0.5% | 0.8% | 0.5% | 0.8% | 0.5% | 0.5% | 0.25% | | | | |
| 2~3억원 | 일반 | 일반 | 2.0% | 1.5% | 1.3% | 1.0% | | | | | | | | | | |
| 3~5억원 | |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1.3% | 1.0% | 1.3% | 1.0% | 1.1% | 0.85% | | | | |
| 5~10억원 | | | | | |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1.4% | 1.1% | 1.25% | 1.0% |
| 10~30억원 | | | | | | | 일반 | 일반 | 1.6% | 1.3% | 1.5% | 1.25% | | | | |
| 평균수수료(일반) | 2.14% | | 2.10% | | 2.09% | | 2.08% | | 2.0%내외 | |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2 향후 논의 사항

- 적격비용에 기반한 우대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카드사의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

130)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21.12.23.

131) 구정환·이규복,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05.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비하여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현행 우대수수료율 체계 내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카드수수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 설립의 기준을 소상공인 및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일반가맹점의 단체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¹³²⁾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 02-2100-2992

13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1 현황

- 가계신용통계¹³³⁾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2년 1분기 기준 1,85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축소되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증가세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세가 축소된 원인으로는 2022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 차주 단위 DSR 규제 2단계¹³⁴⁾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¹³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가계대출 현황 |

(단위: 조원)

| | 2019 | 2020 | 2021 | 2022(1분기) |
|------------------|--------|--------|--------|-----------|
| 가계신용 | 1600.6 | 1727.9 | 1860.1 | 1859.4 |
| 가계대출 | 1504.9 | 1632.0 | 1754.2 | 1752.7 |
| 주택담보대출* | 842.9 | 910.6 | 981.7 | 989.8 |
| 기타대출 | 662.0 | 721.4 | 772.5 | 762.9 |
| 판매신용 | 95.7 | 95.9 | 105.8 | 106.7 |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97.6% | 105.7% | 108.3% | - |

* 주택담보대출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됨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¹³⁶⁾ 비율은 2021년말 기준 108.3%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133)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신용' 또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가계신용은 가계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자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뜻함

134) 기존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됨

135)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0년 12월 2.79%, 2021년 12월 3.66%, 2022년 5월 4.14%로 상승하였음

136)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통계(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채를 의미함

-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¹³⁷⁾(threshold)에 대하여 BIS의 Cecchetti et al.(2011)과 Lombard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80% 내외로 제시하고 있음¹³⁸⁾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붕괴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①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②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가능성,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새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내세우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상한을 완화(80%)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¹³⁹⁾
 -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기준 56.5%로 부동산 등 자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신용대출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은 가계부채 부실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출금리 25bp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는 약 3.3조원(22년 1/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추산됨¹⁴⁰⁾

2 향후 논의 사항

- 대출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 LTV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SR 규제는 유지하는 방안 등 거시건전성과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LTV, DSR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음

137) 경제에 대한 가계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커지는 수준을 의미함

138) Stephen G Cecchetti, M S Mohanty and Fabrizio Zampolli,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s No 352, 2011.9.; Lombardi, M., M. Mohanty, and I. Shim, "The Real Effects of Household Debt in the Short and Long Run," BIS Working Paper, No. 607, 2017.

13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2022.06.16.

140)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p.19, 2022.06.

- 대출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부채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DSR 규제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의 경우 분할 상환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만기를 확대하는 등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박진웅 ☎ : 02-6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6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1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가상자산(BTC, ETH 등)의 세계시장 시가총액은 2,66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시가총액은 총 55.2조 원으로 파악됨¹⁴¹⁾

| 국내외 가상자산 상위 10개 종목 비교 |

(단위 : 조 원)

| 구분 |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주1) | | | 국내 상위 10개 종목주2) | | |
|----|------------------|---------|-------|-----------------|------|-------|
| | 종목명 | 시가총액 | 비중 | 종목명 | 시가총액 | 비중 |
| 1 | BTC | 1,042.7 | 39.2% | BTC | 7.5 | 13.6% |
| 2 | ETH | 521.5 | 19.6% | ETH | 6.8 | 12.4% |
| 3 | BNB | 101.6 | 3.8% | XRP | 5.6 | 10.2% |
| 4 | USDT | 93.3 | 3.5% | E** | 1.5 | 2.7% |
| 5 | SOL | 62.7 | 2.4% | W** | 1.5 | 2.7% |
| 6 | ADA | 52.2 | 2.0% | ADA | 1.3 | 2.4% |
| 7 | USDC | 50.2 | 1.9% | N** | 1.2 | 2.2% |
| 8 | XRP | 47.0 | 1.8% | H** | 1.0 | 1.9% |
| 9 | LUNA | 36.8 | 1.4% | SOL | 1.0 | 1.8% |
| 10 | DOT | 31.4 | 1.2% | B** | 0.9 | 1.6% |

주1) '21. 12. 31.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2,660조 원 추정)

주2) '21. 12. 31.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기준 (시가총액 55.2조 원)

자료 : 금융위원회(2022)

■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020년 거래량 8,249만 달러 → 2021년 거래량 176억 9,485만 달러(2020년 대비 21,350% 증가)),¹⁴²⁾ 국내 시장에서도 UPbit NFT, korbit NFT, WEMIX Auction 등의 NFT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음

■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¹⁴³⁾ 금융위원회는

14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 2. 28.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2021년 11월 고점 대비 하락함)

142) Nonfungible, 「Yearly NFT Market Report 2021」, p. 34.

143)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제정 법률안으로는, 「가상자산사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935)」, 「디지털자산산

디지털 자산 유형별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 향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게임 개발사 Wemade의 자회사가 발행한 WEMIX의 가격이 2022년초 폭락하면서 Wemade의 WEMIX 대량 매도 사실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음¹⁴⁴⁾
- 그리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¹⁴⁵⁾인 Terra USD는 2022년 5월 가격이 99% 이상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의 설계상 오류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¹⁴⁶⁾
- NFT의 경우에도 시세조종 및 사기 사건,¹⁴⁷⁾ 거래소 해킹 사건¹⁴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분산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권성 판단)하고, 기존 금융규제 또는 공적 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범위와 성격이 관찰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행 가능한 정책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¹⁴⁹⁾
-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67)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간 규제 조치를 조정하도록 하면서, “동일사업, 동일위험, 동일규칙”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을 디지털 자산 발행인과 거래소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¹⁵⁰⁾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1771)»,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3016)»,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037)», 등이 있음

144) CoinDesk Korea 기사, 「위믹스 코인 매각, 영문 백서 한쪽에 모호하게 적은 게 적절한 공시?», 2022. 1. 15.

145)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자산임(한국은행,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2021.)

146) 연합뉴스 기사,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CEO 고소…합수단 1호 사건될 듯(종합)」, 2022. 5. 19.

147) SBS NEWS 기사, 「NFT 투자 받아 ‘시세 조종’…사기 행각 벌인 일당 체포」, 2022. 4. 27.

148) 조선비즈 기사, 「세계 최대 NFT 거래소 해킹...도난 등으로 2400억원 피해」, 2022. 2. 21.

149) FSB, 「Assessment of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rom Crypto-assets」, 2022. 2. 16.

Commission, SEC)와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등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securities)에 해당할 때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임을 밝힌 바 있음¹⁵¹⁾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의 유형(가상자산은 증권형, 비증권형 등, NFT는 수집형, 예술형, 게임형, 메타버스형, 유틸리티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할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함. 디지털 자산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분산된 네트워크(이른바,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¹⁵²⁾ 증권성 판단 시 고려할 탈중앙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협회¹⁵³⁾ 또는 거래소 등이 표준화된 자율규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주장하며 발행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무너질 경우, 대규모 상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¹⁵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주는 2022년 6월 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지침(Guidance on the Issuance of U.S. Dollar-Backed Stablecoins)”을 발표하였는데, 동 지침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명확하고 뚜렷한 상환정책을 채택할 것, 준비금을 발행자의 자산과 분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¹⁵⁵⁾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 02-2100-2534

150) Presidential Documents,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Executive Order 14067, 2022. (Sec. 2. (b), Sec. 3.)

151)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2017-131, 2017.; FCA, 「Guidance on Cryptoassets」, 2019. 7. 31.

152)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중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FinHub of the SEC,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2019. p. 4.)

153)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021. pp. 201~202.

154) FSOC, 「Annual Report」, 2021. p. 17.

155) DFS, 「Guidance on the Issuance of U.S. Dollar-Backed Stablecoins」, 2022. 6. 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1 현황

- 조각투자는 법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음¹⁵⁶⁾
-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¹⁵⁷⁾가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임¹⁵⁸⁾
 -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6항¹⁵⁹⁾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임
 -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¹⁶⁰⁾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뮤직카우가 수행하는 업무(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향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¹⁶¹⁾
 -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적용받게 됨(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는 보류됨)

156) 금융위원회,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1.

157)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 2.)

15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p. 1~3.

1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60)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합의회 행정기관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6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p. 8.

- 이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자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¹⁶²⁾
 -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예시(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조각투자 상품 가격이 상승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와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예시(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등)를 나열함¹⁶³⁾
-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요건(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 귀속 등)의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¹⁶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관련 사업자 또는 투자자는 증권성 인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투자자의 수익, 투자대상의 가치·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즉, 사업자)의 노력, 능력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권성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함¹⁶⁵⁾
-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¹⁶⁶⁾ 현행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사업 또는 투자한 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조각투자자의 증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사업자 또는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대한 해석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16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1.

163)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2.

16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4.

165) 투자자들이 감귤 농장 토지를 Howey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Howey가 농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공유했던 사례(SEC v. Howey Co., 328 U.S. 293 (1946); 김갑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2. p. 3.}

166)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p. 5.

-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내 디지털 자산, 핀테크 전문 부서인 “혁신·금융 기술을 위한 전략적 허브(The Strategic Hub for Innovation and Financial Technology, FinHub)”는 2019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음¹⁶⁷⁾
 - 프레임워크는 SEC의 규칙이나 규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프레임워크는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요건(reliance on the efforts of others)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획자 또는 후원자, 기타 제3자가 ▲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자산의 개발에 주도적이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관리자로서 결정(디지털 자산 판매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 추가 디지털 자산을 받을 대상과 조건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 디지털 자산의 공급 제한 또는 희소성 보장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지원하는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증권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 상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 보류기간 또는 유예기간 등을 결정할 때 사업자 또는 투자자의 신뢰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02-2100-2650

167) FinHub of the SEC,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2019.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 최근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한 사례 |

| 모회사 | 자회사 | 자회사 상장일 | 상장 당일 모회사 주가 | 모회사 현재 주가 | 주가 등락률 | 코스피 지수 등락률 |
|---------|------------|------------|--------------|------------|--------|------------|
| SK케미칼 | SK바이오사이언스 | 2021.3.18. | 30만 1,000원 | 12만 2,000원 | -59.5% | -13.9% |
| SK이노베이션 | SK아이이테크놀로지 | 2021.5.11. | 26만 9,000원 | 21만 4,000원 | -20.5% | -17.7% |
| 카카오 | 카카오페이 | 2021.8.6. | 14만 5,500원 | 8만 8,300원 | -39.4% | -19.3% |
| | 카카오뱅크 | 2021.11.3. | 12만 4,500원 | | -29.1% | -11.3% |
| LG화학 | LG에너지솔루션 | 2022.1.27. | 61만 원 | 46만 3,000원 | -24.1% | 0.9% |

주 : 모회사 현재 주가는 2022.4.27. 종가 기준이며, 코스피 지수 등락률은 자회사 상장일 종가와 2022. 4. 27. 종가(2639.06)를 비교함
 자료 : 한국거래소

- 또한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기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권 박탈’ 또는 ‘핵심 사업부문의 독립 상품화로 인한 소액주주의 수익권, 처분권 몰취’ 등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¹⁶⁸⁾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바 있음¹⁶⁹⁾

-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¹⁷⁰⁾에

168) 김은수, 「회사 분할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경영법학』 제31권 제2호, 2021. p. 199.; 이상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의 문제점과 주주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 2022. p. 25.
 1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17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매월 5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상장기업은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②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며,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④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¹⁷¹⁾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 및 미준수 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이며, 의무대상 기업을 자산 총액 기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음(2019년 2조원 이상 → 2022년 1조원 이상 → 2024년 5천억원 이상 → 20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¹⁷²⁾

2 향후 논의 사항

■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단계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상장규정의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은 2020년 2월 동경거래소가 상장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데,¹⁷³⁾ 상장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모회사)는 ① 그룹경영에 관한 관점 및 방침을 근거로 한 상장자회사 보유 의의, ② 상장자회사 지배구조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¹⁷⁴⁾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7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2. 3. 7.

17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2022. 3. 7.

173) 조대현·이승희, 「일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범 제·개정 동향과 시사점」,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21. p. 11.

174) 有価証券上場規程施行規則 第212条, 4, (1)

- 한편, 싱가포르 거래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상장을 신청할 경우, 자산 및 영업범위의 중복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규정을 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거래소는 모자기업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중단해야만 상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 수준을 2022년부터 강화함¹⁷⁵⁾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 02-2100-2680

175) 남길남,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 『Issue Report』, 자본시장연구원, 2022. p. 19.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1 현황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¹⁷⁶⁾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책임있고 공정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AI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점(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의 편향성, 결과 도출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함(2015년 채용 AI의 남성 선호 이슈로 도입을 취소한 아마존 사례, 2015년 포토 서비스가 흑인을 고릴라로 태깅한 구글 사례, 2016년 욕설과 극단적 발언을 학습한 챗봇 테이 사례 등)¹⁷⁷⁾
 - 이에 전 세계적으로 2018년 45개, 2019년 28개, 2020년 23개의 AI 윤리기준이 마련되었음.¹⁷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AI 윤리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국내 AI 윤리 정책 및 가이드라인 주요 사례 |

| 부처 | 정책·가이드라인 | 발표 일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AI 윤리기준 | '20. 12. 2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 '21. 5. 13.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21. 5. 31. |
| 방송통신위원회 | AI 기반 미디어(매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 '21. 6. 30. |
|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21. 7. 8. |

자료: 각 부처 보도자료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⁷⁹⁾

176) 데이터를 해석하여 지식을 추론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능력이 구현된,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말하며, 컴퓨터 처리능력 향상, 우수 알고리즘 등장, 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데이터 축적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이수환, 박소영,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

177) 유재홍, 추형석, 강송희,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원칙에서 실천으로」, 『ISSUE REPOR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1. p. 1.

178) Stanford University HAI,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 2021. 3.

-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 AI 시스템의 개발, 사업화,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여 AI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금융회사 등은 AI 시스템의 목적,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AI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쳐야 함. 설명의무가 있는 금융서비스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 AI 시스템의 평가·검증 단계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성과와 공정성의 목표 수준과 판단 지표”를 선정하여야 함. 서비스에 따라 우선시되어야 하는 성과와 공정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¹⁸⁰⁾ 위험요인을 통제하여야 함
 - 도입·운영·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고지하고 성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그런데 가이드라인 상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등 용어는 다소 추상적이고, “최선의”,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의 추상적인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스스로 평가(self-assessment)해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평가 목록(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평가 목록”)을 발표함¹⁸¹⁾

179)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주요 검토 필요사항」, 2021. 7.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2021. 7. 8.

180)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격자의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는 위험(False Negative 오류)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불법거래를 탐지하는 서비스는 불법거래를 탐지하지 못하는 위험(False Positive 오류)을 최소화하여야 함

- 평가 목록은 추상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사전(Glossary)을 첨부하였는데, “AI 신뢰성(AI reliability)”에 대하여 “AI 시스템이 이전에 훈련되거나 테스트 되지 않은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도 예상대로 작동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책임성(Accountability)”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목적과 동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공정성(Fairness)”에 대하여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그룹 사이의 평등한 대우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관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평가 목록은 AI 윤리 요구사항(① 인간 행위자와 감독, ② 기술적 견고성과 안정성, ③ 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④ 투명성, ⑤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⑥ 사회·환경적 웰빙, ⑦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예컨대, 책임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AI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등)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는데,¹⁸²⁾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정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기술함. 특히 점검항목은 의무사항(예를 들어,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권장사항(예를 들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으로 구별되어 있음¹⁸³⁾

■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영업규제와 연계하는 등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평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하여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
|-------------|---|
| 작성자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02-2100-2620 |

181) AI HLEG(High-Level Expert Group on AI), 「The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elf assessment」, 2020.
 18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 인공지능 개발·운영 시 자율점검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 2021. 6. 1.
 18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2021. 5. 31.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1 현황

-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 대상 영업유형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③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하여 금융 관계법령은 중개¹⁸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중개행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2021년 9월 ‘사례 검토결과’를 발표함
 -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함¹⁸⁵⁾
 -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에 대하여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라고 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때 혜택(현금 지급)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개로 봄¹⁸⁶⁾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¹⁸⁷⁾ 중개의 범위가 모호하여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플랫폼 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
 - 광고와 중개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모두 판매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영업행위 유형의 ‘판단 예시’로, “특정인 맞춤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광고

1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개로 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2021. 3. 17. p. 2.)

18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021. 9. 7. p. 3.

18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021. 9. 7. p. 7.

18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를 제공”하는 것을 중개로 보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 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¹⁸⁸⁾ 그러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다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¹⁸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상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되고 있음¹⁹⁰⁾

-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하여 근거가 마련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본인 신용정보관리업)¹⁹¹⁾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임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력, 물적설비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전문성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¹⁹²⁾ 이에 더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위한 요건(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을 구비해야 한다면,¹⁹³⁾ 기존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사업의 중단 및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중개행위를 단순 정보제공, 광고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¹⁹⁴⁾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는 단순 정보제공에서부터 계약체결의 중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¹⁹⁵⁾ 중개행위 판단에 필요한 기본원

18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2021. 3. 17. p. 2.

18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021. 6. 8.

190) 이성엽, 「‘규제에 발 묶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경오피니언, 2022.

1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1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19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94)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195)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칙(예를 들어,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면 중개, 서비스·수익 구조에서 ‘객관성’이 확보되면 단순 정보제공 등)을 제시한 다음 세부적으로 중개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상품추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사실상 중개행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또는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¹⁹⁶⁾ 중개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에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적인 시도가 저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행위의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미 엄격한 진입규제를 받은 이상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서비스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¹⁹⁷⁾도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42

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2.

196) 남궁주현, 류혁선,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NARS 정책연구용 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 p. 131.

197) 이성엽, 「‘규제에 발 묶인’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한경오피니언, 2022.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1 현황

- 망분리(network separation)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함¹⁹⁸⁾
 - 망분리의 기술적 구현방식으로는 크게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가 있음.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각 망에 접속하는 컴퓨터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망간 접근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을 말하며,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 또는 컴퓨터를 가상화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식을 의미함¹⁹⁹⁾
-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5조²⁰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실시하여야 함
-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용 망과 인터넷용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²⁰¹⁾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물리적 망분리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비효율적이고 오픈소스 등 신기술의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 개발자가 소스코드 하나 하나 반입·반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됨²⁰²⁾

198) 조병주, 윤장호, 이경호, 「금융회사 망분리 정책의 효과성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5. p. 182.

199)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17. 12. pp. 81~85.

200)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1) 그러나 망분리를 통한 데이터 차단 보안 방식을 우회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도 있음(정다빈·나현대·김선우, 「디지털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개혁 정책 연구 -데이터 중심의 핵심가치 보호와 개발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4차 산업혁명정책센터 KPC4IR REPORT NO. 11. 2020. 12. p. 30.)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일률적·획일적인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²⁰³⁾
- 다만,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보완조치(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것 등)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래정보의 범위, 통제된 상황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할 경우의 예외 인정 여부 등이 불분명함.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 개선을 2023년부터 단계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보다 신속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음²⁰⁴⁾

2 향후 논의 사항

- 규제 개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 규제체계 마련, 개발 현장 실무에 맞는 예외 기준 수립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망분리 규제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²⁰⁵⁾
 - 참고로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ederal Financial Examination Council, FFIEC)가 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등을 제시한 정보보안 대책자(Information Security)에서도 위험 수준과 자산의 치명도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고 각 보안 구역 사이와 내부에 적절한 접근 요건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²⁰⁶⁾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 : 02-6788-4583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0

202) STARTUP ALLIANCE,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ISSUE MINI SUMMARY vol 1. 2020. 2. p. 7.

2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2022. 4. 15.

204) 윤창현 의원실 세미나 자료,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22. 5. 3.

205) 김승주,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앞으로의 망분리 정책은?」, ISSUE MINI SUMMARY vol 1. STARTUP ALLIANCE, 2020. 2. p. 59.

206) FFIEC,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Technology Examination Handbook, 2016. p. 19. (“Establishing zones according to the risk profile and criticality of assets contained within the zones and appropriate access requirements within and between each security zone.”); STARTUP ALLIANCE,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ISSUE MINI SUMMARY vol 1. 2020. 2. pp. 39~45.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1 현황

■ 2020년 8월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이용 실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음

- 정부는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를 △ 오프라인 지점 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인한 금융접근성 저하, △ 온라인 위주의 금융비용 혜택, 고령층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장, △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각종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점증, △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역량 미흡으로 진단함²⁰⁷⁾

■ 당시 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에 대응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함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주요 내용 |

| 과제 | 내용 | 세부 추진사항 |
|---------------|------------------------|---|
|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 강화, 점포폐쇄 3개월 전 고객 통지 |
| |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제공 | 이동·무인 점포,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대체창구 공급 |
|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이용 환경 개선 |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마련 |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온라인거래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 보완 |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 |
| |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 | 연령차별 금지,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 제시 의무화, 신규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분석 실시 지도 |
| | 고령층 정보제공 강화 |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 |
| |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노력 강화 |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격한 제재 |

207)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 8.

| 과제 | 내용 | 세부 추진사항 |
|---------------------------------------|----------------------------|---|
|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 |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 치매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활성화 |
| |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개발·공급 | 주택연금(또는 치매보험)에 가입·이용 중인 고령고객이 치매보험(또는 주택연금)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치매보험료 할인 |
| | 기타 고령친화 금융상품 출시 |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보험가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 등 |
|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착 취 대응 강화 | ‘금융착취’ 대응을 위한 금융권 역할 강화 |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신고근거 마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요구,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
|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방지앱 설치, 고령층에 대한 사기의심거래 시 거래절차 강화 |
|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 교육 콘텐츠 개발 |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인증제 도입 |
| | 전달체계 다양화 | 온라인 콘텐츠몰 구축, (가칭)‘실버 금융소식지’ 발간 |
| |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 시니어 전문강사 자격과정 신설, 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 | 효율적 금융교육 거버넌스 구축 |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교육 체계화 |

주: 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 8.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2 향후 논의 사항

- 2020년 정부는 고령층 등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²⁰⁸⁾, 그 이행 정도는 2022년 현재까지 미흡한 수준임
 - 은행 점포폐쇄 대안인 우체국 활용은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업무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어 올해 말부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²⁰⁹⁾
 -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의 경우 은행들은 2022년 2월에 마련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반영해 2023년 상반기까지 앱을 개발·출시할 예정임²¹⁰⁾
 -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주택연금-치매보험 연계상품 및 금융사기 방지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등의 경우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며²¹¹⁾, 고령층을 대

20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어르신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0. 8. 31.

209) 박준호·최서진, 「‘우체국서 은행 업무’…인수위, 금융허브 서비스 도입한다」, 뉴시스, 2022. 4. 20.

210) 금융위원회, 「어르신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2022. 2. 25.

211) 윤성훈, 「주택연금 가입하면 치매보험료 깎아준다더니… ‘함흥차사」, SBS Biz, 2022. 1. 14.; 서정원, 「노인 전용앱 가이드 만드는 데만 2년…당국도 ‘뒷짐」, 매일경제, 2022. 4. 3.

으로 한 금융사기·착취 대응을 위한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도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금융정책에 의지가 부족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²¹²⁾가 있는바, 정부는 고령층의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5

212) 서정원, 「노인 전용앱 가이드 만드는 데만 2년…당국도 ‘뒷짐」, 매일경제, 2022. 4. 3.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1 현황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인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주로 규정하고 있음²¹³⁾
-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규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²¹⁴⁾
 -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상 부과금액(위반 횟수별 가중처분의 경우 1차 위반 기준)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여야 함
 -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설정한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여 과태료 부과금에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이 a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b행위에 대해 5백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으나,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a행위에 대해 50만 원, b행위에 대해 3백만 원으로 규정된 경우는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임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위원회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입법자의 판단과 다르게 운영 중인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하여 행정법규 위반 정도의 경중을 정한 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금 수준을 정하고 있음

21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p.593, p.600

21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pp.601~602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

| 시행령의 위반행위 분류 | 근거 법조문 (과태료 상한액) |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
|--|------------------------------|---|
| 가.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5,000만원) | 250만원 |
|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5,000만원) | 12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5,000만원) |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바.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1,000만원) | 600만원 |
|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4호 (5,000만원) |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5호 (5,000만원) | 500만원 |
| 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0호 (5,000만원) | 1,500만원 |
| 서. 법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3,000만원) | 1,800만원 |
| 어. 법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 (2,000만원) | 1,000만원 |
| 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 (5,000만원) | 2,500만원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허.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2호 (5,000만원) | 1,500만원 |

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부 재구성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법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가목·나목·카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50만 원, 120만 원, 500만 원으로 정하여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한 바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600만 원보다도 적어 과태료 부과금에서의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5천만 원인 러목·허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인 서목상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인 1,800만 원보다 적어 역시 과태료 부과금에서의 위반행위 간 순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외에도 「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수의 금융위원회 소관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입안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전반적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02-2100-2818·2808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1 현황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임
 - 2019년 6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보험업법」에 그 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근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도 법제화됨
 -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8조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²¹⁵⁾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용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증가폭 대비 수용건수 증가폭은 작아 수용률은 하락하고 있음
 -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 8,000여건에서 2020년 91만 1,000여건으로 증가하여 약 4.6배 증가하였으나,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하락함

| 금리인하 신청·수용 건수 및 수용률 |

(단위: 만건, %)

| | 17년 | | | 18년 | | | 19년 | | | 20년 | | |
|------|--------|--------|-----------|------|------|------|------|------|------|------|------|------|
| | 신청 (A) | 수용 (B) | 수용률 (B/A) | A | B | B/A | A | B | B/A | A | B | B/A |
| 은행 | 16.2 | 9.6 | 59.3 | 28.5 | 11.5 | 40.4 | 55.0 | 20.7 | 37.7 | 71.4 | 22.5 | 31.6 |
| 보험사 | 0.8 | 0.5 | 59.1 | 1.2 | 0.6 | 53.0 | 3.3 | 1.9 | 57.3 | 4.3 | 2.1 | 48.8 |
| 저축은행 | 1.6 | 1.3 | 79.3 | 3.9 | 3.0 | 76.6 | 3.2 | 2.4 | 73.6 | 4.4 | 2.8 | 62.6 |
| 여전사 | 1.2 | 0.9 | 73.2 | 2.3 | 1.8 | 73.2 | 5.4 | 3.5 | 65.1 | 10.9 | 6.4 | 58.3 |
| 합계 | 19.8 | 12.2 | 61.8 | 36.0 | 16.9 | 47.0 | 66.9 | 28.5 | 42.6 | 91.1 | 33.8 | 37.1 |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 정부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이 수용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고²¹⁶⁾ 2021년 10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215) 2020년 중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을 인화된 금리로 1년간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 추정치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4)

216) 2020년 은행 가계대출 관련 수용률을 비교하면 대면 신청 시 76%, 비대면 신청 시 27%로 나타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함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비대면’과 관련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비대면 신청비중이 2020년 기준 83%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영업점 등을 통한 대면 신청은 감소 추세에 있음²¹⁷⁾
- 그런데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세부방안은 ‘대면’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고, ‘비대면’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보임
 - 예를 들어 대출계약 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 문구에 덧쓰기 추가를 제시하는 등 대면 방식에서 주로 유효한 안내 강화방안을 제안함

■ 또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활용 수준을 ‘수용률’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수용률 이양호한 은행을 거래 은행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용률은 금융회사의 책임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정부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증대한 것이 수용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함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수용률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수용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금융회사가 오히려 신청 안내 등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²¹⁸⁾을 감안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 : 02-2100-2956·2957

2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2021. 10., p.3

218) 고수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낮으면 나쁜 금융사?」, 뉴스워커, 2022. 4. 25.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1 현황

-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이하 “방지대책협의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방지대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됨
 - 방지대책협의회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수립·추진,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단속·교육·홍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²¹⁹⁾
 -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은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실무협의회의 의장(금융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됨²²⁰⁾
 - 방지대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거나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²²¹⁾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방지대책협의회의 실제 참여기관과 법령상 구성원이 동일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임

219)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3조

22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4조

221)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6조·제8조

- 방지대책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다가 2018년 12월부터는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음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에는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방지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상 구성원인 해양경찰청은 방지대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²²²⁾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서 방지대책협의회에 실제 참여하는 기관 위주로 협의회 구성을 변경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함이 지적되었으나²²³⁾, 해당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²⁴⁾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²²⁵⁾을 고려하고, 계속 진화하는 신종 사기 수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지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그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방지대책협의회는 서면회의만 개최되었²²⁶⁾, 최근까지 몇 차례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²²⁷⁾
- 또한, 신·변종 수법 출현 시 방지대책협의회의 경보 발령이나 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대책

222)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8. 12. 18.에서는 방지대책협의회의 참석자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이라고 설명함

223)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Ⅱ」, 2021., p.293

224)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7.10.25>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제7조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의장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225)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만 1조 7,626억원(금융회사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2022. 4.)

226)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Ⅱ」, 2021., p.294

227) 최성근, 「“검찰청 수사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도 정부 협의체 ‘유명무실」, 시사저널 이코노미, 2021. 9. 10.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²²⁸⁾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228) 감사원,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II」, 2021., pp.294~296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1 현황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함

-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계좌라고 설명됨
- 대선 당시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²⁹⁾
 -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적립되게 됨
 - 정부는 소득에 따라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원함
(이 경우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년간 5,75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됨)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를 선택할 수 있음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됨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지원 불가

■ 2022년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청년도약계좌²³⁰⁾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가칭)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²³¹⁾

- 첫째,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함

229)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2. 2., p.156 ; 염지현, 「尹 ‘청년 1억 통장’ 워길래…청년희망저축금 290만명 갈아타나」, 중앙일보, 2022. 3. 13.

230) 인수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장기자산계좌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의 공약 당시 명칭이고 다수 언론보도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사용함

2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분과브리핑]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 2022. 5. 2.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view.php?id=brief&code=115)

- 둘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은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함
- 셋째,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함
- 넷째,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함
- 다섯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모인 자금이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 등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여 선순환 환경을 조성함

2 향후 논의 사항

-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향후 결정하겠다고 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요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대선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지원금 수준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어 연봉이 적은 소위 ‘금수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²³²⁾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청년층은 결혼, 내 집 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유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동안 한 상품을 유지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²³³⁾
- 또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청년도약계좌에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 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²³⁴⁾, 아직까지 소요 비용 수준과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 02-2100-1688

232) 이승우·유채연, 「“청년도약계좌, 자산은 안보고 월급따져 탈락...이게 공정한가요”」, 동아일보, 2022. 5. 19.

233) 김윤주, 「[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이코노미스트, 2022. 5. 10.

234) 김대훈, 「尹 “10년 모으면 1억”...청년도약계좌 가능할까」, 한국경제, 2022. 5. 3.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1 현황

-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신규 계좌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함
 - 최초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미성년자로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하였으나²³⁵⁾,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확대됨
- 은행은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제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있음²³⁶⁾
 - 서류제출이 어려운 자의 경우 은행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최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목적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개인정보가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 시 증빙자료는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금융회사별로 요구자료에 차이가 있음²³⁷⁾

2 향후 논의 사항

-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침·지도(협조요청)에 따라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미이행 시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는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²³⁸⁾

235)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10. 30.

236)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3

237)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8

-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서류제출, 금융거래 한도계좌 운영에 따른 이체 제한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²³⁹⁾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계좌 개설 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은행에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은행측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만 바꾸면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고 요구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됨²⁴⁰⁾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해지의 기준이 은행별로, 같은 은행이라도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는 한편, 적용 시 금융회사 직원의 재량이 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영업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²⁴¹⁾
 -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절차 진행 편리성 차이도 있으므로 위험성을 최소화한 비대면 방식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²⁴²⁾

| | |
|-------------|--|
| 작성자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해진 ☎ : 02-6788-4585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 : 02-3145-8125·8534 |

238) 국민권익위원회,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2020. 5., pp.5-6

239)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기도 함. 2019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개설목적을 소명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 제한사유는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중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관한 부분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이 정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 2019. 11. 26. 2019헌마1251결정)

240) 김대훈·이호기,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한국경제, 2021. 9. 5.

241) 오정인, 「같은 제도 다른 방식...한도제한계좌 해지기준 '제각각'」, SBS Biz, 2021. 12. 10.

242) 오정인, 「같은 제도 다른 방식...한도제한계좌 해지기준 '제각각'」, SBS Biz, 2021. 12. 10.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1 현황

-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행정지도의 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반영된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2개의 계량지표 및 5개의 비계량 지표를 평가지표로 하여 평가항목별로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²⁴³⁾
-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을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²⁴⁴⁾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실태평가 등급 부여 및 공시가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인증”과 연계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음
 - 정부는 2020년에 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제와 자율평가에 따른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실태평가가 반영되면서 명시되지 않은 인증제가 폐지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²⁴⁵⁾

243)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 보도자료, 2021. 7. 6., p.4

244) 모범규준

제33조의2(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① 제33조에 따른 실태평가 직접 평가 대상회사는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인증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실태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 대규모 민원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이와 관련 실태평가 등급 부여는 인증과 유사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의 등급 부여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효과가 있음
 -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상의 인증제가 법제화된 실태평가에 반영되어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 부여가 사실상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인증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2020년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가 도입되었지만 인증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해당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가 없었다는 지적²⁴⁶⁾을 고려할 때 체계적 인증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태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을 부여받는 것과 인증을 받는 것이 큰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에 혜택을 주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금융회사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²⁴⁷⁾을 받고 있으므로 제도 중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 |
|------|---|
| 작성 자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해진 ☎ : 02-6788-4585 |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 02-3145-8338·8340 |

245) 김건우, 「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아무야된 까닭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 1. 21.

246) 김건우, 「금융위가 2020년 도입한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 유아무야된 까닭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 1. 21.

247) 국회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2.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작한 후 2011년에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인증기업에게는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1 현황

-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진행되었음
 - 종전까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 행정지도의 성격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였음
 - 이번 실태평가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²⁴⁸⁾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²⁴⁹⁾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실태를 중점 평가하였다고 밝힘²⁵⁰⁾
- 2021년도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회사는 없으며,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하고,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²⁵¹⁾
 - 전체 26개사 중 3개사가 종합등급이 ‘양호’ 등급인데, 2020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양호’ 등급 회사 수가 7개사 감소, ‘보통’ 등급은 9개사 증가, ‘미흡’ 등급은 1개사가 감소한 것임
 - ‘양호’ 등급 회사 수 감소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 감소는 2021년도 실태평가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것과 함께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하여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금융감독원은 실태평가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밝힘²⁵²⁾

248) 실태평가 주기제는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해 매년 2개 그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21년 26개사, '22년 24개사, '23년 24개사)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해 운영하는 것임.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하도록 함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49)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0)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1)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실태평가 주기와 상관없이 2022년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2 향후 논의 사항

- 2021년도 실태평가 결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바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임
 - 2020년도 실태평가와 비교하여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²⁵³⁾에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²⁵⁴⁾ 특히 해당 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됨
 -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에 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는 2020년도 실태평가에서는 12개사(48%)였으나 2021년도 실태평가에서는 5개사(19.2%)로 감소하였고,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에 관해서는 10개사(40%)에서 6개사(23.1%)로 감소하였음
- 또한, 정부는 실태평가의 효율성과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고 자율진단을 유도한 만큼 실태평가 완화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할 것임
 - 종전까지는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했는지 정부가 파악하기 곤란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한 것이므로²⁵⁵⁾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 : 02-6788-4585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 02-3145-8338·8340

252)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3)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①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②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④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⑤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⑥ 민원처리시스템 및 소비자 정보 공시 관련 사항, ⑦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음

254) 금융감독원,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도자료, 2022. 1. 7.

255) 손현지,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올해부터 ‘분리’ 진행」, the bell, 2021. 7. 2.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설명은 업계 관계자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직접 대면 방식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동의 절차의 편리성으로 인해 대면방식으로 상품 설명 또는 상품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전화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발생함
 - 예컨대 대면방식의 경우 상품설명과 관련된 서류에 일일이 서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상품설명서의 다운로드와 간편한 확인 체크만으로도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전화 설명과 이에 대한 녹취의 방식으로도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와 같이 간편하고 신속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과거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함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기관의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영업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대응은 취약한 실정임
 - 그동안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앞으로 온라인·비대면 거래방식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거래방식에 익숙치 않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온라인·비대면 상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거래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실태조사, 현황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기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재보다 강제력 있는 고객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고도화 또는 주기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변경”하도록 관련 유권해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조직화·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

- (보험사기 정의 및 가중처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던 보험사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 및 일반 사기보다 가중 처벌함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함(보험사기방지법 제2조제1호)
 -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²⁵⁶: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함²⁵⁷
 -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함²⁵⁸
- (수사기관 통보의무²⁵⁹)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의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의무화

■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보험사기 누수²⁶⁰: 2014년 4조 5천억 → 2018년 6조 2천억원(37%↑, 1가구당 30만원 추정)
- 보험사기 적발²⁶¹: 2014년 5,120억 → 2020년 8,986억(75%↑) → 2021년 9,434억²⁶²(적

256)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7) 보험사기방지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의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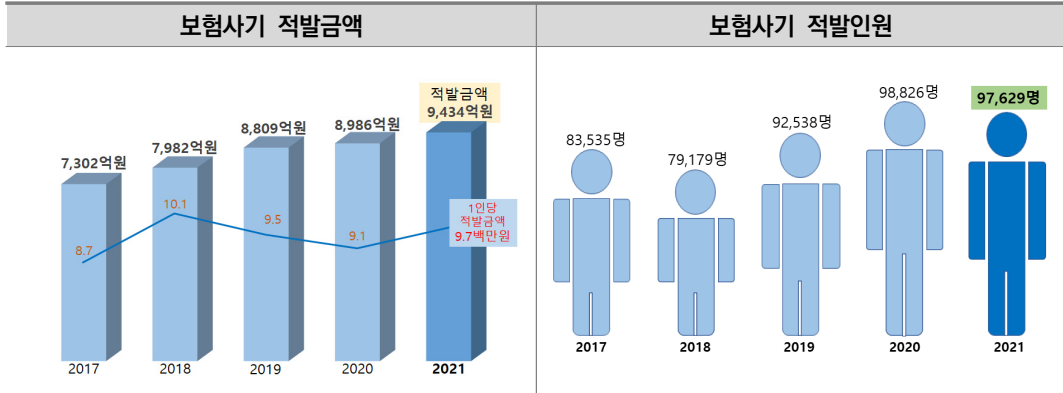
259)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60) 보험연구원·서울대 연구용역 보고서, 2019. 12.

발 인원은 9만 7,629명)

|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자료: 금융감독원

- 범정형은 타 경제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신고형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20년 기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1심 판결 1,310건 중 3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함²⁶³⁾
- 최근의 보험사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²⁶⁴⁾

2 향후 논의 사항

- 보험사기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을 범죄로 유인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보험사나 관련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연성사기 범죄도 줄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및 법정책의 개선이 필요함²⁶⁵⁾

26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2021. 5.)(<https://www.fss.or.kr/fss/bbs/B0000050/list.do?menuNo=200727&bbsId=&cl1Cd=&pageIndex=1&searchCnd=5&searchWrds=2021>)

262) 금융감독원 2022. 4. 13. 보도자료(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신문 2022. 5. 5.자 기사(보험사기 연 1조원, 형량·보험금 환수 강화로 완전범죄 차단)

263) 서울신문 2022. 5. 5.자 기사(“보험사기 연1조원, 형량·보험금 환수 강화로 완전 범죄 차단”)

264)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398)

265)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말하며, 연성사기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기를 말함

-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고, 특별히 양형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문제는 재판에서 피해자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정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음
 - 보험사기와 연계된 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정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보험사기 범죄자에게도 적용하여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의 폐해를 감안하여 선고형을 높일 수 있는 법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기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지체지급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는 의심정황이 있더라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회수를 못하는 경우로 이어짐
 - 보험사기 범죄자가 민원 제기 등 금융당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하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 : 02-2100-2965·2966·2968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식의 후불결제를 널리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²⁶⁶⁾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여신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핀테크 기반의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을 시범업체로 지정하여 금액한도, 연체율, 할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후불결제는 기본적으로 여신금융업법을 통해서도 규제 가능함
 - 현재 소액후불결제 시범사업자가 소액후불결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선불지급수단만 만들어 놓으면 일정 금액 이내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형식(선구매 후결제, Buy Now Pay Later: BNPL)으로 운영됨
 - 후불결제가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재 소액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영업무로 규율체계를 성급하게 확정하게 되면, 빅테크 사업의 특성(고객·판매채널·정보독점) 등에 따른 독과점 등 시장실패(가격상승·정보비대칭·혁신 감소) 발생시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부재할 우려가 있음
- 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시범사업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이 가속화 되어 시장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경우 이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가 문제될 수 있음
 -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나,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금융업법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둘 경우, 규제 차이(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후불신용결제” 기능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1) 설립 허가제, (2) 카드수수료규제, (3) 강력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됨
 - 대부업, 리스·할부금융업 등의 여신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등록제이며, 감독상의 규제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 카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임²⁶⁷⁾

26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113137, 2021.11.4. 발의]

267) 고은아, “해외 BNPL 시장 동향과 국내 시장 전망”, Koscom NEWSROOM 2021. 9. 23.

- 또한, 후불결제는 불법적인 방법(페이깅)으로의 이용도 우려되는바 제도권 내에서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신용카드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의 후불신용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사의 후불신용결제와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카드사가 적용받는 ‘수수료 규제 및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게 됨
 -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신용카드사와 빅테크간의 ‘공정경쟁’도 불가능하며,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업무 관련 금융안정 저해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 한편, 빅테크 업체는 후불결제 한도증액 요청과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등 후불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후불결제의 발전·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규율 방안) 여신금융업법 체계에서 일원화하여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 도입 등 일부 보완하여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진입 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금융업법 내 Small-Licence 형태(가칭 소액후불신용결제업)로 도입하여 최소 자본금 및 소액후불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영업·건전성) ‘후불신용결제’나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운용 행위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 02-2100-2995·2998·2967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가계부채가 GDP 대비 2022년 1분기 기준 104.3%²⁶⁸⁾에 이르는 등 향후 경기침체 시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음
 - 최근의 가계부채는 50~60대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20대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30대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그 심각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주식가격의 폭락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하고 있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가계의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금리,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고환율 등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현실화 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그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가계의 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바, 배드뱅크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은행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 및 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적기관과 민간이 주축이 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채무자의 도덕·윤리적 문제, 은행 등 금융기관 간의 이해관계, 작은정부 지향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채택되지 않았음
 - 그런데 2022년 9월말로 연기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들의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다시 한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

268) 국제금융협회(IIF) 세계부채보고서(2022. 6. 6.자) 참조.

- 정부의 2022년 5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규모가 37.5조원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 한계상황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도하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캠코와 같은 공적기구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을 합친 혼합형 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자영업자는 2021년 현재 23.9%로 OECD 평균인 17%보다 높은 비율인 바,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경우와 폐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배드뱅크 운영이 필요함
 -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부동산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여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자영업자는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폐업 시 부담하게 될 막대한 상환금액으로 인해 부실을 키우는 상황인 바, 파산 등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배드뱅크 운영 운영이 필요함
 -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정책 추진) 민간 금융기관 위주의 민간 금융기관 위주의 배드뱅크는 채무 상환 등 수익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채무 재조정, 회생 여부 판단, 재기 방법 제시 등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02-2100-2617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비대면 사업방식으로 야기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범죄 이용 문제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 특성상 근본적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함
 -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적으로 특화된 사업영역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집중되므로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온라인 비대면거래 중심의 영업방식은 거래과정에서 부실심사, 고객불만 처리나 고객서비스 대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진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수 급증²⁶⁹⁾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은행계좌 현황²⁷⁰⁾ |

(단위: 건)

| 구 분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시중은행 |
|-----------|-------|------|----------|
| 2017년 | 199 | 157 | 2만 3,169 |
| 2020년 | 2,705 | 423 | 2만 426 |
| 2021년 상반기 | 2,025 | 477 | - |

- 위 표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건 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 건수 급증 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케이뱅크)과 7월(카카오뱅크)에 각각 영업을 개시하여 2017년에는 지급정지된 은행계좌 건수가 적었으나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급증하였는바, 그 원인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신규은행으로 2018~2021년의 기간에 신규계좌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비대면거래상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가입 절차의 간소화로

269) 굿모닝경제 2021. 10. 1.자 기사(배진교 의원 “카카오·케이뱅크 이용 계좌 급증”)

270) 굿모닝경제 2021. 10. 1.자 기사(배진교 의원 “카카오·케이뱅크 이용 계좌 급증”)를 참조하여 표를 작성함

인해 빠른 속도로 계좌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였는지의 여부 판단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 실태조사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래 표에 의할 경우에 2018~2020년 기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수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현황(2017~2020년) |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17년대비수준 비율(%) |
|------------|---------------|---------------|---------------|---------------|---------------|
| 총 | 22,784 | 30,687 | 43,771 | 20,191 | 88.6 |
| 시중은행 소계 | 22,428 | 29,537 | 41,296 | 17,063 | 76.0 |
| 국민은행 | 8,562 | 11,819 | 14,099 | 5,364 | 62.6 |
| 신한은행 | 5,580 | 7,066 | 11,593 | 3,860 | 69.1 |
| 우리은행 | 4,479 | 4,979 | 9,284 | 4,187 | 93.5 |
| 하나은행 | 2,821 | 4,278 | 4,835 | 3,138 | 111.2 |
| SC은행 | 986 | 1,395 | 1,485 | 514 | 52.1 |
| 인터넷전문은행 소계 | 356 | 1,150 | 2,475 | 3,128 | 878.6 |
| 케이뱅크 | 157 | 218 | 322 | 423 | 269.4 |
| 카카오뱅크 | 199 | 932 | 2,153 | 2,705 | 1359.3 |

자료: 금융감독원

-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영업행태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며 특히,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간편 계좌개설 등의 방식을 널리 수용하였기에 특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실명확인 방법의 개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실명확인 방법은 금융기관이 선택적으로 2가지 방법을 필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²⁷¹⁾ 금융기관이 기술적 문제없이 이를 성실히 준수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71) 금융위원회 2015. 12. 2.자 보도자료(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 (이중확인: 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온라인·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강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변경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면방식 등 실명확인 보완 방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는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대면 또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중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방식의 실명확인 보완책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 02-2100-2976·2978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 25. 시행되어 모든 금융상품 거래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음
 -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6대 판매원칙 적용, 판매금지 명령,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이탈금지 제도, 소송중지 제도,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 요구권 강화 등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됨
 - 청약철회권, 상품정보 설명 의무화, 위법계약해지권 부여, 시장규율 확립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한 펀드상품 가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보다도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보호에는 취약한 상황이며, 이러한 보호의 한계는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보다 심각한 상황임
 - 가독성 등 고객 편의성 측면 뿐만 아니라 고객이 혼자 모든 가입단계를 진행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보다 고객 중심적 판매채널의 구축이 필요함
 -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회사와 거래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후 상품설명 의무 등이 강화되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상황이며, 2022년 1분기 예정이었던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지연되었음
- 최근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융취약계층이 대면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금융거래상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최근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²⁷²⁾되어 논의 중인바,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실제 대면 거래 과정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법에 의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바,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대면방식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 : 02-6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 02-2100-2633·2635

272) 2022년 4월 25일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5381)」과 2022년 5월 9일 이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5528)」에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 등도 금융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개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1 현황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벤처투자 중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초과하고²⁷³⁾, 그 중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RCPS)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벤처투자 수단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활용되는 이유는 다른 투자수단인 보통주, 전환사채와 비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가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들에 투자시, 투자자입장에서는 보통주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선호하며, 투자받는 기업의 경우는 보통주를 선호하지만, 만약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확정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환사채보다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함

【 보통주,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비교 】

| 구 분 | 의결권 | 배당우선권, 상환권 | 전환권 | 회계처리 |
|---------|-----|--|-----|--|
| 보통주 | ○ | X | - | 자기자본 |
| 전환사채 | X | 원금, 확정이자 지급 | ○ | 부채 |
| 상환전환우선주 | ○* | 1) 상환권 행사(O): 원금, 상환이자 지급 2) 상환권 행사(X): 이익범위 내에서 배당 | ○ | 1) K-GAAP: 자기자본 2) K-IFRS: 부채 혹은 자기자본 |
| 전환우선주 | ○* | - | ○ | 전환가격조정 유무에 따라 부채 혹은 자기자본 |

* 반드시 의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다수의 경우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가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음²⁷⁴⁾
- 다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진 주식으로, 투자자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에²⁷⁵⁾ 이를 자본으로 분류할 것인지, 부채로 분류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음

27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통계정보, 2022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22년 1분기에는 69.6%로 가장 높은 비중임.

274) 최영근,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환전환우선주 개선 정책 제언」, 『중소기업정책연구』, 겨울호, 2019.

- 국내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회계기준(K-GAAP)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일괄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우선주에 부착된 전환가격조정(Re-fixing) 조항의 유무, 상환청구권을 투자자(주주)가 보유하는지 발행회사가 보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²⁷⁶⁾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전환가격조정 조항이 없는 전환우선주와 전환가격 조정조항이 없으면서 상환청구권을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상환전환우선주뿐임
-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환권에 대해서는 전환가격조정조항이 붙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상장시 이들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 (주)아한 형제들, (주)야놀자, (주)위메프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들도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받았으며²⁷⁷⁾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2019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 금융감독원이 토스의 자본금 중 일부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²⁷⁸⁾ 이후 비바리퍼블리카는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고 전환우선주로 변경함²⁷⁹⁾

- 그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자본으로 분류한 사례들이 등장하여 명확한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표적으로 2019년 코스닥에 상장한 코리아센터는 상환전환우선주 260억원 가량을 투자받았는데, 이를 자본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과거 한국상장회사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²⁸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275) 발행회사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는 Call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라고 지칭함.

276) K-IFRS 제1032조에 따라 금융상품을 발행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구성요소를 지분 또는 부채를 분류한다. 김영준·이유진·이수정,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2020);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2020), 4면; 김범준·안혜진·최종학·곽수근, 「STX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전환상환우선주의 역할」, 『회계저널』 제27권 제1호(2018), 207면.

277)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2020), 7면.

278) 아주경제, “토스, 자본금 96억원 상환우선주... K-IFRS 적용하면 ‘자본잠식’”, 2019.9.20.; 조선비즈, “토스가 뭐길래, 금융위는 뜨겁고 금감원은 차갑고”, 2019.9.19.

279) 한겨레, “토스, 상환전환우선주 문제 해결... 인터넷은행 인가 청신호”, 2019.11.14.; 금융위원회,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인가」, 보도자료, 2021.6.9.

280)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이나,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언론기사 및 타 문헌에서 참조함. 김영준·이유진·이수정,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2020), 319면; 손혁·정재경, 「회제이-00094는 전가의 보도인가?: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1호, 한국세무회계학회(2022); 파이낸셜뉴스, “자본? 부채?... 메자닌 회계처리 두고 업계 혼란”, 2020.2.16.; 데일, “RCPS ‘자본 vs 부채’ 금융위도 ‘오락가락’”, 2022.3.24.

-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오도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환전환우선주를 자기자본 처리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자본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 | | K-GAAP | K-IFRS | |
|---------|----------|--------|--------------|---------------|
| 전환우선주 | 전환가격조정 유 | 자기자본 | 부채 | |
| | 전환가격조정 무 | | 자기자본 | |
| 상환전환우선주 | | | 상환청구권 투자자 보유 | 상환청구권 발행회사 보유 |
| | 전환가격조정 유 | | 부채 | |
| | 전환가격조정 무 | | 부채 | 자기자본 |

자료: 김범준 외(2018)²⁸¹⁾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복합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 기준이 회계처리 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가 언제나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판단하여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일부 기업의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 : 044-215-2538·2758·2685

281) 김범준·안혜진·최종학·곽수근, 「STX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전환상환우선주의 역할」, 『회계저널』 제27권 제1호(2018), 209면; 조성훈,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이슈보고서』 20-20, 자본시장연구원 (2020), 14면에서 재인용.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 현황

-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 횡령 등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는 기초적인 내부통제마저 미작동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내부통제 시스템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제1항제5호는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감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는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와 비교해보면 내부통제의 정의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준수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물질·인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²⁸³⁾
 -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마련 의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부담이 크고 추상적인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8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3)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제재는 기관제재와 인적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관제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영국과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 구축의무 위반시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²⁸⁴⁾
- 인적제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주요국과 규제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은행권의 CEO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증권사 CEO 대부분에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 해당 조항이 일종의 선언·권고 수준이며,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금융당국의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²⁸⁵⁾

2 향후 논의 사항

-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위반에 대해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²⁸⁶⁾
-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²⁸⁷⁾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3

284)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285) 시장경제, [금융 CEO징계 타당한가①] “내부통제 기준 모호, 자의적 처벌 남발”, 2021.5.25.

28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제2018-41호, 2018.10.19., 41-46면;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과 인식 미비에 대한 지적으로 안수현,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1호, 법무부, 2015, 81면; 임정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BFL』 제 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97면.

287) 이호섭·이석훈·안수현,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2-01, 자본시장연구원, 2022.1.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1 현황

- 보수환수(Clawback)는 계약에서 정한 특정 상황 발생시 혹은 위법행위가 있을시 기지급된 금전적·비금전적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또는 제도임²⁸⁸⁾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적 보수규제에 발맞추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을 수용하여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하여 일정기간 성과보수의 이연지급과 성과에 연동한 보수의 조정, 감액, 환수를 규율하였음
 - 하지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규제 성격을 띠기에,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
 -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제3항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정함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는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성과 악화 시 당초 약속했던 성과급보다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설계되도록 하고 있음
 - 동규정 제9조제5항제2호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9조제5항제3호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²⁸⁹⁾
 - 다만 위 조문은 환수를 의무화한다기 보다, 이를 마련한 경우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는 의무임
 - 환수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주식연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함²⁹⁰⁾

288) 정우영, 「이사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규제의 검토 - 과다 지급된 보수를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63면.

289)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 국내 금융회사 보수환수제도 변천²⁹¹⁾ |

| | 2010년 | 2014년 | 2016년 |
|----|----------------------------|----------------------|-----------------------------|
| 제도 |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 지배구조 모범규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감독규정 |
| 내용 | 보수환수, 축소가능 ²⁹²⁾ | 축소가능 ²⁹³⁾ | 이연가능* |
| 대상 | 경영진과 특정직원 | 경영진과 특정직원 | 임원과 특정 직원 |

* 이연만 가능한지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지 다름이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연만 가능할 뿐 환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보수환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현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그 의미상 성과보수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규상 의무가 부과되어 구속력이 강화되었다는 입장²⁹⁴⁾으로 견해의 다름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보수환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적 이유²⁹⁵⁾로 1) 환수제도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영성과가 나쁜 임직원에게 사후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2)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보수결정과 지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성과와 보수 간에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데, 환수규정이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3) 환수제도는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이유로 임원을 제재하여 기업이익의 정보가치를 개선하고 보수약정을 더 잘 설계하도록 이바지하며, 4) 환수조항은 기업의 불상사와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경영

290)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291) 한겨레,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2016.10.10.를 바탕으로 작성함

292) 2010년 1월 금융감독당국과 업계 공동 T/F를 통해 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예: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을 제정함. 이수정,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3.

29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2014.12.(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됨) 제45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③ 금융회사는 회사 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과거 변동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 중 단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이연지급) 금융회사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예: 40~60%)은 수년간 이연지급되어야 하며 변동보상의 비율은 직원 근무연수책임의 정도 등과 연동하여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진과 고액연봉 특정업무 종사자의 경우 이연지급되는 변동보상의 비율은 상당수준 이상(예: 60%이상) 이어야 한다.(...) 중략

294) 금융위원회, 「한겨레 10.10일자 「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 관련」, 보도자료, 2016.10.10.

295) 임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4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8-229면; Fried, Jesse & Nitzan Shilon, “Excess-Pay Clawback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6(4)(2011).

자들이 위험을 인수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만약 보수환수제도를 도입²⁹⁶⁾하면, 환수적용대상, 환수적용요건, 환수적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²⁹⁷⁾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02-2100-2833

296)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로는 김희철, 「이사의 과다보수 환수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5; 보수규제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특칙으로 하자는 견해는 인정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4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환수대상 보수와 환수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최문희,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과제-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중심으로」, 『BFL』 제7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297) 정우영, 「이사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규제의 검토 - 과다 지급된 보수를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73-77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1 현황

-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제도의 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은 금융회사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금자 개인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마련된 제도임²⁹⁸⁾
 -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하여 금융제도, 금융산업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우리나라는 예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②에서 비보호대상 예금은 열거함
 - 보호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한도²⁹⁹⁾로 하고 있음
 - 이는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현행 상황에 맞게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³⁰⁰⁾이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들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하며 보호한도를 증액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보호한도 비율(1.3배)은 미국(3.7배), 영국(2.5배), 일본(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임

298) 김은정,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210면.

29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300) 한겨레, “예금자보호 20년째 5천만원...예보시장 보호대상 높여야 되지 않나”, 2022.6.22.

| 예금보호한도 변경 연혁 |

| 구분 | 2010년 | | | | | 비고 |
|------------------------|--|------|------|------|------|--|
| | 은행 | 보험 | 증권 | 종금 | 저축은행 | |
| '97.11.19 이전 | 2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업권별 보호기구가 각각 보호 |
| '97.11.19 ~'98.7.31 | 전액보호 | | | | |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해소 |
| '98.8.1~ '00.12.31 | '98.8.01이후 가입: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 | | | | 금융시장 불안 진정 및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해소 |
| '01.1.1~ '15.2.25 | 5천만원 | | | | | 금융시장 안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분보호제 시행 |
| '15.2.26- 현재 | 5천만원, 퇴직연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 | | | | 노후자금 마련 지원 등을 위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보호한도 적용 |

*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국의 예금보호한도 비교³⁰¹⁾ |

| | 영국 | 미국 | 캐나다 | 일본 | 우리나라 |
|------|-----------------------------------|--------------------|------------------------|----------------------------|------------------|
| 보호한도 | 8만 5천파운드, 일시적 고액예금은 1백만 파운드 별도 한도 | 8개 소유권 범주별로 25만 달러 | 7개 소유권 범주별로 10만 캐나다 달러 | 1천만엔, 결제용 예금, 결제용 채무는 전액보호 | 5천만원, 퇴직연금 별도 한도 |

2 향후 논의 사항

■ 2022년 2월 23일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각계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예금보험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어야 함³⁰²⁾

- 예금보호 한도 증액 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개별 예금자보호가 강화되는 편익이 있으나, 예금보험료 인상이 대출이나 예금 금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되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을 검토해야

301) 예금보험공사,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와 예금보험제도」, 2017.12, 163면.

302) 금융위·예금보험공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2.2.23.

- 한다는 전문가 견해³⁰³⁾에 따라 증액 여부 및 증액할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걸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 02-2100-2915

303) 금융위·예금보험공사, 「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22.2.23, 3면(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발언).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1 현황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경영자는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고정보수만을 받는 경영자에 비해 주가를 상승시킬 인센티브가 있음³⁰⁴⁾
 - 「상법」 제340조의2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상법³⁰⁵⁾과 기업의 정관에서 주주총회결의일 이후 2년에서 일반적으로 4~5년 사이로 정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들은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 여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 약 878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바 있음³⁰⁶⁾
 - 경영진의 대규모 매도 사후 공시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강하여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졌고 의무보유확약 등에 걸려있는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일부 경영진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함
 - 카카오페이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
 - 당시에는 의무보유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전에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에 적용되는 것(6개월)과 달리, 상장 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행위는 위법은 아니었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수렴됨³⁰⁷⁾
 - 2022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즉,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이후 행사한 경우)에 대하여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하도록 함³⁰⁸⁾

30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6판, 박영사, 2022, 474면.

305)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06) 홍지연, 「성과보상 체계로서의 스톡옵션의 문제점 및 과제」, 『자본시장 포커스』 2022-05호, 자본시장연구원, 1면.

307) 이후 카카오페이는 2022년 1월 전 계열사에 대해 1년의 임원의 주식보호예수기간을 정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우는 2년의 매도제한기간을 둠

2 향후 논의 사항

-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에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나, 의무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직후 매도물량이 집중되면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물량 집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보유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 차등화(Staggered system)를 설정하여야 함³⁰⁹⁾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발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22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회사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³¹⁰⁾
 -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 매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됨³¹¹⁾
 -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공시를 하게 되면 시장에 주가가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 등³¹²⁾ 사전공시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 : 02-2100-2644·2685

308) 금융위원회, 「신규상장기업 임원의 부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22.2.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2022.3.18.;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2.3.17.

309) 금융위원회, 「신규상장기업 임원의 부식 의무보유가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2022.2.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2022.3.18.

310)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최-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보도자료, 2022.6.17. {내부자 증권거래가 시장가격 형성 기능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공시가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 의견)}.

311)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15235(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312) 비즈뉴스와치, “‘소액주주보호’ 드라이브 건 금융당국...의견 좁히기는 ‘과제’”, 2022.6.21.

국민권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1 현황

-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함)를 말하며,³¹³⁾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인 예임
 - 전세계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말 기준 2조 3,104억달러로, 2019년말(1,910억 달러)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음³¹⁴⁾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³¹⁵⁾
 - 일례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직자가 로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³¹⁶⁾
-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미비한 측면이 있음
 - 주식·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3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3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 p.106.

315) 김남욱·신봉기,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부패방지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 p.88; Eric Yoder, “Financial reporting, conflict of interest rules for federal employees apply to virtual money, ethics office says”, *The Washington Post*, June 18, 2018.

316) Stu Alderoty, “The speech that muddled the crypto waters”, *Fortune*, June 13, 2022; Kevin Helms, “Government Watchdog Investigates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SEC Officials, Crypto, XRP, Ripple Lawsuit”, *Bitcoin.com*, August 18, 2021.

- 각 부처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신고의무 및 대체자 지정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사례도 확인됨
- 또한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윤리 규범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직무의 공정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규범의 공백으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³¹⁷⁾
 - 현재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관련 금융 규제와는 별개로 유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방지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³¹⁸⁾
 - 공직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해충돌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대상에도 포함시키고 있음³¹⁹⁾
 - 미국에서 재산등록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윤리청(OGE)은 가상자산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안내함³²⁰⁾
 - 보고 기간 말에 가상자산의 가치가 \$1,000 이상이거나 보고 기간 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2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함

317) 김정환 외,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연구총서 2021-13), 사법정책연구원, 2021, p.277.

318) 김남욱·신봉기, 「자본 및 금융영역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부패방지법연구』 제4권 제2호, 2021, p.116.

319) Eric Yoder, "Financial reporting, conflict of interest rules for federal employees apply to virtual money, ethics office says", *The Washington Post*, June 18, 2018.

320) "Public Financial Disclosure Guide", OGE(최종 검색일: 2022. 6. 23.), <<https://www.oge.gov/Web/278eGuide.nsf/2f96d42716636dbf85257f490052263c/ef342fb79e0abcc4852582b0004dd6c3?OpenDocument>>

-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를 마련해두고 있음³²¹⁾
 - 이에 따르면, 관련 공직자는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고, 가상자산에 기반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임하기 전에 윤리적 조언을 구해야 함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 044-200-7677

321) “Guidance Regarding Ethic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mployee Holdings and Transactions in Cryptocurrencies”, CFTC(최종 검색일: 2022. 6. 23.), <https://www.cftc.gov/sites/default/files/idc/groups/public/%40newsroom/documents/file/bitcoin_grelrrehtc020418.pdf>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정비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법체계상, 공무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여러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음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동산 및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각종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함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기존 개별 법령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들을 보완하고 종합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위 개별 법령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중 일부가 삭제·정리되지 않고 남아있음
 - 2022년 6월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삭제하는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일부 중복 규정들이 잔존하고 있음

| 이해충돌 관련 유사 규정 현황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공무원 행동강령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 제4조 | 제2조의2 | 제6조 |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제6조 (매수 신고 관련) | 제14조의16 (매수 신고 관련) | |
| 이해충돌 관련 직무 변경 | 제7조 | 제14조의13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제5조 | | 제5조(삭제) |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8조 | | 제5조의2(삭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9조 | | 제16조(삭제) |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제10조 | | 제5조의3(삭제) |
| 가족 채용 제한 | 제11조 | | 제5조의4(삭제) |
| 수익계약 체결 제한 | 제12조 | | 제5조의5(삭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3조 | | 제13조(삭제) |
| | | | 제7조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14조 | 제13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제12조 |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15조 | | 제5조의6(삭제) |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여러 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각 법령별로 제재 수준도 각기 달라 법체계 정합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책임을 각 규정함

2 향후 논의 사항

- 여전히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체 이해충돌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공직윤리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예컨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등 일부 개별제도만 「공직자윤리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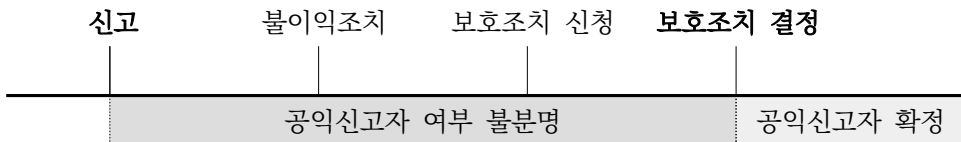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 044-200-7672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1 현황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면 해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신고자가 신고를 한 후에도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지 알기 어려움
 - 신고자는 신고 후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사후에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전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음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보호조치 신청 절차 외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일부 중요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신고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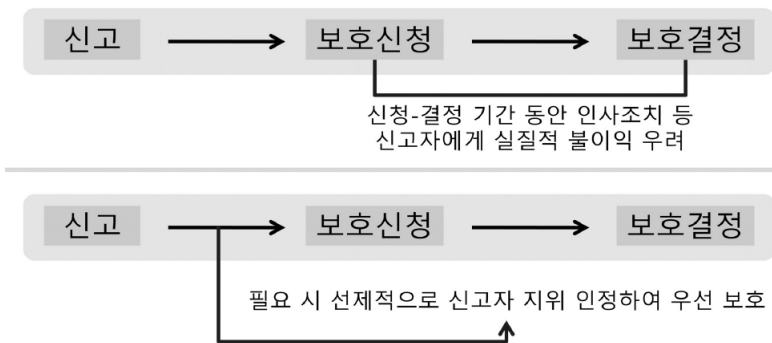
-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해당 기간동안 신고자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각종 불이익 조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³²²⁾

32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9.

2 향후 논의 사항

-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행해지기 전이라도, 사전에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 보호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해주는 방안이 제안됨³²³⁾

|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관련 개선방안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9.

- 참고할 만한 유사 제도로써,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 관한 법리가 있음
 -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행의 소 혹은 형성의 소 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 40089 판결 등, 이른바 ‘확인소송의 보충성’)
 - 다만,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행의 소 혹은 형성의 소 등)과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65.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 등)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 이익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신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23.

- 이를 위해 단순한 사건은 접수단계에서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는 한편,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집중하는 방안이 제안됨³²⁴⁾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044-200-7757

324) 김윤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분석 및 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2021, p.196 이하.

공익신고 보상금

1 현황

-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상금 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경제적 지원조치를 통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함³²⁵⁾
- 그러나 신고자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에 비해 보상금의 지급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³²⁶⁾
 - 현행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상금 지급비율도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구간제 구조로, 고액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³²⁷⁾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2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 40억원 초과 | 3억 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임(2018. 5. 1. 신고부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신고제도 안내』(최종 검색일: 2022.6.17.),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80100>>)

- 관련 법에서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구 「부패방지법」 2002년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년) 2021년 10월까지 국가·지자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4,238억이었는데,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367억으로, 평균 8% 정도였음. 또 역대 최고 보상금은 11억 원으로, 비리 신고로 환수한 263억의 4%에 그침³²⁸⁾

325) 이영우·장수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연구 -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22, p.184.

326) 이재학, 「공익신고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7; 박정훈,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경회법학』 제48권 제4호, 2013 등.

327)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30.

- 비교 사례로서, 미국에서는 제약사의 직원이 진통제의 부작용 은혜를 고발하여 5,150만 달러 (2022년 6월 환율 기준으로 대략 650억원)의 보상을 지급받은 사례,³²⁹⁾ 자동차 제조사의 직원이 엔진 결함 문제를 신고하여 2,430만 달러(약 300억원, 이는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함)의 보상을 지급 받은 사례³³⁰⁾ 등이 알려져 있음
-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신고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충분히 전보하지 못할 경우, 공익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보상금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기존의 구간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 보상금의 상한규정(30억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됨³³¹⁾
 - 보상금 지급 수준이 증대되면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구조적·고질적인 대형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상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³³²⁾
-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익신고 제도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따라 투자자 보호 기금(investor protection fund)으로부터 나온 포상을 받을 수 있음³³³⁾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044-200-7757

32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 원 지급」, 2021.11.11.

329) 전원열, 「사인대행소송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원고적격과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p.161; Bill Berkrot, "Pfizer whistleblower's ordeal reaps big rewards", *Reuters*, September 3, 2009.

330) 김민지, 「"공익신고로 280억 받았지만, 한국에선 하지 마세요" 전 현대차 직원의 우울한 충고」, 『서울신문』, 2021.11.14.; Ben Foldy, "U.S. Auto-Safety Regulator Pays \$24.3 Million to Hyundai Whistleblower in First-Ever Award",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9, 2021.

33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30.

332) 이재일, 「공익신고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 『이슈와논점』 제1281호, 2017, p.4.

333) 최자유, 「증권 불공정거래 공익신고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소고」, 『사법』 통권 제59호, 2022, p.708.

부패방지 법률 일원화

1 현황

- 현재 각종 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이 5개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각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위 법률들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유사하고,³³⁴⁾ 신고 대상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위 법률들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이 거의 중복된다고 지적됨³³⁵⁾

| 부패방지 법률 신고대상 행위 |



자료: 이천현,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p.204.

- 위 법률상 보호·보상 규정 역시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여 각종 부패 관련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유사함
- 이에 유사한 취지의 부패신고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법률이

334) 이천현,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p.203.

335) 이천현,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p.204.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위 5개 법률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보호·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시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보상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함

| 부패 관련 법률별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 |

| 구분 | 공익침해행위 신고 | 부패행위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 이해충돌 신고 |
|------------|------------------|-------------|--------------|----------------|-------------|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 × | ○ | × | × | × |
| 이행강제금 | ○ | ○ | × | ○ | ○ |
| 보상금 지급대상 | 내부 신고자 | 권익위에 신고한 자 | 모든 신고자 | 모든 신고자 | 모든 신고자 |
| 보상금 지급요건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 회복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
| 보상금 지급비율 | 4~20% | 4~30% | 정률 30% | 4~30% | 4~30%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17.

- 그 결과, 유사한 취지의 부패관련 신고에 대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생김
 - 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전자를 적용한다면 4~20%(구간제)의 보상금 지급비율이, 후자를 적용한다면 30%(정률)의 보상금 지급비율이 적용됨

■ 각종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국민이 신고 후 어느 법에 근거하여 어느 만큼의 보호·보상을 받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움.³³⁶⁾ 또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신고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³³⁷⁾

336) 이천현,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p.203.

337)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14.

2 향후 논의 사항

- 현재 5개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부패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통합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합의 방식에 관하여, ①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일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 ②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패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³³⁸⁾
 - 통합의 범위에 관하여, ① 모든 부패 관련 신고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보호·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³³⁹⁾ ② 일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보상 정도에 있어서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³⁴⁰⁾ 등이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044-200-7757

338) 이천현,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pp.203-218.

339)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17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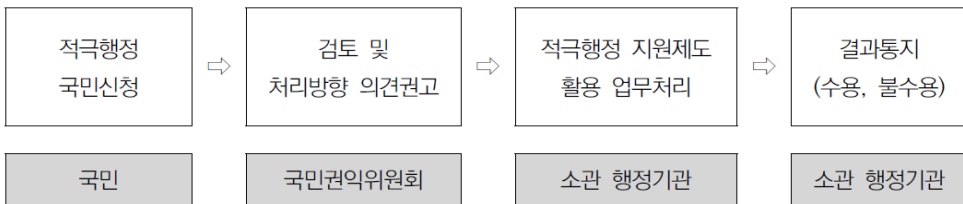
340) 이천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추진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44; 김형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의 의미와 과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 p.5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1 현황

- 지난 2021년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은 해당 제도를 통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함³⁴¹⁾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³⁴²⁾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절차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4.

- 2021년 제도 시행 후 5개월 간(2021년 7월 ~ 12월)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총 1,667건으로 그 중 1,570건이 처리되었으며, 92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의견을 제시함

| 적극행정 국민신청 현황 |

| 접수 | 처리 | | | 확인조사중 |
|-------|-------|------|-------|-------|
| | 합계 | 권고의견 | 이송·종결 | |
| 1,667 | 1,570 | 92 | 1,478 | 9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5.

34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342)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4.

- 그런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개별 민원보다는 공익 목적의 정책·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³⁴³⁾ 기존에 운영 중인 국민제안과 제도의 취지가 유사하여 국민이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정책·제도 개선 요청 제도라는 점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국민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먼저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거치도록 요구하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복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여 절차가 번거로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됨³⁴⁴⁾

2 향후 논의 사항

-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당 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³⁴⁵⁾
 - 유사한 제도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 국민제안 등 제도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의견 접수 창구를 단순화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족한 인지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김형진 ☎ : 02-6788-3842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 : 044-200-7273

343)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4.

344)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7;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100일 운영실적 및 발전방안』, 2021, p.7.

345) 국민권익위원회, 『2021 국민권익 백서』, 2021, p.40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

1 현황

- 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³⁴⁶⁾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³⁴⁷⁾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기복무 제대군인³⁴⁸⁾의 경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25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³⁴⁹⁾의 경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와의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³⁵⁰⁾
- 결과로써, 2022년부터 중기복무자 월 50만원, 장기복무자 월 70만원으로 전직지원금이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상한액(2022년도 현재 198만원) 대비

3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347)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348)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349)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350)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및 2019년도 국정감사,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안 검토 시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중기복무자 25%, 장기복무자 35% 수준에 각각 해당하여 여전히 형평성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연도별 지원건수 및 지원액 |

(단위: 명/백만원)

| 연도 | 계 | | 중기 | | 장기 | |
|------|--------|-------|-------|-------|-------|-------|
| | 지급인원 | 지급액 | 지급인원 | 지급액 | 지급인원 | 지급액 |
| 2019 | 10,865 | 3,314 | 9,031 | 2,358 | 1,834 | 955 |
| 2020 | 10,760 | 3,314 | 8,709 | 2,253 | 2,051 | 1,061 |
| 2021 | 10,698 | 3,314 | 8,617 | 2,228 | 2,081 | 1,086 |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관련 자료 요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2.6.14.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와의 비교 |

| 구 분 |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
|--------------|--|---------------------------------------|
|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4조 |
| 대상자 |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평균연령 29.1세 |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
| 지급신청 기간 | 전역후 6개월 이내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지급액 | 중기 : 50만원(구직급여 25%) 장기 : 70만원(구직급여 35%)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
| 지급 상한기간 | 미취업기간 6개월 |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 중도 취업자 지원 |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
| 고용보험가입 여부 | 미가입 | 가입 |
| 중복여부 | 중복지급 불가 | |

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관련 자료 요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2.6.14.

2 향후 논의 사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적정 수준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상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재정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양혜자 ☎ : 02-6788-4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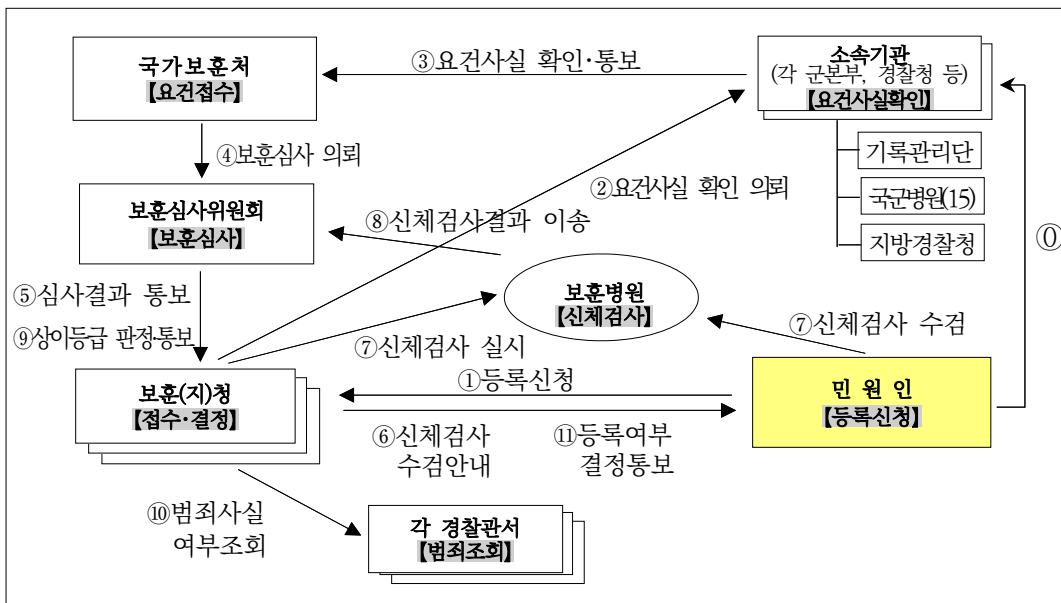
관련부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 044-202-5731

보훈대상 심사제도

1 현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등록 신청과 요건사실 확인, 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보훈대상자 등록 및 결정 절차 |



자료 : 국회정무위원회, 2021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 최근 5년간 보훈대상자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대상자 등록신청 후 등록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처리기간은 2017년 258일, 2018년 260일, 2019년 286일, 2020년 283일, 2021년 240일로 평균 266일(약 9개월)이 소요됨. 그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7년 63일, 2018년 91일, 2019년 118일, 2020년 97일, 2021년 75일로 평균 89일(약 3개월)이 소요됨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도별 보훈심사(요건) 건수 및 심사기간 |

| 구분 | 보훈심사위원회 | | 전체 처리기간 (일수) |
|-------|----------|----------|-----------------|
| | 요건심사(건수) | 심사기간(일수) | |
| 2017년 | 7,546 | 63 | 258 |
| 2018년 | 7,740 | 91 | 260 |
| 2019년 | 8,016 | 118 | 286 |
| 2020년 | 9,633 | 97 | 283 |
| 2021년 | 7,037 | 75 | 240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관련 자료 요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2.6.14.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2020년에 전자심의제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심사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활용³⁵¹⁾하는 등 보훈대상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 그러나, 이처럼 보훈대상자 결정을 위한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등록신청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심사기간 동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³⁵²⁾

2 향후 논의 사항

- 보훈대상자 등록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보훈대상 등록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도 전자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회의 개최 횟수가 27회, 심의 건수가 942건으로 대면회의 개최 횟수 222회, 심의 건수 6,095건과 비교할 때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처리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전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심사 안전을 확대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전자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51)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심사지원 인력 16명을 고용하여 운용함

352)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국정감사,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예산안 검토 시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 또한, 현행 보훈대상자 심사절차를 분석하여 지연의 주요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 체계화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지원 인력의 충원 등 심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양혜자 ☎ : 02-6788-4566

관련부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심사1과
☎ : 044-202-5431·58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

1 현황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³⁵³⁾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³⁵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는 자산관리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2022년 6월 카카오페이는 카드 추천 서비스를 출시함. 이용자의 소비 패턴, 소비 규모 등을 따져 생활 습관에 맞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임. 소비자가 주유비 지출 비중이 크다면 주유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골라서 추천하는 방식임³⁵⁵⁾
 - 한편,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에 따라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1년 2월부터 시작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운영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고객 이익 우선’임³⁵⁶⁾
 -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임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

353)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354) 제2조제9의2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55) 조윤진, 「마이데이터 기반」 카드 추천…카카오페이, 업계 첫 서비스, 『서울경제』, 2022.6.23.

356)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수집이 가능함. 또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도 위임받을 수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 시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그러나 최근 2022년 6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허용된 데이터베이스(DB)판매업을 활용한, 토스(toss)의 ‘내 보험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음

- 토스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판매하였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돈을 주고 자신의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토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³⁵⁷⁾

2 향후 논의 사항

■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작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제공 정보의 범위, 제3자 정보제공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음. 이번 토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데이터 판매가 합법일지라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있음

- 4차산업혁명명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35.5%(들어본 적이 있음), 35%(어느 정도 알고 있음), 그리고 3.7%만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³⁵⁸⁾
-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66.8%가 아직 마이데이터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이 아직 마이데이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할 의향을 물었을 때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³⁵⁹⁾

357) 김호숙, 「토스가 촉발한 '고객 정보 판매' 논란」, 『데일리안』, 2022.6.15.

358) 4차산업혁명명위원회,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2022.4.25.

359) 강나영 외 4인, 「금융소비자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맞춤형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의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2022.

- 따라서 국민들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를 받을 때 명시성을 확보하는 등의 금융업계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최정민 ☎ : 02-6788-4565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02-2100-3078, 02-2100-2696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 현황

-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함
- 개인정보 유출 시의 진행 과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포털로 직접 신고한 경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게 된 경우를 통해 조사가 시작됨. 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 의결로 시정조치,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 이고, ‘업무 과실’이 8만 건(55.6%), ‘해킹’이 6만4000건(44.4%)임³⁶⁰⁾
 - 2019~2021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직 등은 141명임(공무원 133명, 공무원직 등 기타 직군은 8명)
 - 20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조회하고 이를 유출해, 피해자 협박 등에 악용된 사실이 알려져 사회복지요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그러나 최근 2022년 1월에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에까지 악용된 사례로, 지자체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 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실시함³⁶¹⁾
 - 개인정보 관리체계(인프라)·보호대책(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침해대책(사고·유출대응 및 보안)의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하였음
 - 분야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93점)·보호대책(90점)·침해대책(82점)으로 침해대책 분야가 다소 미흡하였음

360) 송금종, 「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계속되는 이유 뭘까」, 『쿠키뉴스』, 2022.1.19.

3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795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2022.2.9.

- 침해대책 분야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이 71점으로 가장 미흡하였음

■ ‘2021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비율도 전체의 24.8%에 달함³⁶²⁾

2 향후 논의 사항

■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업무 특성상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령 준수 의무와 책임감이 요구되며 정보 접근기록 보관, 접근통제³⁶³⁾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유출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됨.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1-2호)³⁶⁴⁾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자는 의견³⁶⁵⁾이 있음

● 한편, ‘2021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CPO)를 제외한 전담 인원이 공공기관은 평균 0.5명이고, 업무경력³⁶⁶⁾도 짧아³⁶⁷⁾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³⁶⁸⁾가 있음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최정민 ☎ : 02-6788-4565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 : 02-2100-3102

3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2.

36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자료,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방향」, 2022.01.12.

364)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27, 2022.01.28.)

366) 공공기관 개인정보 책임자(CPO)의 경우 2년 미만이 57.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2년 미만이 51.5%임

36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2.

368) 김기배, 「보안칼럼: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자신문』, 2022.4.26.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1 현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임³⁶⁹⁾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등
- 특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³⁷⁰⁾³⁷¹⁾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다른 지자체가 신청하여 허용된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준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심의·의결제도의 효과 저하가 우려된 바 있음³⁷²⁾
- 아래 표는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결과임. 중앙행정기관의 35개(73%), 광역자치단체의 12개(71%)가 양호등급을 받았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양호등급이 106개(47%)에 불과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는 기관별(중앙행정기관 48개, 지자체 243개, 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기업 154개)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을 실시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84.3점에서 87.4점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369)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370)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제5호

37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5월에 최신 심의의결 사례를 담고 있는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함. 해당 모음집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의결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운용에 관한 사항(제7조의9제1항제5호) 31건,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제7조의9제1항제6호) 15건 등을 포함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알쏭달쏭한 개인정보 법령 해석, 한눈에 쉽게 본다」, 2022.5.9.)

372) 박광하, 「개인정보 오용 빈번한데 실태조사 실적은 '제로」, 『정보통신신문』, 2021.8.23.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양호등급은 전체 226개 중 절반도 미치지 못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³⁷³⁾

|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관리진단수준 |

| 구분 (기관수) | 평균 (795개) | 중앙행정기관 (48개) | 지방자치단체 | | 산하공공기관 (350개) | 지방공기업 (154개) | |
|-------------|--------------|-----------------|----------|----------|------------------|-----------------|----------|
| | | | 광역시(17개) | 기초(226개) | | | |
| 결과 | 87.4점 | 93.2점 | 87.7점 | 86.5점 | 87.2점 | 87.2점 | |
| 등급 별 | 양호 | 452개(57%) | 35개(73%) | 12개(71%) | 106개(47%) | 208개(60%) | 91개(59%) |
| | 보통 | 274개(34%) | 13개(27%) | 3개(18%) | 100개(44%) | 112개(32%) | 46개(30%) |
| | 미흡 | 69개(9%) | 0개(0%) | 2개(11%) | 20개(9%) | 30개(8%) | 17개(11%) |

주: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795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2022.2.9.

2 향후 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업무가 많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일이 많으므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지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43개 중 23개(9%)에 불과함³⁷⁴⁾
- 다른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신청하여 허용된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준용할 수 있음에도 의결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어 의결내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중앙행정기관 64.7%, 광역지자체 52.9%, 기초지자체 37.7%)³⁷⁵⁾

작성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최정민 ☎ : 02-6788-4565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 : 02-2100-3045

3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795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는?」, 2022.2.9.
 3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블로그,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2022.6.14.
 37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2022.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로부터의 아동 보호 강화

1 현황

- 아동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 시간과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만 3~9세 어린이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1시간 21분, 태블릿 PC를 48분씩 이용하고 있음
 - (통계청 ‘2021년 청소년 통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27.6시간으로 2019년 17.6시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만 10~19세의 전자상거래 경험은 2019년 39%, 2020년 32.4%이었고 2021년에는 44.6%를 차지함
-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자, 아동 대상 온라인 서비스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상업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음
 - 아동 대상 앱의 수는 앱 마켓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³⁷⁶⁾, 이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행태정보 등이 수집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광고에 이용되는데, 광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동 대상 앱을 통한 광고 지출이 다른 앱보다 3배 많음³⁷⁷⁾
 -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의 조사에 따르면 EBS 사이트에서도 24개의 광고 추적기가 아동의 검색 정보, 행태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15개 광고회사에 전송하고 있어, 아동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는 온라인상 교육에서도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아동의 무분별한 소셜네트워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고 아동을 맞춤형 광고 대상자로서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은 2021년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법정대리인이 통제하도록 하고,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376) pixlate, 「Mobile apps: google vs. apple COPPA scorecard(children's privacy)」, 2022,1Q, p.6.

377) pixlate, 앞의 글, p.8.

를 받을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동법 제39조의3 제5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39조의3 제6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추진과제로 아동을 위한 보호 기반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 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음

■ 미국은 현재 연방 차원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지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이하 'COPPA')」을 1998년에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COPPA는 사업자단체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FTC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FTC가 공공의견 수렴을 거쳐 18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EU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GDPR은 법적 효과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아동이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Recital 71), 아동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관련 위반은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고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아동 정보 수집과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앱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 여지가 적은 만큼 최소 수집의 원칙 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유형 및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현황 및 기업의 자율규제 상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 : 02-6788-4713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 02-2100-3052

정무위원회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정부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음

| 상임위원회 | 정부부처 | 피감기관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
| 정부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108 | 69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 금융감독원 | 46 | 86 | |
| | | 예금보험공사 | 10 | 11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16 | 13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9 | 21 | |
| | | 신용보증기금 | 31 | 11 | |
| | | 한국산업은행 | 27 | 26 | |
| | | 중소기업은행 | 15 | 14 | |
| | | 한국예탁결제원 | 8 | 8 | |
| | | 한국해양보증보험 | - | - | |
| | | 서민금융진흥원 | 11 | 13 | |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91 | 49 | |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5 | 13 | |
| | | 한국소비자원 | 12 | 3 | |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76 | 57 | |
| |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22 | 26 | |
| | | 국토연구원 | 2 | 2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 - | |
| | | 산업연구원 | 3 | - |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1 | 1 |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 1 | |
| | | 통일연구원 | 2 | 1 | |
| | | 한국개발연구원 | 2 | 1 | |
| | | 한국교육개발원 | 2 |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 | 2 | |
| | | 한국교통연구원 | 1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 2 | -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2 | |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 | 1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 | - |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 - |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 | 1 |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 | 2 | |

| 상임위원회 | 정부부처 | 피감기관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
|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7 | 12 | |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19 | 19 |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4 | 2 | |
| | | 독립기념관 | 1 | 1 | |
| | | 88관광개발(주) | 1 | 1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9 | | |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 공정거래위원회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년 연속 | 1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로펌과의 유착관계 근절 | 외부인 접촉보고 누락 방지 및 면담기록 작성 등 개선방 안 마련 | 전관예우 등에 관한 재검토 필요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2 |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 총수일가 관련 통제회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부의 편법적인 승계·이전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
| | 3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부당이득 환수나 법 위반행 위 억제력 제고 측면에서 부 당지원행위 꺾임금 부과기 준 개선 | 과징금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같이 활용 할 필요 | |
| | 4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 강화 |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자 사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만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 사 필요 | -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 른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정 의 필요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함께 모범거래기준 등 연성규범 도 입 필요 - 다국적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에 대한 경쟁법적 고민 필요 | |
| | 5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경제·기업부담 가중을 고려 하여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공정위에서 미 리 확인하고, 담합 조사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후 담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운용방안 마련 필요 | |
| | 6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조사 |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의 자 의적 광고제한 기준에 대한 조사 요망 | 일부 해외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 토 필요 | |
| | 7 |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업자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제한 |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하도 급법 위반시 선정결과 취소 방안 검토 | -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 대 한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실제 공정위 내부 기준을 통해 축소 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 위반 사업자가 동반성장 최 우수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한 개 선책 마련 필요 | |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8 | 공정거래위원회 | 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의 경쟁제한성 검토 | 편의점 간 거리제한 자율규약이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지 검토 필요 |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
| | 9 | 공정거래위원회 | 조선업에서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 조선사의 일방적인 작업별 능률 설정 등을 통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조사 | 조선 3사의 갑질로 인한 하도급대금 정산 기준 마련 필요 | |
| | 10 | 공정거래위원회 | 리니언시제도의 개선 |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리니언시 제도 악용 우려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 리니언시 감면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시 5년 이내에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
| | 11 | 공정거래위원회 | 기술유용행위 등 관련 | 기술탈취에 대해 10배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 추진 필요 | 기술유용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의 기술력, 전문성을 보강할 것 | |
| | 12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위반업체 처벌 관련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
| | 13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 -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강구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 방안 마련 필요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
| | 14 | 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방안 마련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 -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 강화 - 오픈마켓 구매대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방안 강구 | |
| | 15 | 한국소비자원 | 부당광고 감시 |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부당광고 감시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 | 16 | 한국소비자원 |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소비자소송지원제도 및 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 17 | 한국소비자원 | 분쟁해결기준 개선 | 예식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의 개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

2 금융위원회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년 연속 | 1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 업비트는 허수주문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격 조작 등 범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 | 북한 암호화폐 절취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 | 금융위원회 | 금융사의 점포 축소에 따른 대책 | IT 발달에 따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금융권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바, 기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은행 점포폐쇄 및 ATM 감소에 대응하여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
| 3 | 금융위원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기업은행 내 장애인 무기계약 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T/O 확대를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것 | 기업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
| 4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행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 5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암보험 | 요양병원 비용 포함여부에 대한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행정지도 필요 | 암보험 가입자의 실제 입원일수 등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
| 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즉시연금보험 | 무해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강화 즉시 시행 필요 | 무해지환급형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가 크므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등 기존계약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 | |
| 7 | 금융감독원 | 고위험파생상품 |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방안, 펀드리콜제, 미스터리쇼핑 강화, 사후보고 충실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 8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 실시 등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보이스피싱 방지앱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면 계좌정지, 수사진행,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통합시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과다 발생 금융회사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 |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 | <p>템 도입을 검토할 것</p> <p>- 보이스피싱 방지 앱 활성화,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p> | | |
| 9 | 금융감독원 | 공매도 |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높는데, 공매도 관련하여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매도거부로 확인된 건을 조사하고 무차입공매도 위반사항을 확인할 것 | |
| 10 | 금융감독원 | DLF | DLF와 같이 상품 설계,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성 사전경고 시스템이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DLF 판매 과정을 살펴보면 공모규제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할 것 | |
| 11 | 금융감독원 | P2P대출 | P2P대출의 부동산 쓸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P2P금융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P2P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업체 중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서 대부분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것 | |
| 12 | 금융감독원 | 독립보험대리점 (GA) | 보험업계의 영업방식, 수수료 체계, 소비자 피해구제 방식 등 GA제도 전반에 대해 감독당국의 실태점검 및 판매시스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을 검토할 것 | GA가 방송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 13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내부통제 | 은행의 내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제재나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 14 | 금융감독원 | 미스터리쇼핑 | 금융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투자성향 평가 체계 및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여 제시 및 적용하고 이를 금감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스터리쇼핑 시 확인할 것 | |
| 15 | 금융감독원 | 불완전판매 |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고령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기획재정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기획재정위원회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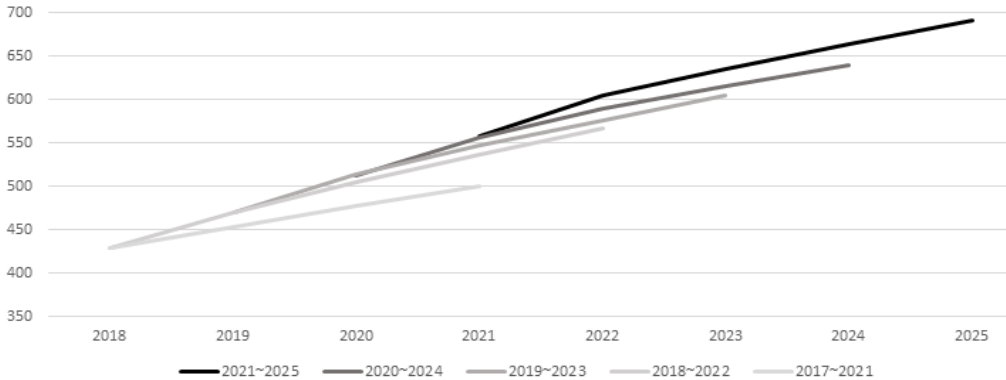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 계획임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방향, 재정지출·수입 증가율 및 근거, 조세·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됨
 - 이러한 5년단위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채무관리 등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운용 기조 및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데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국회 심의 및 사후 검증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등 중장기적 재정운용의 합리적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정 방식이 아닌 1년 단위의 연동 방식으로 작성됨에 따라 매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전망과 목표를 수정하고 있어 중기 재정운용 계획으로서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지출·수입 계획과 실제 예산 운용과의 괴리 역시 상당하여 심의자료로서 활용도가 미약함
 - 또한 계획의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심의와 사후 검증 등은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음

|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



주: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부터 2021~2025까지)

2 개선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국가재정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일정 수준 강제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는 재정운용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예산 전체에 대한 1년 단위의 연동방식이 아닌 일정 기간 고정방식 또는 일부에 대한 지출상한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계획기간 중 전반부(또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고정방식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는 반면 후반부는 구속력을 일부 완화하여 고정방식과 연동방식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방안³⁷⁸⁾이나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지출상한을 두는 방안³⁷⁹⁾ 등이 있음
- 또한 계획 작성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⁸⁰⁾
 - 중·장기적 시계의 지출·수입 계획이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단순 예측자료에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 예측모델의 정교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 보고서’를 통해

378) 박형수 외,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및 김대철·박승준,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운영 평가 및 과제」, 『제도와 경제』(제9권 제1호), 2015. 02.

379) 김용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8. 06.

380) 김춘순, 『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2018, p.745.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외부기관 수행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³⁸¹⁾

- 장기적으로는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안과 별도로 심의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이나 재정총량 규모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른바, 사전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 044-215-5720

3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104846)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1 현황 및 쟁점

- 지출구조조정이란 기존의 재원 배분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지출을 위한 재정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안이며, 통상 특정한 신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의 세출감액 활동을 지칭함. 광의의 개념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까지 포함
 - 특히 추경 재원마련에 있어 국채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없이 기존의 예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들어 지출구조조정의 활용 사례가 많아지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세입 경정을 통해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382)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재원 마련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2020년 제2·3회 추경에서도 활용된 바 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사업 선정 및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특히, 새정부의 첫 추경임에 따라 본예산 집행 중에 새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구조조정 대상 분야를 임의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산삭감에 따른 기존 사업 축소 및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2 제도 운영상 한계

- 추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단기간의 감축 시도에 따른 재정 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대표적으로 계속사업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임
 - 지출 시기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 집행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예산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아 사실상 지출 이연에 해당함. 불용 이월 발생 사업 감액의 경우에도, 집행부진 상황이 해소되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증액 편성되는 경우도 상당함

382) 추경 예산안 기준 7.0조원 규모(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0.2조원이 복원됨)

- 지출구조조정의 단순한 방법으로서 각 기관별로 지출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나 운영경비 등의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일률적 삭감은 단기간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삭감 결과가 장기간 계속 유지되기 어렵고,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성장동력 마련 등 재정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 개선과제

-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 재편성 등의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적기 투입이 어려워지므로, 본 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세부사업별 재정소요 예측 및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집행부진이 이어지는 경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재설계 또는 축소 등을 과감히 실시하여야 함
- 성과관리 예산제도(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 예산 - 성과 간의 충분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상대평가를 통한 ‘미흡’ 사업에 대한 일괄적 지출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세출삭감이 아닌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구조 합리화 등 재정운용의 장기적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부처·기능간 예산 배분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운용 논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 : 044-215-7130

재정정보 공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재정정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재정이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의 재정 지출 및 수입 관련 정보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성과 및 정책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도구라 할 수 있음³⁸³⁾
 - 이러한 재정정보는 일정 수준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재정정보의 투명성은 행정부가 생성·보유하는 재정정보를 예산안 편성·집행·결산·성과평가 단계 등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재정운용 과정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함³⁸⁴⁾
 - 더욱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국회가 상호 균형적인 재정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의회의 기능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임
-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개별법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별도의 시스템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운영의 비효율 및 재정정보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³⁸⁵⁾
 -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간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의 양식이 달라 정보의 통합이 어렵고 재정정보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정부의 통합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는 것임

383) 정성호,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2021. 11.

384) 서재만, 「재정정보 공개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0. 12.

385) 국경복,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언」,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19.6.5.

|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현황 |

| 시스템명 | 근거법 | 소관부처 | 주요 재정정보 공개 내용 |
|--------------|-----------------|-------|--------------------------------------|
| 열린재정 | 국가재정법 | 기획재정부 | 중앙정부의 예산 및 결산, 집행, 수입현황, 국가채무 등 |
| 지방재정365 | 지방재정법 |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 집행, 재정자립도 등 |
| 교육재정 알리미 | 지방재정법 | 교육부 | 시·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 |
| 온통조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공공조달에 관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
|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집행현황, 보조사업자별 보조사업 집행내역 등 |
| 알리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0. 11.

■ 한편, 예산안(추경 포함) 등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정보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 국민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재정정보의 투명성 정도가 국회 및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현행 법령상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등의 재정통계 및 재정 관련 중요사항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동시에 세부사업 단위로 매일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 개선방안

■ 각 개별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정보의 공개에서 벗어나 단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 개별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또한 가공·분석 등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후 장기적 과제로서 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단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참고로, 개별 기관에서 관리·공시하고 있는 재정정보를 일원화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111호)」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음

- 재정정책 운용 기조 설정, 분야별 재정분배 문제 등 거시재정 운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관한 제반 정보가 체계적이고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러한 재정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배경하에서 예결산 관련 국회 과정의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과
☎ : 044-330-1536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 운영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국고채 이자상환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집행됨. 정부는 예산 편성 시점까지의 기 국고채 잔액에 대해서는 차입 당시 예수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차입할 예수금에는 금리를 추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산출하고 있음
 - 이때, 기 발행분에 대해서는 실제 확정이자를 적용하는 반면, 예산안 편성 이후의 국고채 발행에 대해서는 적용 금리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일정 수준의 오차는 불가피함
 - 정부에서는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을 과소하게 편성하여 연중 기금 운용 및 이자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신용도의 부정적 영향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³⁸⁶⁾
- 다만, 연례적으로 국고채 상환이자를 과도하게 추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안과 최종 집행 규모(표의 '차이1'+ '차이2') 간 2.6조원(정부안 대비 13.1% 수준) ~ 1.2조원(6.5%) 수준의 차이가 있음
 -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차이1' 부분)가 계속되었는데,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이자상환 감액분을 다른 신규·증액 사업에 반영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³⁸⁷⁾

|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조원, %)

| 구분 | 예산 | | 집행(C) | 차이1 (A-B) | 차이2 (B-C) | 집행률 (C/B) |
|------|--------|---------|-------|--------------|--------------|--------------|
| | 정부안(A) | 국회확정(B) | | | | |
| 2017 | 18.8 | 18.1 | 17.2 | 0.7 | 0.9 | 94.8 |
| 2018 | 18.5 | 17.8 | 17.3 | 0.7 | 0.5 | 97.1 |

386) 이데일리, “국채이자상환액 ‘부풀리기→삭감’ 반복…금리상승기 예산 핑크날라”, 2021. 12. 6.

387) 연합뉴스, “추경서 감액된 국채 이자상환…과다계상 논란 되풀이”, 2021. 7. 29., KBS, “국회만 오면 삭감되는 ‘단골 예산’ 1위의 비밀”, 2021. 2. 13. 등

| 구분 | 예산 | | 집행(C) | 차이1 (A-B) | 차이2 (B-C) | 집행률 (C/B) |
|------|--------|---------|-------|--------------|--------------|--------------|
| | 정부안(A) | 국회확정(B) | | | | |
| 2019 | 19.1 | 18.2 | 16.7 | 0.9 | 1.5 | 92.0 |
| 2020 | 19.9 | 18.9 | 17.3 | 1.0 | 1.6 | 91.4 |
| 2021 | 21.1 | 20.2 | 19.2 | 0.9 | 1.0 | 95.0 |
| 2022 | 21.5 | - |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1. 10. 및 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 보고서」, 2022. 5.

2 개선방안

- 국고채 이자 상환금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삭감 및 최종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금리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의 금리 전망 등을 반영하여 향후 금리 변동 예측을 실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측치에 대한 검증 및 어느 정도 완충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함
 -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국고채 예상 금리를 산정한 근거와 참고자료, 검토내역 등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안 상의 예상 금리와 당해연도 실제 금리 간의 사후 검증 및 산정 방법 교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 및 대내외 통화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상황이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³⁸⁸⁾에서, 이자상환계획을 포함한 국고채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측면이 있음. 올해 국고채 이자상환금 규모가 연 2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위협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의 재정 부담 자체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이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고과
☎ : 044-215-5116

388) 미국(1.50%→3.50%), 유로존(0→1.50%) 모두 금리 인상 전망(KDI 국제금융센터, 「주요국의 최종 정책금리 전망 및 시사점」, 2022. 5.)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는 국가회계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2009.1.1.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정상태표는 회계·기금의 자산과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재정운영표는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고,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 변동내역을 나타냄
- 한편, 감사원은 「헌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결산검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검사함
 -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는 감사원이 국가의 한 회계연도 재정활동에 대해 결산서 계수의 정확성·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국회 등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회계검사의 일종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³⁸⁹⁾,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며³⁹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³⁹¹⁾
-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원은 정부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정과목의 적용 오류, 자산·부채 누락 등 회계처리 오류를 점검하여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최근 5년간 감사원 검사 결과 감사원이 확인한 재무제표 상 오류 현황은 다음과 같음

389) 「국가재정법」 제1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90)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91)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재무제표 오류 확인 현황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자산·부채 | 4.1조원 | 14.2조원 | 16.4조원 | 17.7조원 | 32.0조원 |
| 재정운영결과 | 2.8조원 | 6.2조원 | 5.5조원 | 11.7조원 | 30.8조원 |

자료: 감사원 보도자료

2 향후 논의 사항

-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지속적인 오류 발생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의사결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국가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재무제표는 세입·세출 결산 정보 이외에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며³⁹²⁾, 세입·세출의 단순 균형을 넘어 장기 비전과 미래 전망에 기초한 효율적인 국가 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재무제표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³⁹³⁾ 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유형별 시정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 : 044-215-5360

392) 감사원,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I」, 2022.

393) 김봉환·한승엽,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추세에 관한 연구: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5호, 2016.

협동조합 운영관리 개선 방안

1 현황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칭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여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³⁹⁴⁾, 2022.3.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2020년 기준 협동조합수는 19,429개이며, 2018년에 비해 33.8% 증가하였음
 - (유형) 일반협동조합 16,764개(86.3%), 사회적협동조합 2,561개(13.2%), 연합회 104개(0.5%)가 설립됨
 - (추세) 협동조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증가폭도 크게 나타남
 - 협동조합 설립수(개) :
(2014)6,235 → (2016)10,615 → (2018)14,526 → (2020)19,429
- 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는 49.3만명이고, 평균조합원수는 55.2명으로, 2018년(47.2만명, 67.0명)에 비해 2.1만명(4.4%) 증가하였음
 - 반면 최근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설립연도별 평균 조합원수(명): (2017)39.5 → (2018)21.6 → (2019)24.3 → (2020)21.5

394) 「협동조합 기본법」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동조합 운영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협동조합이 여전히 영세한 규모에 그치고 있어 미운영 협동조합 관리 방안 및 설립된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20년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³⁹⁵⁾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운영율은 49.5%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절반이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미운영 조합의 유형은 ①사업자 미등록 조합, ②사업자 등록후 미운영 조합, ③사업자 등록후 폐업한 조합이 있으며, 2020년 기준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9,111개임

| 미운영 협동조합 현황 |

| 구분 | 2018년 | 2020년 |
|------------------|---------------|---------------|
| 계(비중) | 5,966개(100%) | 9,111개(100%) |
| ① 사업자 미등록 | 1,404개(23.5%) | 1,522개(16.7%) |
| ② 사업자 등록후 미운영 조합 | 1,698개(28.5%) | 3,419개(37.5%) |
| ③ 사업자 등록후 폐업한 조합 | 2,864개(48.0%) | 4,170개(45.8%) |

자료: 기획재정부,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22.

- 미운영 협동조합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통해 미운영 협동조합이 적절히 운영 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512만원으로 2018년(3억 6,674만원)에 비해 7,252만원 감소하고, 부채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사업운영 어려움 및 협동조합 설립 확대로 인한 영세조합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윤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 : 044-215-5931

395) 2020년 귀속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2020년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제도 개선 과제

1 현황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を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는 ①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③ 국가채무 관리계획, ④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⑤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있음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하 “연금·보험성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이하 “채권발행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가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①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②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③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④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등이 포함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공무원연금기금 등 11개 기금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 현황 |

| 연번 | 기금명 | 기금관리주체 | 비고(유형) |
|----|---------|---------------|--------|
| 1 |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성 |
| 2 | 국민연금기금 | 보건복지부 | |
| 3 | 군인연금기금 | 국방부 | |
| 4 | 사학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직원연금공단 | |
| 5 | 고용보험기금 | 고용노동부 | 보험성 |
| 6 | 산재보험기금 | | |
| 7 | 무역보험기금 | | |
| 8 | 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 | 채권발행 |
| 9 | 중소벤처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0 | 예보채상환기금 | 예금보험공사 | |
| 11 | 구조조정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실태 분석」, 2021.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도가 도입(2010년)된 이후 수립대상이 되는 기금은 추가·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 추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수립대상이 아닌 기금 중 중장기적 재무상태와 재정위험요소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2021년 감사를 통해 연금·보험성 기금 또는 채권발행 기금 이외에도 용자사업 또는 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경우 사업 특성상 용자금 또는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경제상황 및 금리변동 등 외부요인에 의해 대규모 대손·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될 위험 등이 있어 중장기 시계의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³⁹⁶⁾
 - 감사원은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표본대상으로 하여³⁹⁷⁾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재정구조, 용자·보증사업의 특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두 기금을 수립대상 기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밝힘
 - 향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논의 시 용자·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또한 사업 특성상 중장기적 재정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 : 044-215-7171

396)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실태 분석」, 2021.

397)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주요 사업으로 용자사업 또는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관련

1 현황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로 1999년 도입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사업의 무분별한 착수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됨
- 다만,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

| 최근 7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이 |

| | 사업 수 기준(건) | | | 총사업비 기준(억원) | | |
|------|------------|------------------|------|-------------|------------------|------|
| | 전체 면제 |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 비중 | 전체 면제 |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 비중 |
| 2015 | 13 | 1 | 7.7 | 14,003 | 1,508 | 10.8 |
| 2016 | 17 | 0 | 0.0 | 28,060 | 0 | 0 |
| 2017 | 12 | 2 | 16.7 | 176,421 | 163,318 | 92.6 |
| 2018 | 30 | 16 | 53.3 | 128,798 | 109,638 | 85.1 |
| 2019 | 47 | 25 | 53.2 | 359,750 | 250,089 | 69.5 |
| 2020 | 31 | 17 | 54.8 | 300,215 | 249,151 | 83.0 |
| 2021 | 31 | 4 | 12.9 | 105,020 | 8,603 | 8.2 |

자료: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p.151.에서 인용)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 (정책성 분석)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 항목 분석
- (지역균형발전)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2022.6. 정부는 관계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SOC·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고(500→1,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³⁹⁸⁾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⁹⁹⁾

2 향후 논의 사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바, 개정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및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그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면제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⁰⁰⁾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⁴⁰¹⁾
 -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관리 역량 및 운영을 위한 자원 마련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가 필요

398) (예시) 철도 통행의 쾌적성·정시성, 수질오염개선 편익 등

39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 홍성국의원 대표발의(2100403), 김상훈의원 대표발의(2100408), 김태흠의원 대표발의(2101248), 김경협의원 대표발의(2102305), 류성걸의원 대표발의(2110905), 김윤덕의원 대표발의(2112334) 등

400) 「국가재정법」 개정(2020.3.)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된 바, 향후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401) 박민정·임성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하다는 의견임

-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이라는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 : 044-215-5417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함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경제는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시장경제와 차이가 존재함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어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 구분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
| 합계 | 3,215개 | 1,697개 | 22,610개 | 997개 |

주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은 2021년 기준, 협동조합은 2022년 3월 기준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www.kdissw.or.kr), 협동조합포털(www.coop.go.kr)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이 각 소관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에 따라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 각각의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법적 근거 및 특징 |

| 사회적경제조직 (법적근거) | 주무부처 | 특징 |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행정안전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고 설립 및 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 운영 |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재정부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해당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증, 지원 및 감독 등 법적 근거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전달 체계의 중복 및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자생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 : 044-215-4960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1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②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③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과 같은 사항이 평가에 반영됨
 -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투자기관·산하기관 평가를 일원화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거침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를 확인할 수 있음

|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 평가범주 | 주요 평가내용 |
|------|--|
| 경영관리 |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
| 주요사업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10.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및 배점은 공공기관의 경영 방향이나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시적으로는 정책 기조 및 공공기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반영되고, 미시적으로는 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매년 조정되며⁴⁰²⁾,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짐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17년 이후 기존의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공익성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경영관리 범주에 도입되었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402)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재정동향&이슈』, 제18호, 2021.12.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영관리 범주 55점 중 2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은 도입 당시 22점에서 2021년 기준 25점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반면 재무관련 지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⁴⁰³⁾

- 2021.8.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2021.12.)할 계획임을 밝혔음
 -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고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중(5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타남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의 경영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⁴⁰⁴⁾
-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의 재설계에 있어 합리적 균형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 : 044-215-5551

403) 박성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제186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8.20.

40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22.6.20.

서비스산업 활성화

1 현황

-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용역을 생산 및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나갈수록 서비스업 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또한 제조업·건설업 등 다른 산업분야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임
 -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⁴⁰⁵(명/10억)는 12.46으로 건설업(10.82), 제조업(6.25)보다 높게 나타나며, 부가가치유발계수⁴⁰⁶ 또한 0.87로 건설업(0.81), 제조업(0.64)보다 높음⁴⁰⁷
-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⁴⁰⁸
 -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⁴⁰⁹은 2019년 기준 63,907달러로, OECD평균(77,071달러)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수준⁴¹⁰인 이탈리아(82,826달러), 스페인(76,306달러)보다 낮음
 - 우리나라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또한 주요국 대비 높게 나타남
 -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2019년 기준 49.6%로, 미국(83.0%), 독일(70.5%),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이며,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를 확인 할 수 있음
- 또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대면성이 강한 음식점·문화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
 - 반면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됨
-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 및 관련 규제완화 등의 정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405) 취업유발계수란 재화 10억원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함

406)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말함

407) 2019년 기준

408)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2.4.

409)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 실질 GDP(2015년 불변가격 기준, 2015년 PPP 적용 달러 환산)/총 취업자 수

410)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 2020년) : 한국 31,881달러, 이탈리아 31,523달러, 스페인 29,860달러

-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 차별 해소가 주요 내용임
 - (규제혁신)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유연화
 - (육성기반)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 (세제)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 해소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금융)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재정)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 단계적 확대
 - (입지) 산업단지 관리권자 자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2 향후 논의 사항

- 지속적인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하기 어려운 서비스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서비스산업별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서비스산업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서비스산업 전반에 있어 규제혁신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서비스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대면 방식의 서비스 회귀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진화로 서비스산업 뉴노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⁴¹¹⁾되는 만큼, 코로나 19 이후 변화될 서비스산업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윤 ☎ : 02-6788-4575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 : 044-215-4611

411) 황현준·최윤정·박정수, 「뉴노멀 시대의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 - 코로나19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 『이슈 페이퍼』 2021-12, 산업연구원, 202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969조원, 부채 총액은 573조원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1.0%로 전년과 비교하여 총 부채는 41.8조원, 자산규모는 71.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0.9%p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현황⁴¹²⁾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채비율: 2017년(157.2%) → 2018년(154.8%) → 2019년(157.6%) → 2020년(151.9%) → 2021년(151.0%)
 - 부채규모: 2017년(493.2조원) → 2018년(501.1조원) → 2019년(524.7조원) → 2020년(541.2조원) → 2021년(583.0조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예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금리 상승 등 대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재무·예산 운용' 지표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의 장이 경영목표,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계획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⁴¹³⁾,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였음⁴¹⁴⁾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⁴¹⁵⁾하였고,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무위험기관」이 선정되었으

41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4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2022.6.3.

4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415) 2021년 기준 27개 기관이 전(全)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함

며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재무위험기관의 2021년 부채규모는 372.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583조원)의 약 64%에 해당하는 만큼 재무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

| | 기관명 |
|----------------|---|
|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
|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 자원공기업(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2022.6.30.

2 개선방안

-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재무위험 원인에 따른 맞춤형관리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무위험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의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집중관리에 따른 재무위험기관의 재무현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무위험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평가지표 구성 등을 통해 기관 운영과정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비중이 낮아(경영관리 범주 55점 중 5점)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관한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황인욱 ☎: 02-6788-4575/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 044-215-5632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1 현황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021년 10월 3%대를 넘어섰으며, 올 3~4월 4%대를 기록한 후 5월에는 5.4%까지 상승하였음
 -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데 '22년 5월 4.1%까지 상승함
 -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근원 물가)도 '22년 5월 3.4%까지 상승하며 3%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일반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서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22년 5월 6.7%까지 상승하며 가계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임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월별 동향 |

(단위: 전년동월비 %)

|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총지수 | 2.6 | 2.3 | 2.6 | 2.6 | 2.4 | 3.2 | 3.8 | 3.7 | 3.6 | 3.7 | 4.1 | 4.8 | 5.4 |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¹⁾ | 1.5 | 1.5 | 1.8 | 1.9 | 2.0 | 2.8 | 2.4 | 2.7 | 3.0 | 3.2 | 3.3 | 3.6 | 4.1 |
| 식료품및에너지제외 ²⁾ | 1.2 | 1.1 | 1.3 | 1.3 | 1.4 | 2.3 | 1.9 | 2.2 | 2.6 | 2.9 | 2.9 | 3.1 | 3.4 |
| 생활물가 | 3.4 | 3.0 | 3.5 | 3.3 | 3.1 | 4.6 | 5.2 | 4.6 | 4.1 | 4.1 | 5.0 | 5.7 | 6.7 |

주: 1) 농산물과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 측면에 따른 일시적·단기적 변동요인을 제거한 지수

2)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지수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2.6.3.

- 최근 물가 확산세는 경제주체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높여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기대인플레이션율의 경우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 비중이 2022년 5월 현재 79.7%까지 상승하였으며, 4% 초과를 예상하는 응답 비중도 35.3%로 높게 나타났음⁴¹⁶⁾

41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자료 활용

2 향후 논의 사항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작년 4월부터 2%를 웃돌며 계속 상승해 현재 5%를 넘어섬. 단, 「한국은행법」 상 물가안정목표제는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며 기준이 되는 규칙 또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⁴¹⁷⁾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또는 실효 하한)까지 인하하였으나 물가가 치솟아 오르자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금융완화 기조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
 - 단,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고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가 심화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뒤늦은 금융완화 기조의 축소는 경제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높이게 됨
 - 금융완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의 대응 방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20년 이래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을 다수 편성하여 이미 많은 양의 재정을 투입해 왔음⁴¹⁸⁾
 - 경제위기 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나 유동성을 늘려 물가상승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아가 재원 소진에 따른 세수 마련 대책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 : 044-215-2770

417)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함

418) 2022년에도 국채 추가발행 없이, 제1회 추경 16.9조원과 제2회 39.0조원 규모를 국회에서 확정함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

1 현황

-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2022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5.4%, 생산자물가는 9.2%까지 상승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으로 시장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미국의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였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Fed)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고 0.5%p 또는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해 나가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였으며, 올 4월 미국 8.3%, 영국 7.8%, 유럽연합(EU) 8.1%로 치솟음
 - 세계 제조업 중심인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급등하여 생산비용 상승을 겪고 있음. 산업부문 생산자물가는 작년 9월 호주와의 무역갈등 및 전력난 등으로 13.5%(전년동월비)까지 상승하였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8%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⁴¹⁹⁾

| 주요 국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월별 동향 |

(단위: 전년동월비 %)

|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 OECD | 3.9 | 4.0 | 4.2 | 4.3 | 4.6 | 5.2 | 5.9 | 6.6 | 7.2 | 7.8 | 8.8 | - |
| 미 국 | 5.0 | 5.4 | 5.4 | 5.3 | 5.4 | 6.2 | 6.8 | 7.0 | 7.5 | 7.9 | 8.5 | 8.3 |
| 일 본 | -0.8 | -0.5 | -0.3 | -0.4 | 0.2 | 0.1 | 0.6 | 0.8 | 0.5 | 0.9 | 1.2 | 2.5 |
| 중 국 | 1.3 | 1.1 | 1.0 | 0.8 | 0.7 | 1.5 | 2.3 | 1.5 | 0.9 | 0.9 | 1.5 | 2.1 |
| 영 국 | 2.1 | 2.4 | 2.1 | 3.0 | 2.9 | 3.8 | 4.6 | 4.8 | 4.9 | 5.5 | 6.2 | 7.8 |
| E U | 2.3 | 2.2 | 2.5 | 3.2 | 3.6 | 4.4 | 5.2 | 5.3 | 5.6 | 6.2 | 7.8 | 8.1 |
| 독 일 | 2.4 | 2.1 | 3.1 | 3.4 | 4.1 | 4.6 | 6.0 | 5.7 | 5.1 | 5.5 | 7.6 | 7.8 |
| 프랑스 | 1.8 | 1.9 | 1.5 | 2.4 | 2.7 | 3.2 | 3.4 | 3.4 | 3.3 | 4.2 | 5.1 | 5.4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2.6.3.

419)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의 자료 활용

-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이 수입 물가를 높여 국내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음
 - 글로벌 경기의 회복으로 국제원자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유생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⁴²⁰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균형이 증대되어 국제유가와 물류비용이 크게 상승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 생산의 차질로 자동차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미 서부 물류대란에 이은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국제 운송 물류비용도 치솟아 오르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도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을 급등시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 원자재 및 유가 급등과 맞물려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對 미-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우리 물가의 전반적인 상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 힘을 가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간의 균형적인 재정-통화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 : 044-215-2830

420)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 활용

저시경제 안정적 관리: 국제유가

1 현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량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상 원유의존도가 매우 높고 원유 전량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경제 원유의존도(GDP 1만달러 당 원유소비량, 2020년 기준)는 OECD 회원국(37개국) 중 1위로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⁴²¹⁾
 - '20년 기준 전세계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가 10위인 반면, 원유소비량 규모는 7위로 나타났으며, 원유의존도는 5.70배럴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주요 경쟁국보다 국제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다는 의미이며, 세계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올해 3월 들어 국제 기준유가인 WTI와 유럽의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2014~15년 초반 미국 셰일오일 생산증가, 미 원유 재고 증가, 주요 산유국의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으나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2020년 초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공급·수요 충격이 유발되며 불확실성이 커져 유가가 일제히 폭락하였음
 - 현재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원유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음. 특히, 유가 폭락을 한 차례 경험했던 산유국들이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며 국제유가의 상방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제 기준유가 변동 추이 |

(단위: 배럴당 미국 달러)

| | 연도별 추이 (2015~2021년) | | | | | | | 최근 월별 추이 (2022년)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WTI | 48.7 | 43.3 | 50.8 | 65.2 | 57.0 | 39.2 | 68.1 | 83.2 | 91.6 | 108.5 | 101.8 | 109.6 |
| Brent | 52.3 | 43.6 | 54.1 | 71.3 | 64.3 | 42.0 | 70.9 | 86.5 | 97.1 | 117.3 | 104.6 | 113.3 |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421)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2-02의 자료 활용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차('08년 4월~8월), 2차('11년 2월~'14년 8월) 고유가 시기에 이어 세 번째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사이클에 진입하였음
 -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며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 측면에서 산유국들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원유의존도가 높은 정유 및 철강,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비용 상승 압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고유가 사이클이 인플레이션 전환기와 맞물리게 되면 불황 속의 물가상승(stagflation, 이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고유가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재정·통화당국의 정책으로는 통제가 어려워 유가 변동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에너지 안보 확립뿐 아니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마련을 통하여 에너지 자급을 제고 및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단,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빠른 패러다임 전환은 산유국들이 설비투자를 줄이고 감산하게 함으로써 더욱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 : 044-215-2830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통상

1 현황

-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며, 대외의존도 및 대외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활동이 둔화되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비율은 72.9%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84.8%까지 반등하였음
 - 단, 무역수지는 '20년 449억 달러에서 '21년 293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이는 같은 기간 총수입액 증가율이 31.5%로 총수출액 증가율 25.8%를 넘어섰기 때문임
 - 총 수출입액에서 對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40.2%, 수입 34.4%로 양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및 對 미국-중국 무역 비중 |

(단위: 억달러,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총수출액 | 4,954 (100.0) | 5,737 (100.0) | 6,049 (100.0) | 5,422 (100.0) | 5,125 (100.0) | 6,444 (100.0) |
| 미국 | 665 (13.4) | 686 (12.0) | 727 (12.0) | 733 (13.5) | 741 (14.5) | 959 (14.9) |
| 중국 | 1,244 (25.1) | 1,421 (24.8) | 1,621 (26.8) | 1,362 (25.1) | 1,326 (25.9) | 1,629 (25.3) |
| 총수입액 | 4,062 (100.0) | 4,785 (100.0) | 5,352 (100.0) | 5,033 (100.0) | 4,676 (100.0) | 6,151 (100.0) |
| 미국 | 432 (10.6) | 508 (10.6) | 589 (11.0) | 619 (12.3) | 575 (12.3) | 732 (11.9) |
| 중국 | 870 (21.4) | 979 (20.5) | 1,065 (19.9) | 1,072 (21.3) | 1,089 (23.3) | 1,386 (22.5) |
| 무역수지 | 892 | 952 | 697 | 389 | 449 | 293 |
| GDP 대비 수출입비율 | 76.9 | 80.5 | 82.9 | 80.1 | 72.9 | 84.8 |

주: 1)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무역수지는 총수출액에서 총수입액을 차감하여 산출

3)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수입총액+국외수취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명목GDP) ×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실적」&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2 향후 논의 사항

-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수입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최근 내수회복·수출호조로 총수입액이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주로 산업부문 생산과 연계된 중간재·자본재 수입과 함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 급증에 기인하였음⁴²²⁾
 - 중국의 산업부문 생산자물가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⁴²³⁾하고 있어, 중국에서 부품, 원자재 등 중간재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음
 - 고유가로 인해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율(원/달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나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구조가 일부 국가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대외통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음
 - 수출 시장의 다변화뿐 아니라 수출 품목 중 일부 제품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고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대외정책적 대안을 논의해 나가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 044-215-4710

4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년 5월 수출입 동향」, 2022.04.01. 자료 참조

423)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자료 참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0만명 수준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7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30년 -0.1% 수준으로 하락하고, 이후 감소 속도가 가팔라져 2060~70년에는 -1.24% 수준으로 전망
 -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2020년 3,370만명 수준에서 2070년에는 1,74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향후 50년간 72.1%에서 46.1%로 감소할 전망
 -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당 노년부양비가 1:1 수준까지 이를 전망
 - 고령인구는 2020년 820만명 수준에서 2020~30년 기간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 1,9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를 때까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70년까지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 수준이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추계 |

(단위: 백만명, %)

|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2040 | 2050 | 2060 | 2070 |
|--------|------|------|------|------|------|------|------|-------|-------|-------|-------|-------|
| 총인구 | 25.0 | 32.2 | 38.1 | 42.9 | 47.0 | 49.6 | 51.8 | 51.2 | 50.2 | 47.4 | 42.6 | 37.7 |
| 인구성장률 | 2.97 | 2.18 | 1.56 | 0.99 | 0.84 | 0.50 | 0.14 | -0.10 | -0.35 | -0.80 | -1.21 | -1.24 |
| 생산연령인구 | 13.7 | 17.5 | 23.7 | 29.7 | 33.7 | 36.2 | 37.4 | 33.8 | 28.5 | 24.2 | 20.7 | 17.4 |
| 구성비(%) | 54.8 | 54.4 | 62.2 | 69.3 | 71.7 | 73.1 | 72.1 | 66.0 | 56.8 | 51.1 | 48.5 | 46.1 |
| 고령인구 | 0.7 | 1.0 | 1.4 | 2.2 | 3.4 | 5.4 | 8.2 | 13.1 | 17.2 | 19.0 | 18.7 | 17.5 |
| 합계출산율 | - | 4.53 | 2.82 | 1.57 | 1.48 | 1.23 | 0.84 | 0.96 | 1.19 | 1.21 | 1.21 | 1.21 |

주: 1) 중위 추계(기본 추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순이동-중위) 기준

2)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2 향후 논의 사항

- 저출산·고령화로 부양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 및 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연금정책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국민 1인당 조세부담도 커지게 될 것임
 -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채무 확대’와 ‘증세’가 있으나 증세 없는 국가채무 확대만으로는 다가올 재정적 도전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속 가능한 재정 여력 확보가 필요함
 - 증세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의 성장이며, 국가의 조세수입은 국민의 소득 규모에 의해 제약될 것임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 및 노동생산성 둔화는 총공급 측면에서 장기성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생산연령인구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체가 되므로 총수요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산업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출산 후 부모의 유연한 경제활동 참여와 같은 정책적 지원 등도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 : 044-215-8570

국가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도에 최초로 1천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우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정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채무도 함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년 네 차례에 걸쳐 총 66.8조원, '21년 두 차례 총 49.8조원을 투입하며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되었음. ('20년) -71.2조원, ('21년) -30.5조원
 -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 및 유류세 인하 등 물가상승·경기침체 위기에 대비한 각종 감세 정책이 도입되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정부지출 및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

| 우리나라 총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

(단위: 조원,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국가채무 (GDP 대비) | 626.9 (36.0) | 660.2 (36.0) | 680.5 (35.9) | 723.2 (37.6) | 846.6 (43.8) | 965.3 (47.3) | 1,064.4 (50.0) | 1,175.4 (53.1) | 1,291.5 (56.1) | 1,408.5 (58.8) |
| 재정수지 (GDP 대비) | 16.9 (1.0) | 24.0 (1.3) | 31.2 (1.6) | -12.0 (-0.6) | -71.2 (-3.7) | -30.5 (-1.5) | - | - | - | - |

- 주: 1) 국가채무 '20년은 결산 기준, '21년은 2차 추경 기준
 2) '22년 이후는 「21~25 국가채무관리계획」전망
 3) 국가채무는 중앙정부(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와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임
 4)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까지 포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2 향후 논의 사항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채무 전망 및 미래 재정 위험을 고려한 재정준칙의 법 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및 운영 방식 설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세입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총량, 증가율 또는 GDP 대비 비중에 따라 목표치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음
 - 재정준칙 위반 시 미국과 같이 총지출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강제삭감 절차를 통해 법률로 제재할 수 있으나 영국·일본과 같이 강행 절차를 두지 않는 국가도 있음
 - 세계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요건들과 성장·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국·유럽연합(EU)과 같이 준수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음
 - 전 세계 106개국⁴²⁴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가 대부분 성문화된 법률 형태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⁴²⁴
 - 재정준칙 법률 명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음
 - 단,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법적 강제성과 유연성·지속성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까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 : 044-215-5740

424)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홈페이지 참조

규제개선과 혁신성장

1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 직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2.5% 성장률을 기록한 후 계속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⁴²⁵⁾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적용력 1위, 디지털 기술 10위로 나타났으나(2020년 기준)⁴²⁶⁾, 혁신 활동을 하려는 기반 환경 측면과 규제 부담, 법체계 효율성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상품시장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2018년 기준)⁴²⁷⁾, OECD는 우리 정부가 기업 경영에 여전히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⁴²⁸⁾
 - 이러한 결과는 핵심기술뿐 아니라 혁신역량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제도적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래산업 등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negative-list regulatory system)을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법적 요구의 적용 없이도 제품 및 사업모델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됨
 -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분야에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방식을 통하여 승인되고 있음

| 국내 기관별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

| 승인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특례유형 |
|------|------|------|------|------|---|
| 688 | 196 | 209 | 228 | 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특례: 552 ● 임시허가: 94 ● 적극해석: 42 |

자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22. 06. 29.

42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22. 04. 참조

42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 참조

427) OECD 홈페이지 참조, 단,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1998년 이후로 5년마다 발표하고 있어 2018년 기준 자료 활용

428) OECD, 「Regulatory Policy in Korea: Towards Better Regulation」, 2017. 참조

2 향후 논의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및 규제조정실을 통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
 - 입법방식 전환 시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실증이 필요하거나 완료된 신제품·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의 분류체계 신설 및 재정비가 계속되어야 함
 -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이해갈등 조정뿐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 신산업 전반으로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점검도 필요함
 - 규제샌드박스는 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예산 및 재원 차이에 따른 문제, 국무조정실 중심의 주관부처 간 양식 차이로 인한 기업의 불편 해소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⁴²⁹⁾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하며, 양적 확장에 집중하여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소관 부처 간 또는 민·관·연 합동 협업 체계 강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⁴³⁰⁾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 : 044-215-4550

4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53-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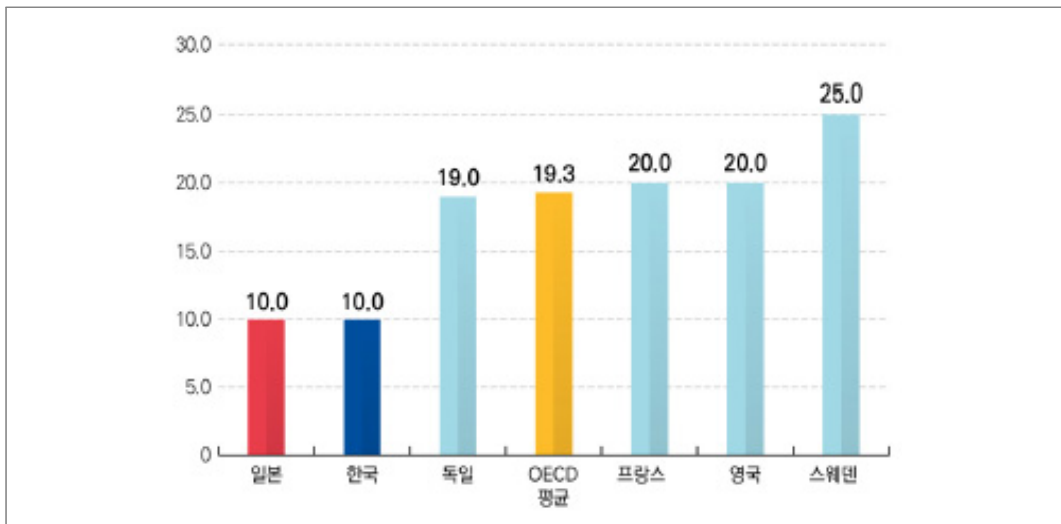
430) 국회입법조사처 NARS입법·정책 제103호 참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⁴³¹⁾
 -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여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음
 -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등 OECD 주요국의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임

(단위 : %)



자료: OECD Tax Database

431) 성명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의 연계 가능성」, 『재정포럼』 제196호, 2012. p.19

- 한편 OECD 국가 중 25개국⁴³²⁾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17.7%) 대비 1.6%p 인상되었음
 -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증세 대상으로 삼았음
 - 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p,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로 각 1%p,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p의 부가가치세율을 각 인상했음
 -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화 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 기준 5%에서 8%로, 2019년 10월 10%로 인상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 가치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임⁴³³⁾
 -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7%이며, 뉴질랜드가 9.5%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7.2%(20위), 영국이 7.0%(23위)이며, 일본이 4.1%(34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2 향후 논의 사항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7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대비 2.8%p 증가한 50.1%로 전망되고,⁴³⁴⁾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경우 2027년 67.8%, 2030년 78.9%로 예상됨⁴³⁵⁾
 -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⁴³⁶⁾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 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32) 다만,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한 국가로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등이 있음

43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을 제외한 OECD 37개국 중 32위임(OEC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참조)

434)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p.365

435)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 p.13

436)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0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로, 세 부담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세 부담을 지는 구조임
 -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⁴³⁷⁾가 발생함
-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음
 - 면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임
 - 다만, 면세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불완전면세(부분면세)라고 말함⁴³⁸⁾
 - 면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임
 - 면세제도의 단점은 면세사업자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되는 경우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며,⁴³⁹⁾ 면세로 인해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며, 또한 세 부담의 전가 및 귀착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왜곡 효과가 발생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을 정해 면세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징세비용과

437) 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갑의 소득이 1억원이고, 을의 소득이 2천만원이며 재화의 구입금액이 1백만원인데 갑과 을이 동일한 재화를 구입하며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갑이 0.1%(= 1백만원 ÷ 1억원 × 10%), 을이 0.5%(= 1백만원 ÷ 2천만원 × 10%)가 되어 소득이 갑보다 5배 적은 을이 부가가치세를 5배 많이 부담하게 되어 소득 대비 재화 구입에 대한 조세부담이 크게 됨

438) 면세를 적용할 경우 매출세액이 없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아 사업자는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일부 부담하게 됨

439)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여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다른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어 면세효과가 소멸되는 '환수효과'가 발생함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⁴⁴⁰⁾와 재활용폐 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⁴⁴¹⁾가 있음

- 우리나라는 면세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고 부가가치세 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⁴⁴²⁾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이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가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과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복수세율 체계로 다양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은 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9년 10월부터 세율을 10%로 인상하면서 복수세율을 도입했으며, 식료품에 대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복수세율 체계는 부가가치율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재화 등의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단일세율 체계는 세제가 간소화되고 세무행정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일세율 체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2 개선방안

■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면세제도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40)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음식점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부가가치세법」 제42조)

441) 중고품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442) 전승훈,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 - 세율인상, 면세조정,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제21집제3호, 2019. pp.104~105

로, 443) 경감세율 도입시의 세수 변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인상 가능성, 가구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면세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부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세율 체계를 복수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 참고로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욱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⁴⁴⁴⁾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0

443) 김유찬,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19권제3집, 2013. pp.313~314

444) 전승훈,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의 세부담 귀착: 현행제도와와의 비교」, 『조세연구』 제16권제4집, 2016. p.134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함⁴⁴⁵⁾
 - 에누리액이 재화·용역의 공급 이후에 발생하거나 에누리액의 공제·차감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경우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⁴⁴⁶⁾
 -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⁴⁴⁷⁾,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⁴⁸⁾
 - 판매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임
- 그런데 매출에누리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역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이 쉽지 않음⁴⁴⁹⁾
 - 더불어 기업들은 점차 다양한 판매촉진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약 이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과세관청과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445)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44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447)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3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48)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

449) 서울고등법원 2002. 3. 20. 선고 2002누4404 판결 참조

- 특히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판매장려금은 그 경제적 효과가 매출에누리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⁴⁵⁰⁾

■ 실제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음⁴⁵¹⁾

- 이에 따라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자기적립 마일리지(마일리지 적립처와 사용처가 같은 경우)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마일리지 적립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했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를 개정했음
- 위 법령 개정으로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 이외의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등에 있어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위 사건 외에도 포인트 사용액⁴⁵²⁾, 할인쿠폰 사용액⁴⁵³⁾,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⁴⁵⁴⁾ 등이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문제가 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

2 개선방안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호한 구별기준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함으로써⁴⁵⁵⁾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영국, 호주, 싱가포르 및 일본 모두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매출에누리

450) 유지선·정지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의 구분 - 판매장려금의 취급에 대한 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검토 -」, 『조세와 법』 제8권제2호, 2015. p.70

45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45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45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45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455) 당해 거래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와 판매장려금의 구분 없이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⁴⁵⁶⁾

- 게다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⁴⁵⁷⁾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하여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급가액을 낮춤으로써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자가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⁴⁵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0

456) 유지선·정지선, 앞의 글, pp.64~71

457) 「소득세법」상 매출에누리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인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매장려금인 경우 비용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58) 유지선·정지선, 앞의 글, p.7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1 현황

- 현재 주식 양도시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또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08%~0.4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0.08%의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과세하고 있는바, 동일한 수준의 거래세를 적용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정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까지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 그 이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규정되어 있는데,⁴⁵⁹⁾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 것임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⁴⁶⁰⁾
 -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이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정하였음
 -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임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각 공제하도록 정하였음
- 그런데 정부는 20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

459)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46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설명 자료」, 2020. 6. 25. p.1

예하며,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이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2%로 0.03%p 인하하겠다고 밝혔음⁴⁶¹⁾

- 즉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과세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축소하는 것임(종목별 보유액 10억원 → 100억원)

2 향후 논의 사항

- 만약 정부의 발표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경우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 등 금융세제 체계가 유지될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금융세제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소액주주와의 수평적 형평성⁴⁶²⁾이 저해되는 등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이 제외되어 집합투자기구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금융상품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어 비과세대상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등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더불어 현행 법령상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경우 이를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 : 044-215-4230

461)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p.19

462) 수평적 형평성이란 주식 양도차익 등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말함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및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논의되었고, 2021. 12. 8.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⁴⁶³⁾
 -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음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됨⁴⁶⁴⁾
 -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자산(crypto assets)이 가상자산에 해당함
 -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총 55조 2천억원이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623종이고, 2021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액은 11조 3천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⁴⁶⁵⁾은 65%로 매우 큰 수준임⁴⁶⁶⁾
- 현재 한 차례 시행이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2023년 이후로 다시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과 통산(通算)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가상자산

463)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제2호

4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65) 가격변동성(Max Draw Down)이란 가상자산 가격의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최고가-최저가)÷최고가]을 의미함

466)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 3. 2.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의 본격적인 시행,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각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⁴⁶⁷⁾
 - 다만, 정부는 20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이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⁴⁶⁸⁾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늦춰질 경우 과세형평상 가상자산 소득과세도 유예하여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세율, 기본공제액,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시행시기 유예에 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윤후덕 의원은 2022. 1. 20. 가상자산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492)을 대표발의했음
 - 노웅래 의원은 2022. 1. 26.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573)을 대표발의했음
 - 김태년 의원은 2022. 6. 10.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76)을 대표발의했음

467) 임재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4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pp.4~5

468)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p.19

- 정희용 의원은 2022. 6. 15.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5952)을 대표발의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0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된 적용대상은 차명주식으로, 토지와 건물이 제외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 위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⁴⁶⁹⁾에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⁴⁷⁰⁾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1974. 12. 21.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특히 2018. 12.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수증자)에서 실제소유자(증여자)로 변경했는데,⁴⁷¹⁾ 개정 전까지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담세력이 없는 수탁자에게 과세하여 부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음
 - 물론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형벌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증여세

46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470)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4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부과보다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입계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했음⁴⁷²⁾

-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합헌결정 및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즉 실제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크기나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⁴⁷³⁾
 -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의 크기와 의무위반 기간의 장단에 따라 10~30%의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의무위반 기간이나 목적 여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차명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만 있을 뿐인데 차명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임⁴⁷⁴⁾
 - 더불어 명의신탁재산은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문제가 있으며, 증여세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⁷⁵⁾

2 개선방안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도의 본질은 조세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⁴⁷⁶⁾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신 그 법적성격에 부합하는 제재방안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제재방안으로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안,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472)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결정 등 참조

473) 윤지현,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9권제2호, 2003. pp.143~152

474) 김영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제39집, 2017. pp.46~47

475) 위의 글, p.18

476)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법률이 규정하는 조세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성격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 215 결정)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⁴⁷⁷⁾

- 주식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반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주식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그리고 과징금의 본래적 성격이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은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인 과태료를 명의신탁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는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부과되, 상대적으로 그 책임의 정도가 낮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보다 낮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음⁴⁷⁸⁾
- 물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과태료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 044-215-4311

477) 이천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폐지시의 대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제3호, 2017. pp.407~413

478) 위의 글, p.415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데, 조사시 혐의자·참고인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며, 조세범칙조사를 토대로 조세범죄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죄의 초동수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조세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세범 기소율 역시 2019년 기준 24.4%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 29.6%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응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음
 -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 의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하고, 조세범칙행위란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함
 -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적 강제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반면, 위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에 있어 검사와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데, 조세관련 범죄임에도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차이점이 있음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공무원인 위원 2명 이하, 외부 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부터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행하는 조세범칙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구분되며, 조세

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며,⁴⁷⁹⁾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 불분명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해야 함
-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고발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대상임(「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 다만,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조세범칙조사에서의 납세자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조세포탈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된 '불리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⁴⁸⁰⁾

2 개선방안

-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적정한 형벌권 실현과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분리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조세범칙조사 개시 절차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479)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480) 이준봉, 「조세범 처벌절차 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19.

를 부여하여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세무서장 등이 고발한 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당 납세자 역시 재차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응해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와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히 다르고 그 절차 및 기법도 상이한데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범칙조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신설하여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⁴⁸¹⁾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반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한 진술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세범칙사건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⁴⁸²⁾
 -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검찰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과세관청의 수사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 등 수사권을 부여하여 조세포탈범 등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고처분 대상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는 등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⁸³⁾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므로,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⁴⁸⁴⁾

| | |
|-------------|---------------------------------------|
| 작성자 |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영과 ☎ : 044-215-4150 |

481) 유새롬, 「미국 법무부 조세국의 조세범칙벌 관련 기관 협력 현황과 사례」, 법무연수원, 2019. pp.43~48 참조
 482) 이준봉, 앞의 글, pp.118~124
 483) 박훈·황남석, 「조세범칙조사의 미래 발전방향 연구」,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 2021. pp.56~60 참조
 484) 이준봉, 앞의 글, pp.124~128;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1 현황

-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특히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2015년 10월 BEPS 실행계획(Action Plan) 1을 발표했으며, 2019년 5월 두 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을 제시하여 2021년 10월 136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도입하는 최종합의문을 채택했음
 - 다국적 기업은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온 결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되었고,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 접근법 도입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임⁴⁸⁵⁾
- 두 가지 접근법은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인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14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2022년에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21. 10. 8. 밝혔음⁴⁸⁶⁾
 -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채굴업, 규제 금융업 제외)의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Amount A)을 원칙적으로 100만 유로(약 13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여 디지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⁴⁸⁷⁾
 - 디지털세 도입시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원)를 초과하고

485) 임재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3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486) OECD,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1. 10. 8. pp.6~8

487) 또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시장소재지국에서 자회사 등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고정이익 보상(Amount B)에 대하여 2022년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된 경우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OECD는 위 최종합의문 채택 이후 2021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모델 규정을, 2022년 3월 위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를 발표했고, 디지털세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모델 규정 초안을 2022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 후, 2022년 7월 디지털세 모델규정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그런데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은 2022. 5. 24.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4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⁴⁸⁸⁾ 또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2023년부터 국제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은 헝가리 등의 반대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고,⁴⁸⁹⁾ 미국도 공화당 의원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내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 및 주석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⁴⁹⁰⁾

- 글로벌 최저한세는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여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디지털세는 현재 모델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등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OECD가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시행하는 것을 목

488) Dan Burns, "OECD chief sees global digital tax deal pushed back to 2024", Reuters, 2022. 5. 24.

489) Sam Fleming, James Politi, "Hungary withdraws support for minimum corporate tax in EU", Financial Times, 2022. 6. 17.

49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주석서 공개 및 OECD 공청회 계획 발표」, 2022. 3. 16.

표로 하고 있다고 2022. 7. 11. 발표한 상황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보다 진행 경과가 늦은 편인데, 디지털세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디지털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디지털세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 : 044-215-4250

법인세제 개편

1 현황

-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가 높은 3대 기간 세목 가운데 하나임
 - 2021년 법인세 징수액은 70.4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344.1조원 대비 20.5%로 소득세(114.1조원)와 부가가치세(71.2조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법인세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법인세 징수현황 |

(단위: 조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법인세(A) | 45.9 | 43.9 | 42.7 | 45.0 | 52.1 | 59.2 | 70.9 | 72.2 | 55.5 | 70.4 |
| 국세(B) | 203.0 | 201.9 | 205.5 | 217.9 | 242.6 | 265.4 | 293.6 | 293.5 | 285.5 | 344.1 |
| 국세대비(B/A) | 22.6 | 21.7 | 20.8 | 20.7 | 21.5 | 22.3 | 24.2 | 24.6 | 19.4 | 20.5 |

자료: 국세청 징수보고서(각 연도)

-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율 |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 | 200억원~3,000억원 이하 | 22% |
| | 3,000억원 초과 | 25% |
| 조합법인 | 20억원 이하 | 9% |
| | 20억원 초과 | 12%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9년 이후 법인세율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2단계 세율구조가 유지되다가 2012년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단계 구조가 되었음
 - 가장 최근의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진 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3,000억원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결과,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구간은 총 4단계 누진체계가 됨

|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변동 연혁 |

(단위: %)

| 과세표준 | 2012~2017 | 2018년 이후 |
|------------|-----------|----------|
| 2억원 이하 | 10 | 10 |
| 2억원 초과 | 20 | 20 |
| 200억원 초과 | 22 | 22 |
| 3,000억원 초과 | | 25 |
| 과표구간 수 | 3개 | 4개 |

자료: 국세청 징수보고서(각 연도)

- 2020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4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단일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반법인인 단일세율, 중소기업인 2단계 누진체계를 택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비교 |

(단위: %)

| 구분 | 2013~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20 | |
|------|---------|------|------|------|------|------|------|------|------|------|---------|------|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대한민국 | 10 | 22 | 10 | 22 | 10 | 22 | 10 | 22 | 10 | 25 | 10 | 25 |
| 미국 | 15 | 35 | 15 | 35 | 15 | 35 | 15 | 35 | 21 | | 21 | |
| 영국 | 23 → 21 | | 20 | | 20 | | 19 | | 19 | | 19 | |
| 독일 | 15.8 | | 15.8 | | 15.8 | | 15.8 | | 15.8 | | 15.8 | |
| 프랑스 | 38 | | 38 | | 34.4 | | 44.4 | | 34.4 | | 32 | |
| 일본 | 16.5 | 28.1 | 15 | 23.9 | 15 | 23.4 | 15 | 23.4 | 15 | 23.2 | 15 | 23.2 |
| 캐나다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이탈리아 | 27.5 | | 27.5 | | 27.5 | | 24 | | 24 | | 24 | |

주1: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단일체계, 소기업에 대한 공제 적용
 주2: 일본의 경우 일반법인인 단일체계, 중소기업인 2단계 누진체계
 주3: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4단계 누진세 체계
 주4: 미국은 2018년 단일세 체계로 개편
 자료: OECD.Stat 참고하여 작성함

- OECD 주요 선진국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할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은 반면,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OECD 통계에 따른 법인세 유효세율(Composite Effective Average Tax Rate)⁴⁹¹⁾을 비교할 경우 명목세율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데 다음과 같음

| OECD 주요국 법인세 유효세율 |

(단위: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한국 | 22.8 | 25.9 | 25.9 | 25.9 |
| 미국 | 35.2 | 22.4 | 22.4 | 22.3 |
| 일본 | 29.6 | 29.4 | 29.4 | 29.4 |
| 독일 | 28.3 | 28.3 | 28.3 | 28.0 |
| 영국 | 17.6 | 17.6 | 17.0 | 16.8 |
| 프랑스 | 40.8 | 31.7 | 31.7 | 29.4 |
| 이탈리아 | 20.2 | 20.9 | 20.9 | 21.3 |
| 캐나다 | 24.5 | 24.6 | 24.2 | 23.8 |
| G7 평균 | 28.0 | 25.0 | 24.8 | 24.4 |

자료: OECD.Stat

- 법인세 유효세율을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이며, 유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주요국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2 향후 논의 사항

- 새정부는 과표구간 및 법인세율 정비의 목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밝히고 있음
 - 다만,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최근 기업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투자여력이 저하되어 경기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라는 선순환

491) 법인세 유효세율(Corporate effective tax rates)은 회계상 감가상각 처리방식,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조세 특례제도의 효과가 반영되어 실제 법인세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말함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실증분석된 바 있음.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⁴⁹²⁾

-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및 외국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⁴⁹³⁾
-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30%에서 2018년에 23.4%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영국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2017년에는 19%까지 하락하였음. 특히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하였음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3년 17.1%에서 2017년 18.8%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도 2013년 12.3%에서 2017년 12.9%로 상승하여 기업 전반의 세부담의 증가하고 있는 상황⁴⁹⁴⁾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기업에게 더욱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율이 투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려움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신용정보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⁴⁹⁵⁾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
 -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⁴⁹⁶⁾에 따르면,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492) 남창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16. 11.

4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생산성·투자·고용을 중심으로」, 2018.

494) 이는 법인세 조세감면 규정의 정비 등으로 2018년 최고세율 인상 이전부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495)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496) 김동훈,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음⁴⁹⁷⁾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내유보금은 쌓이고 있지만, 투자는 부진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음
-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감소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낮아지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⁹⁸⁾
 - OECD나 IMF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 바 있으며, 복지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경기대응 등에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복지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집중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대체할 정책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497) 신상화,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브리프』, 2020. 05.

498) 강병구, 「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가」, 참여연대, 2016. 11. 09.

주요국과의 조세부담 비교

1 현황

■ OECD는 과세대상에 따라 6종류로 조세를 분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 과세대상별 조세분류 체계 |

| 구분 | 명칭 | 영문 | 국문 |
|----------|------|--|---------------------|
| 소득과세 | 1000 |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 소득, 이득, 자본수입에 대한 과세 |
| | 3000 |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 급여 및 노동에 대한 과세 |
| 재산과세 | 4000 | Taxes on property | 재산에 대한 과세 |
| 소비과세 | 5000 | Taxes on goods and services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
| 기타과세 | 6000 | Other taxes | 기타과세 |
| 사회보장 기여금 | 2000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사회보장기여금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020.

- 먼저,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음

| 주요국 조세부담률 |

(단위: %)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OECD 평균 |
|------|------|------|------|------|------|------|---------|
| 2015 | 17.4 | 18.3 | 20.0 | 25.9 | 28.6 | 23.2 | 24.1 |
| 2016 | 18.3 | 18.1 | 19.7 | 26.3 | 28.7 | 23.5 | 24.7 |
| 2017 | 18.8 | 18.6 | 20.6 | 26.6 | 29.3 | 23.4 | 24.5 |
| 2018 | 19.9 | 18.9 | 18.8 | 26.6 | 29.9 | 24.0 | 24.5 |
| 2019 | 19.9 | 18.5 | 18.9 | 26.3 | 30.1 | 24.0 | 24.5 |
| 2020 | 20.0 | - | 19.2 | 25.9 | 30.6 | 23.1 | 24.2 |

주: 1. 일본은 2020년 자료 미발표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낮은 조세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국 국민부담률 |

(단위: %)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OECD 평균 |
|------|------|------|------|------|------|------|---------|
| 2015 | 23.7 | 30.2 | 26.2 | 31.8 | 45.3 | 37.3 | 32.9 |
| 2016 | 24.7 | 30.3 | 25.9 | 32.4 | 45.4 | 37.8 | 33.6 |
| 2017 | 25.4 | 30.9 | 26.8 | 32.9 | 46.1 | 37.7 | 33.4 |
| 2018 | 26.7 | 31.6 | 24.9 | 32.9 | 45.9 | 38.4 | 33.5 |
| 2019 | 27.3 | 31.4 | 25.0 | 32.7 | 44.9 | 38.6 | 33.4 |
| 2020 | 28.0 | - | 25.5 | 32.8 | 45.4 | 38.3 | 33.5 |

주: 1. 일본은 2020년 자료 미발표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 The Initial Impact of COVID-19 on OECD Tax Revenues」, 2022.

-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및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낮은 국민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전체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주요국 GDP 대비 세수 비중 |

(단위: %)

| 구분 | 소득세 | | 법인세 | | 사회보장기여금 | | 부가가치세 | | 재산세 | |
|---------|------|------|------|------|---------|------|-------|------|------|------|
|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 한국 | 4.9 | 4.8 | 4.2 | 4.3 | 6.8 | 7.3 | 4.1 | 4.3 | 3.1 | 3.1 |
| 미국 | 10.1 | 10.3 | 1.0 | 1.3 | 6.1 | 6.1 | 0 | 0 | 2.9 | 2.9 |
| 일본 | 6.0 | 5.9 | 4.1 | 3.8 | 12.7 | 12.9 | 4.0 | 4.1 | 2.6 | 2.6 |
| 독일 | 10.5 | 10.6 | 2.1 | 2.0 | 14.5 | 14.6 | 7.0 | 7.0 | 1.1 | 1.1 |
| 영국 | 9.0 | 9.0 | 2.6 | 2.3 | 6.3 | 6.5 | 7.0 | 7.0 | 4.1 | 4.1 |
| 프랑스 | 9.4 | 9.3 | 2.1 | 2.2 | 16.0 | 14.8 | 7.1 | 7.1 | 4.0 | 3.9 |
| OECD 평균 | 7.9 | 8.0 | 3.1 | 3.0 | 9.0 | 8.9 | 6.7 | 6.7 | 1.8 | 1.8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2021. 12.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전체적인 세수 비중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을 보게 되면,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법인세의 비중이 높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과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낮고 재산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세수 대비 세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주요국 전체 세수 대비 세목별 비중 |

(단위: %)

| 구분 | 소득세 | | 법인세 | | 사회보장기여금 | | 재산과세 | | 부가가치세 | | 기타소비세 | |
|---------|------|------|------|------|---------|------|------|------|-------|------|-------|------|
|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 한국 | 18.4 | 17.5 | 15.7 | 15.7 | 25.4 | 26.7 | 11.6 | 11.4 | 15.3 | 15.7 | 11.0 | 10.1 |
| 미국 | 41.1 | 41.5 | 4.1 | 3.9 | 24.9 | 24.9 | 12.3 | 12.1 | 0 | 0 | 17.6 | 17.5 |
| 일본 | 19.1 | 19.1 | 12.9 | 12.9 | 40.2 | 40.2 | 8.1 | 8.1 | 12.8 | 13.2 | 6.7 | 6.5 |
| 독일 | 27.2 | 27.4 | 5.6 | 5.2 | 37.7 | 37.9 | 2.7 | 2.8 | 18.2 | 18.2 | 8.6 | 8.4 |
| 영국 | 27.3 | 27.6 | 8.0 | 7.6 | 19.1 | 19.5 | 12.5 | 12.4 | 21.1 | 21.3 | 11.5 | 11.5 |
| 프랑스 | 20.5 | 21.1 | 4.6 | 4.9 | 34.9 | 32.8 | 9.0 | 8.9 | 15.4 | 15.9 | 11.2 | 11.6 |
| OECD 평균 | 23.5 | 24.0 | 10.0 | 9.6 | 25.7 | 25.7 | 5.6 | 5.6 | 20.4 | 20.3 | 12.3 | 12.3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 전체 세수 중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게 나타나지만 OECD 평균과는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2 향후 논의 사항

-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은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므로 이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함
- 세부담의 구조는 각 국가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보다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⁴⁹⁹⁾과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과 함께 세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499) Leandro Medina and Friedrich Schneider,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IMF, 2018. 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1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세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13조)
 - 그러나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축소되었고, 2017년 말 개정으로 2018년에는 70%,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60%까지 축소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흑자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임(500)
 - 최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9년도부터 60%로 유지되던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중소기업은 최고 100%)를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힘
- 사업연도 단위 과세는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와 세수 징수의 원활을 위한 것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그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경제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즉시 과세하는 반면, 개인에 발생한 결손금은 일부 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보다 부합한다는 것임
-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음
 - 정부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2032년부터 연간 5,033억 원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32년부터 연간 4,80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500) 기획재정부위원회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337회국회 정기회, 2015. 11. 11.

■ 외국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주요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

| 공제기간 | 국가명 |
|------|--|
| 무제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
| 20년 | 캐나다 |
| 10년 | 일본, 멕시코, 아이슬란드, 핀란드 |
| 5년 | 체코, 터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등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세법개정안 의견』, 2020. 8.

2 개선방안

-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법인세율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법인세제 하에서는 직접적인 법인세율 조정 방안보다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고 결손법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행정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헌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법인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세제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최근 4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이 국산차보다 높아졌으며,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의 비중은 30%를 넘어섰음

| 최근 5년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 |

(단위: 대,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총계 | 1,823,041 | 1,829,988 | 1,827,141 | 1,795,134 | 1,905,972 |
| 승용차 | 1,533,820 | 1,526,660 | 1,525,150 | 1,497,035 | 1,618,333 |
| 법인 등 | 371,198 | 379,825 | 408,299 | 413,606 | 434,989 |
| 수입차 | 264,727 | 264,152 | 292,704 | 275,134 | 302,534 |
| 수입승용차(A) (수입자동차협회) | 225,279 | 233,088 | 260,705 | 244,780 | 274,859 |
| 법인(B) (수입자동차협회) | 80,396 | 82,112 | 94,434 | 91,103 | 99,178 |
| 비중(B/A) | (35.7) | (35.2) | (36.2) | (37.2) | (36.1) |

주: 구매유형 통계는 차량 등록 시 소유주의 명이가 법인(금융회사를 통한 리스, 렌트 및 법인명의 구매 등 포함)인 경우는 법인(Business)항목으로 집계됨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자료 재구성

-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몇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음
-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

| 사적사용 | 사적·업무 혼용 | 업무전용 |
|--|---------------------------------|------------------------|
| 전액 비용 불인정 |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 ¹⁾ | 전액 비용 인정 ²⁾ |
|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 | |

자료: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 2.

2 개선방안

- 제21대국회 들어서는 법인소유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3건⁵⁰¹⁾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들 발의안은 각각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 불산입, 일정배기량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규정의 신설,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배기량에 기초한 손금산입 제한 또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손금산입한도를 금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⁵⁰²⁾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특히 차종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조세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임

 - 캐나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최대 3만 CAD(2,7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리스료는 해당 월 800 CAD(72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음⁵⁰³⁾
 - 호주의 경우 5만 7,466 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⁵⁰⁴⁾
 -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총 상한액을 두고 있으며, 상한초과액 이 월제도를 폐지하였음⁵⁰⁵⁾

501)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4),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9), 이형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94)

502) 국회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2015. 11. 24.

503) 지건주, 「자동차 비용과 혜택」, vanchosun.com, 2018년 1월 22일자.

504) 강상엽, 「업무용차 구입비용 '상한선' 도입 급물살 타나, 조세일보, 2015년 9월 2일자.

505) 심기준 의원실, 2017 국정감사 정책메모

- 운행기록부 의무화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감가상각 방식을 다양화하여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비용공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업무용 사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가속상각방법을 도입하여 현재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인정액을 일정금액까지는 감가상각이 빨리 이루어지게 수정함으로써 일정금액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업무용 사용 목적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적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개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는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사용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그 비용만큼을 개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이는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 계산 때 이미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최대 2천만원을 개선공제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업무용 차량을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상속세제 과세방식

1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대별됨
 -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함
 - 유형의 선택은 각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이 채택한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기술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그 면면을 달리함
 -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유산에 대해 누적된 조세관계를 정산하는 방식인데, 1950년 「상속세법」 제정·공포 이후 징세행정상의 간편함과 조세확보의 용이성을 사유로 유산세형으로 과세하였음
 -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⁵⁰⁶⁾을 제외한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유산세 방식의 장점 및 단점 |

| 장점 | 단점 |
|--|---|
| 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 취득자들이 위장분할상속으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① 유산과세형은 응능부담 원칙에 반함. 유산의 분할 전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유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임 |
| ② 상속분할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율구조가 동일하다면 취득과세형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큼 | |
| ③ 취득과세형은 분할된 각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나,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만을 확인한 후 상속세 신고서를 조사·확인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간편함 | ② 유산과세형은 무상이전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해서 상속·증여를 하든 한 사람에게 전체 유산을 상속·증여하든 총 부담세액이 같음. 조세부담이 중립적이므로 부의 분산유도기능이 없음 |

자료: 박풍우, 『상속세·증여세 실무』, 세연T&A, 2020.

506)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및 단점 |

| 장점 | 단점 |
|--|--|
| <p>①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므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 원칙에 충실함</p> <p>② 취득과세형은 부를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부의 분산 유인기능이 유산과세형보다 우수함</p> | <p>① 각 상속인별로 유산취득가액을 파악하여 각 상속인별 주소지에서 과세하여야 하므로 세무행정이 복잡해짐</p> <p>② 상속세의 총부담액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장분산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음</p> <p>③ 취득과세형에서도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유산과세형과 같은 금액의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부의 광범위한 분산에는 절세효과가 따르기에 유산과세형보다는 세수가 감소함</p> |

자료: 박풍우, 『상속세·증여세 실무』, 세연T&A, 2020.

2 개선방안

- 문제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507)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는 응능부담 원칙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 044-215-4312

507)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2019. 2.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⁵⁰⁸⁾
 -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과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같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됨
-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임

| 상속세율(상증법 제26조)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508) 상증법 제18조 내지 제24조

| 상속공제의 내용 |

| 구 분 | 항 목 | 공 제 내 용 | 한 도 |
|---------------|--------------------------|--|---|
| 기초공제(상증법 §18) | | 2억원 | |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상증법 §19) |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
| | 자녀공제 (상증법 §20) | 1인당 5,000만원 | |
| | 미성년자공제 (상증법 §20) |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 | 연로자공제 (상증법 §20) | 1인당 5,000만원 | |
| | 장애자공제 (상증법 §20) | 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통계청장이 고시 | |
| 일괄공제(상증법 §21) | | 5억원 | |
| 물적공제 | 기업상속 공제 (상증법 §18) | 기업상속재산가액 최대 200억원 ~ 500억원 한도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 |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18) | 영농상속재산가액 | 20억원 (2021년 개정) |
| | 금융재산 공제 (상증법 §22)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 전액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1억원: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20% | 2억원 |
| | 재해손실 공제 (상증법 §23) | 신고기한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 속하여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담보된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2020년 개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개선방안

-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을 할 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증법 제18조509)에서 기초공제금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등 OECD 주요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증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임⁵¹⁰⁾
 -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10억원의 일괄공제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을 더한 것으로 법률용어 상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최소 10억원임
 -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3명(미성년자 1명 포함)을 둔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의 금액이 5억원을 넘을 수 있어 이 경우의 상속공제액은 10억원을 넘어가게 됨
- 일괄상속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을 5억원과 30억원(최소 5억원이며, 30억원 한도로 법정상속분까지 인정)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월 1일임
 - 1997년 이전에는 일괄공제는 없었으며 기초공제 제도만 존재하였음
 - 기초공제는 1993년까지는 6천만원이었으며, 이는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1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2년 현재까지 2억원임
 - 일괄공제는 1997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일괄공제액은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5억원이었으며, 이는 2022년 현재까지도 적용됨
 -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509)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덜어주기 위함이었음⁵¹¹⁾

■ 1997년 대비 2021년 현재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8%임

| 연도별 소비자물가총지수와 물가상승률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소비자물가 총지수 (2020=100) | 57.0 | 61.3 | 61.8 | 63.2 | 95.8 | 97.6 | 99.1 | 99.5 | 100.0 | 102.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4.4 | 7.5 | 0.8 | 2.3 | 1.0 | 1.9 | 1.5 | 0.4 | 0.5 | 2.5 |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연도.

- 일괄공제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을 물가 상승률만큼 상향 조정할 경우 약 9억원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19억원이 될 것임
- 상속세 공제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18조 내지 제24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임
 - 기초공제를 비롯한 여타의 공제제도 상한액도 함께 조정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 044-215-4312

511) 이철재, 『'97 개정세법 해설』, 월간회계 5(2), 1997. 2.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 기부를 했을 경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순기부액은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9.9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⁵¹²⁾
 - 통계청 조사⁵¹³⁾에 따르면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1.6%,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37.2%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임

| 기부 경험 및 향후 의향 조사 |

| 구분 | 2011 | 2013 | 2015 | 2017 | 2019 | 2021 |
|------------|-------|-------|-------|-------|-------|-------|
| 기부경험 있음 | 36.4% | 34.6% | 29.9% | 26.7% | 25.6% | 21.6% |
| 향후 기부의향 있음 | 45.8% | 48.4% | 45.2% | 41.2% | 39.9% | 37.2%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2021. 11.

-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2013년 이후 기부경험이 있거나 향후 기부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민간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한 국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12)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제5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2013.

513)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2021. 11.

| 연도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인원 및 금액 |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소득 공제 | 인원 | 852,556 | 104,627 | 16,200 | 7,162 | 4,420 | 3,291 | 2,640 | 1,792 |
| | 금액 | 2,037,163 | 436,966 | 124,454 | 83,995 | 64,010 | 53,314 | 51,021 | 25,373 |
| 세액 공제 | 인원 | - | 435,360 | 462,693 | 385,058 | 451,449 | 505,478 | 589,098 | 605,972 |
| | 금액 | - | 747,832 | 947,802 | 949,712 | 1,032,814 | 1,197,108 | 1,314,557 | 1,321,492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3-2-7, 각 연도

- 2013년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소득공제를 신청하였던 85만 2천여 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개인 기부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주요국의 세제지원 |

| 구분 | 내용 | |
|------|------|------------------------------|
| 미국 | 소득공제 |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기부금 소득공제 |
| 영국 | | 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공제한도 없음) |
| 일본 | | 2천 엔 초과 시 소득의 40% 한도 내 소득공제 |
| 프랑스 | 세액공제 | 기부액의 66% 세액공제(소득의 20% 한도) |
| 대한민국 | | 기부액의 15% 세액공제(1천만 원 초과시 30%) |

자료: 임동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9. 02.

-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의 15%(해당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전액까지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를 기부금으로 인정함

- 기부주체 및 기부금 종류별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부 주체 및 기부금 종류별 공제내역 |

| 구분 | | 비사업자개인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 법인 (소득공제) |
|-----------|--------------------------|--------------------------|-----------------|----------------------|
| 법정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의 100% | 소득의 100% | 소득의 50% |
| | 금전 외의 자산 공제금액 산정기준 | 시장가격 ⁵¹⁴⁾ | 시장가격 | 장부가액 ⁵¹⁵⁾ |
| | 공제액 | 기부금의 15% | 적용소득세율 | 적용법인세율 |
| | 이월공제기간 | 5년 | 5년 | 5년 |
| 지정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의 30% | 소득의 30% | 소득의 10% |
| | 금전 외의 자산 공제금액 산정기준 | 시장가격 | 시장가격 | 장부가액 |
| | 공제액 | 기부금의 15% ⁵¹⁶⁾ | 적용소득세율 | 적용법인세율 |
| | 이월공제기간 | 5년 | 5년 | 5년 |

자료: 법무법인 윌촌,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용역보고서」, 2017. 12. 재구성

- 기부문화 확산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프랑스와 같이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2013년 당시 과도한 공제로 인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서였던 만큼 현재와 같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 : 044-215-4220

514)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5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516) 지정기부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횡재세 논의현황 및 효과

1 현황

- 횡재세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횡재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과도하거나, 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임⁵¹⁷⁾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따르면 횡재세는 기업에 발생 하는 금전적 이익이 산업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닐 때 정부가 금전적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임⁵¹⁸⁾
- 횡재세는 소득과세의 형태(Income Tax Approach) 또는 소비과세의 형태(Excise Tax Approach)의 형태로 고안될 수 있음
 - 소득과세 형태에 따르면 입법적으로 결정된 수익률 이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납세자가 초과소득에 대해 특정 유형의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운영됨
- 해외 주요국의 횡재세 관련 논의 및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Excise Tax)로 과세하는 법안이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논의중임⁵¹⁹⁾
 - 동 법안은 하루에 최소 300,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의 판매에 대해 적용되며 배럴당 현재 판매 가격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럴당 평균 석유 가격간의 차이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⁵²⁰⁾
 - 영국의 경우, 영국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정책을 발표하였음⁵²¹⁾

5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ude Oil Windfall Profits Taxes: Background and Policy Considerations*, 2022. 3. 23.

5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il Industry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Windfall Profits Tax*, 2011. 7. 13.

519) S.3802 -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520) 동 법안은 1980년에 도입되었던 Windfall Profits Tax와 유사한 내용으로 1980년 기준 \$12.81달러를 초과하는 석유 판매 가치에 대해 70%의 세금이 부과되었던 적이 있음

- 세금은 2022년 5월 26일부터 발효되며 곧 도입될 독립형 법안을 통해 입법화될 예정임
- 기존보다 25%의 추가요율을 부과하여 이익에 대해 6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됨
- 동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 추가 부담금을 없애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었음
- 동 조치의 도입으로 첫 12개월 동안 약 50억파운드(약 7조 8천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담금 내에서 기업의 영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super-deduction’ (초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음
- 스페인의 경우, 소매 가스 및 전력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제공하는 왕실 법령 Royal Decree-Law 17/2021(“RD-L 17/2021”)이 2021년 9월 15일부터 발효되었음
 - 스페인 본토 내에 위치하는 전기생산시설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핵, 수력,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해 가스 가격이 2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초과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 규정은 2022년 3월까지 적용됨(지난 3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됨)
- 이탈리아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에너지 기업(전기, 천연가스, 휘발유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이 신고한 이익 증가분을 전년 동기 대비 산정하여 500만 유로 이상의 인상분(이익률 증가 10% 미만 기업은 제외)을 신고한 기업은 10%의 세금(횡재세)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함⁵²²⁾
 - 2022년 5월, 10%의 횡재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동 조치를 통해 2022년 100억 유로의 재정수입을 예상함
 - 이탈리아 정부는 동 조치는 일회성이며, 동 조치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에너지 비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지원 패키지에 사용될 것이라 밝힘

2 향후 논의 사항

- 횡재세 도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찬반론이 존재함
 - 찬성쪽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 회사의 경영진 및 주

521) HM Treasury Policy paper,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522) Naomi O’Leary, 「Italy imposes 25% windfall tax on energy companies」, THE IRISH TIMES, 2022. 5. 3.

주가 우크라이나의 곤경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되며, 정부만이 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컴퍼니(BP) 최고 경영자가 횡재세가 부과된다면 향후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발언했지만 향후 10년 동안 회사의 투자 계획은 그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음⁵²³⁾
- 과거 횡재세를 부과했던 선례가 이미 있으며,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횡재세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며, 세금 부과를 통해 분배의 정의를 달성할 수 있었음

● 반대쪽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횡재세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남겨둔 이익의 양을 감소시켜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음
- 횡재세는 조세제도의 불확실성을 일으켜 자본지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며 다국적 기업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될 위험을 만들 수 있음
- 기업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함

■ 우리나라도 현재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만큼 이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현 ☎ : 02-6788-457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 : 044-215-4153

523) Hurst L, *BP Boss Says UK Windfall Tax Would Challenge Energy Investment*, Bloomberg, 12 May 2022.

세수추계 오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재정의 총수입은 크게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수입으로 총수입의 60.3%⁵²⁴⁾를 차지하고 있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나, 최근에는 수입규모 예측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국세수입 추계에 있어서 전망과 실적 간의 오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국세수입 결산액은 344.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조원, 추경예산 대비로도 29.8조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차율은 각각 21.7%, 9.5%에 달함
 - 2022년 5월 13일에 정부가 제출하여 5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53.3조원(15.5%)을 증액하는 국세수입 경정을 포함함

| 국세수입 예·결산 세수차이 현황 |

(단위: 조원, %)

| 연도 | 본예산 (A) | 추경예산 (B) | 결산 (C) | 본예산대비 | | 추경대비 | |
|------|------------|-----------------|-----------|------------------|--------------|------------------|--------------|
| | | | | 실적-예산 (D=C-A) | 오차율 (D/A) | 실적-예산 (E=C-B) | 오차율 (E/B) |
| 2012 | 205.8 | - | 203.0 | △2.8 | △1.3 | - | - |
| 2013 | 216.4 | 210.4 (△6.0) | 201.9 | △14.5 | △6.7 | △8.5 | △4.0 |
| 2014 | 216.5 | - | 205.5 | △10.9 | △5.1 | - | - |
| 2015 | 221.1 | 215.7 (△5.4) | 217.9 | △3.2 | △1.5 | 2.2 | △1.0 |
| 2016 | 222.9 | 232.7 (9.8) | 242.6 | 19.7 | 8.8 | 9.8 | 4.2 |
| 2017 | 242.3 | 251.1 (8.8) | 265.4 | 23.1 | 9.5 | 14.3 | 5.7 |
| 2018 | 268.1 | - | 293.6 | 25.4 | 9.5 | - | - |
| 2019 | 294.8 | - | 293.5 | △1.3 | △0.5 | - | - |

524)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참고

| 연도 | 본예산 (A) | 추경예산 (B) | 결산 (C) | 본예산대비 | | 추경대비 | |
|------|------------|------------------|-----------|------------------|--------------|------------------|--------------|
| | | | | 실적-예산 (D=C-A) | 오차율 (D/A) | 실적-예산 (E=C-B) | 오차율 (E/B) |
| 2020 | 292.0 | 279.7 (△12.2) | 285.5 | △6.5 | △2.2 | 5.8 | 2.1 |
| 2021 | 282.7 | 314.3 (31.5) | 344.1 | 61.3 | 21.7 | 29.8 | 9.5 |
| 2022 | 343.4 | 396.7 (53.3) | | | | | |

※ () 안은 추경을 통한 국세수입 경정 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참고하여 재작성

2 개선방안

-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확대 등 조세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이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통적 세수추계 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고,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 등이 제안됨⁵²⁵⁾
 -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목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산 관련 세목의 추계모형이 적절하게 설계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⁵²⁶⁾
-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과 세수추계 업무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계모형의 정합성 강화⁵²⁷⁾,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 및 피드백 내실화 등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힘⁵²⁸⁾
- 한편,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계열 모형만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525) 심혜정, 「세수오차가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재정학연구(제8권 제2호)』, 2015.

526) 기획재정부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1.8., pp. 33~39

527) 경제분야별 자문기관 다양화 및 지표별 복수기관의 전망치 활용, 추계모형 고도화 및 지속 검증, 회귀모형 보완을 위한 추세선(trend-line) 분석 도입

5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수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 2022.2.11.

개발 등 시계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과 관련하여 개별납세자 단위의 미시자료 등 세수전망을 위한 정보 제공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⁵²⁹⁾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지연 ☎ : 02-6788-4573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 : 044-215-4126

529)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5., p.75

소득세 세율 및 구간 조정 논의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8개 과세표준구간에 6~45%의 세율로 구성됨

|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

| 과세표준(8개) | 세 율 |
|--------------------------|----------------------------|
| 1,200만원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분×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분×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 5,000만원 초과분×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분×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분×42% |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10억원 초과분×45% |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취지로 하여 1996년 이후 4단계의 세율구간을 유지하다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요구로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최고세율구간 확대 및 2017년 추가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함으로써 6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7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10억원의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여 8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됨

-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의 4단계 과세표준구간과 8~35% 세율이 적용되었던 소득세율 구조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부자증세로 최고세율 및 고소득 구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고소득층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과표구간별 소득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2014년의 소득세 체계는 5단계 과세표준구간과 6~38% 세율구조로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여 7단계 과세표준구간과 6~42%의 세율이 적용됨

-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8단계 과세표준구간과 6~45%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8~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 변화 |

| 2008년(4단계) | | 2009년(4단계) | | 2010년(4단계) | | 2012년(5단계) | |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7 | 4,600만원 이하 | 16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이하 | 2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5 | 3억원 이하 | 35 |
| | | | | | | 3억원 초과 | 38 |

| 2014년(5단계) | | 2017년(6단계) | | 2018년(7단계) | | 2021년(8단계) | |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5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 | 38 | 5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 | | 5억원 초과 |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이하 | 40 |
| | | | | 5억원 초과 | 42 | 10억원 이하 | 42 |
| | | | | | | 10억원 초과 | 45 |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약 10여년 동안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 변경과 소득세율 증가만을 가지고 소득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과세표준구간의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과세표준구간이 자동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고착됨

2 향후 논의 사항

-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득세 공제체계 및 과세표준구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 복지사업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확대에 대비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

난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⁵³⁰⁾

■ **현행 소득세 체계를 재정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⁵³¹⁾
-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면세자 축소를 위하여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⁵³²⁾
-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 및 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530) 안종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연구」, 『재정포럼』 제27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5. 15.

531)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4호, 2015.12.

532) 전병목,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20.; 김재진,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7.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1 현황

■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체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취지로 하여 1996년 이후 4단계의 세율구간을 유지하다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요구 및 최고세율구간 신설 등으로 2012년 5단계(3억원 초과구간 도입), 2014년 6단계(최고세율구간 확대 및 2017년 추가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7단계(3억원 구간 신설)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8단계(10억원 구간 신설)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됨

- 현재는 물가상승분을 소득세 체계에서 고려하지 않아 4~5년을 주기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변경하거나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물가상승분을 소득세 체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그러나 소득세 과표구간이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약 10여년 동안 저소득층 과세표준구간의 조정 없이 세율과 최고세율구간의 확대만 진행됨 - 기획재정부가 2007년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할 당시 1996년 이후 11년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면서 과거 물가상승률 40~50%를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감소가 너무 커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하후상박⁵³³⁾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했다고 함.⁵³⁴⁾ 그러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과표구간에 대한 개선이 없이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새로운 구간만 설정되어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구간 조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15년 이후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6% 상승(연평균 1.24% 상승)⁵³⁵⁾했음에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동은 미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은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증세효과⁵³⁶⁾에 의해 점점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즉,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차

533)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

534)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올림. 그 결과 최저구간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은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그 결과 최저구간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최고구간은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535)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각 연도

536)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명목소득만 늘어나도 납세자의 소득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함. 그 결과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임.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나므로 “감추어진 증세(hidden tax hike)”라고도 함

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하여 납세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2000년 후반부터 매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정책과 각종 소득공제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⁵³⁷⁾
 -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537)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6~2009년의 소득세를 물가연동하여 적용하는 경우 세수 규모가 실제 걷어 들인 세수와 차이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임언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대한 쟁점」(이슈와 논점 제77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 2012. 5. 1.)

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726만 명에 이룸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37.2%에 이르고 있음
 - 2013년 소득공제방식의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및 2015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증함
 - 2013년 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전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현황 |

(단위 : 만 명,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납세대상자 | 1,636 | 1,669 | 1,733 | 1,774 | 1,801 | 1,858 | 1,917 | 1,950 |
| 면세자 | 531 | 802 | 810 | 774 | 739 | 722 | 705 | 726 |
| 면세자 비율 | 32.4 | 48.1 | 46.8 | 43.6 | 41.0 | 38.9 | 36.8 | 37.2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 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 급여구간별 면세자 비율 비교 |

(단위 : %, %p)

| 구분 | 1천만원 이하 | 1.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013(A) | 92.4 | 38.7 | 24.6 | 14.6 | 6.2 | 2.4 | 1.3 | 0.5 | 0.1 | 0.1 | 0.2 |
| 2014 | 100.0 | 87.0 | 40.6 | 36.6 | 32.8 | 21.1 | 14.0 | 6.1 | 1.2 | 0.2 | 0.3 |
| 2015 | 100.0 | 86.3 | 41.2 | 34.5 | 30.3 | 19.5 | 12.8 | 5.3 | 1.0 | 0.2 | 0.2 |
| 2016 | 100.0 | 85.6 | 39.6 | 32.2 | 27.5 | 18.4 | 12.4 | 5.4 | 1.1 | 0.2 | 0.2 |
| 2017 | 100.0 | 85.3 | 38.6 | 32.3 | 26.1 | 17.4 | 11.7 | 5.3 | 1.1 | 0.2 | 0.2 |
| 2018 | 100.0 | 85.0 | 34.8 | 32.9 | 27.4 | 16.4 | 16.4 | 4.9 | 1.0 | 0.2 | 0.2 |

| 구분 | 1천만원 이하 | 1.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019 | 100.0 | 85.6 | 34.6 | 31.8 | 25.4 | 14.0 | 8.8 | 3.9 | 0.9 | 0.1 | 0.2 |
| 2020(B) | 100.0 | 86.3 | 40.2 | 33.3 | 20.2 | 13.3 | 7.8 | 3.2 | 0.6 | 0.1 | 0.1 |
| 차이(B-A) | 7.6 | 47.6 | 15.6 | 18.7 | 22.8 | 10.9 | 6.5 | 2.7 | 0.5 | 0.0 | △0.1 |

주: 차이는 2013년과 2020년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함으로써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면세자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어려워지자 고소득층의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하면서 세율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이 2013년 201.6만원에서 2019년 339.3만원으로 68.3% 상승하였고, 과세대상자 실효세율이 2013년 4.5%에서 2019년 5.8%로 높아져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나,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⁵³⁸⁾
 - 단,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 주요 공제항목에 대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Phase-out Rule 도입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소득공제의 경우

538) 전병목,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20.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도한 면세자 비율 및 불안정해진 세법의 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부대의견”, 2015.5.).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저한세 도입 등 면세자 비율 축소 대안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정책 일관성 문제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음
-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 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도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1 현황

-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 이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음⁵³⁹⁾
 -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세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과 배우자, 그 밖의 부양가족)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거주자,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및 장애자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소득공제⁵⁴⁰⁾와 근로소득 세액공제⁵⁴¹⁾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의료비공제의 경우 필요경비의 성격을 지니는 납세자의 질병 치료에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공제이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개인적 소비에 영향을 주고, 「헌법」의 혼인 및 가족 보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539)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보도자료, 2013.8.8.

540) 근로소득 소득공제의 경우 그 본질은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근로소득 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공제라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541)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에 비해 과세포착율이 높고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당해 소득 수령시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교육비공제는 정책적 견지에서 납세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이는 형평성의 취지에서 세액공제보다는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한도를 정하여 소득공제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최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첫째, 의료비 및 교육비를 근로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액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둘째, 2013년말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이 저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셋째,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지출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도 있음
 - 첫째,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제도라기보다 비재량적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 성격의 공제항목이므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방식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임
 - 둘째, 소득공제로 환원시 대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세부담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됨
-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과세 당사자와 관련된 의료비 및 교육비만을 공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1 현황

- 정부는 임대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었으며,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2014년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일몰 연장함⁵⁴²⁾⁵⁴³⁾⁵⁴⁴⁾
 -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6~42%) 방법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64조의2)
 -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주택 임대소득과세 기준 |

|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 | | 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 |
|-------------------|-------------------|------------------------|---------------|-----------------|
| 주택수 ¹⁾ | 월세 | 보증금 | 수입금액 | 과세방법 |
| 1주택 | 비과세 ²⁾ | 비과세 |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 2주택 | | | | |
| 3주택 이상 | 과세 | 간주임대료 과세 ³⁾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주: 1) 주택수 : 소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 귀속 분까지)

자료: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소득세법」 제12조, 제25조, 제64조의2

542) 「소득세법」 제64조의2 [시행일: 2017.1.1.]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함

543) 2019년부터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8%로 종합과세함(「소득세법」 제64조의2 [시행일: 2019.1.1.])

544)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해당 사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됨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소득자로 등록할 수 있고, 임대소득세 등록의 혜택으로는 ①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와 ② 세액감면 등이 있음
 - 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부할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존재함

|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

| 구 분 |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1) | (1) 이외의 경우 |
|-----|-------|--|------------|
| 혜 택 | 필요경비율 | 60% | 50% |
| | 기본공제 | 4백만원 | 2백만원 |
| 요 건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할 것 나.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증기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자료: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이며, 그 외의 경우는 없음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총수입금액 규모와 무관) |

| 구 분 |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1) | (1) 이외의 경우 |
|-----|--|---|------------|
| 감면율 | |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 - |
| 요 건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할 것 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일 것 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증기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마.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 |

자료: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하여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할 경우 실질적으로 1,3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둘째, 분리과세의 적용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상당한 규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분리과세의 기준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하여 다운계약서, 이면계약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 일정구간을 정하여 비과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에 의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1 현황

- 월세세액공제제도⁵⁴⁵⁾는 2014년 2월 26일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입자에 한하여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⁵⁴⁶⁾
 - 공제대상자⁵⁴⁷⁾를 종전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사실상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⁵⁴⁸⁾
 - 공제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며,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가능하도록 함
 - 만약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시 미신청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세액공제제도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월세세액공제제도는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로 등록을 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드러나게 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545) 기획재정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2014.2.26., p. 12~13

546) 수요자, 즉 주택 임차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유일함. 세액공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기존 공제율은 50%, 한도 연간 300만원에서 2013년에 공제율 60%, 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한 차례 확대된 후, 2014년 ‘2.26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

547) 월세세액공제의 대상범위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단독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국민주택 세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에 한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동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함

548) 임대소득 과세방식의 정비를 통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소득의 세원관리 강화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고자 한 것임

- 월세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750만 원이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최대 75만 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월세세액공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소유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관련 대출 및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은행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소득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⁴⁹⁾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549)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

1 현황

■ 2005년 부동산보유 억제 및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 부침을 겪으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로 상향 조정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최대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부담상한도 최대 300%로 상향 조정됨⁵⁵⁰⁾

- [노무현 정부(2003.2.~2008.1.)] : 2005년 부동산 가격안정 및 보유억제를 위하여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납입된 세수는 지방 배분을 원칙으로 함
- [이명박 정부(2008.2.~2013.1.)] :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방식의 위헌 판결⁵⁵¹⁾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었고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마련됨
- 2008년 12월 26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영향력이 축소됨
- [문재인 정부(2017.5.~)]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최대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최대 100%), 세부담상한 상향조정(최대 3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

| 과세표준 | 시사기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 | |
|--------|----------------------------|---------------------------------------|-----|-----------------------------|-----|
| | | 조정대상 ¹⁾ 1주택 비조정대상 1~2주택 | | 조정대상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 3주택 이상 | |
|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6 | 3.0 | 1.2 | 6.0 |

550)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전액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551)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 과세표준 | 시사기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 | |
|---------|-------------------------------------|---------------------------------------|----|-----------------------------|----|
| | | 조정대상 ¹⁾ 1주택 비조정대상 1~2주택 | | 조정대상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 3주택 이상 | |
|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6억원 | 1주택 18~23억원 이하 다주택 14~19억원 이하 | 0.8 | | 1.6 | |
| 6~12억원 | 1주택 23~34억원 이하 다주택 19~30억원 이하 | 1.2 | | 2.2 | |
| 12~50억원 | 1주택 34~102억원 이하 다주택 30~98억원 이하 | 1.6 | | 3.6 | |
| 50~94억원 | 1주택 102~181억원 이하 다주택 98~176억원 이하 | 2.2 | | 5.0 | |
| 94억원 초과 |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 3.0 | | 6.0 | |

주: 1) 조정대상지역은 2021년 8월 30일 기준, 서울시 전역 등 111개 지역 지정중[2020.12.18. 지정]
 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

-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7.10 부동산 대책(202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이었음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 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증가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도 101만 7천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함

2 향후 논의 사항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⁵⁵²⁾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세 부담 상한 기준액을 대폭 낮춰 소득 수준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기준은 서울 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552) 전병목·송경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6.28.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단일 누진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처럼 주택 가격에 따라 0.5~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임
- 전체적으로 높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044-215-4316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

1 현황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부동산 취득 이후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⁵⁵³)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되며, 2년 미만은 40~50% 중과세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
 - 다만,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임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됨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음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 과세표준 | 세 율 |
|---------------|-----------------------------------|
| 1,2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553)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

| 다주택자 종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021.6.1. 이후) |

| 구분 |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
| 주택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 | | 기본세율+20%p | |
|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 70% |
| | | | 2년 미만 | | 60% |
| | 2년 이상 | | 기본세율 | | |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 | | | 기본세율+30%p | |
| |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 | 기본세율+20%p | | | |
|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 일반지역 | | 1년 미만 | 70% | | |
| | 2년 미만 | 60% | | |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 |
| 미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2018.1.1. 이후)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 |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
|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 | |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 |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
|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 | |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 |

주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의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함
 - 2022.5.10.일부터 2023.5.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종과를 배제함
 - 기본세율 : 6%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연 2%)

-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과제도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과제도를 완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2 향후 논의 사항

-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기본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⁵⁵⁴⁾
 - 첫째,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부동산 관련 세목은 과세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율체계도 상이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둘째,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간 적정 관계 설정이 요구됨.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별도의 과세논리와 과세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독자적 운용의 틀을 구축해야 하며, 그 세원(과세대상)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세수를 증대시켜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담보 등을 위해 거래세제의 과세대상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열거주의)되지 않은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세차시설 등을 새롭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이상의 개선대안이 실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증과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너무 커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고 보유세를 증과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554) 유태현, 「부동산 거래세제의 발전방향」, 『지방세포럼』 통권 제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03.

인상시키고 있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7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1 현황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소속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⁵⁵⁵⁾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종교인에는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수녀,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속함
- 세법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를 해 왔음
 - 그러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됨
 - 2015년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논의가 시작된지 50년 만인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
 - 그러나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 1년 만에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종교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종교 활동비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 활동비⁵⁵⁶⁾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가운데 대다수가 소득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임
 - 그러나 종교 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급여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부가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음. 즉,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음
 -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종교인의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 수준과 유사하

55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556) 종교 활동비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이나 종교단체 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기독교 당회 등이 의결·승인한 목회활동비, 불교 종무회가 의결·승인한 수행지원비, 천주교 사제회의가 의결·승인한 성무 활동비가 종교 활동비에 해당함

게 맞추기 위해 종교 활동비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함.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종교단체 회계, 종교인 회계 구분 : 정부는 종교단체가 원하면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⁵⁵⁷⁾. 이는 과세를 이유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임
 -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기타소득 신고 허용 :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음.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따라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국가의 과세제도에 응해야 할 것임
 - 종교 활동비의 투명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투명화, 그리고 기타소득 신고의 허용 등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 등 국가의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하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557) 종교단체회계는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기록한 것이며, 종교인회계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관련된 것임

MSCI와 WGBI 편입

1 현황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란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회사가 발표하는 주가지수를 의미하며 대표성(Representatives), 복제가능성(Replicability) 및 효율성(Efficiency)을 목표로 설계됨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됨⁵⁵⁸⁾
 - MSCI 시장은 선진국지수(DM), 신흥시장지수(EM), 프런티어시장지수(FM) 등으로 분류되며 분류 기준은 (1)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 (2) 경제의 규모 및 유동성, (3) 시장접근성으로 구성됨
 -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1)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년 연속 세계은행의 고소득기준(2019년 기준 12,536 미국달러)의 25%를 상회하여야 하고, (2)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46억 8,500만 미국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3) 자본시장이 외국인소유에 대해 매우 높은 정도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자본출입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용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절차는 관찰대상국(위치 리스트)에 오른 후 1년 이상 경과 후 선진국지수 편입여부가 결정됨
-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선진국지수 승격 대상 관찰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2008년, 2015년, 2021년(6월) 세 차례에 걸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2021년 11월 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설명회를 계기로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함⁵⁵⁹⁾
 - 2022년 6월 발간한 시장접근성 보고서에는⁵⁶⁰⁾ 우리나라는 증시의 영문 공시가 부족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배당금 공시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므로 외국인 투자자 시장접근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558) 기획재정부, 「세계 주가지수 MSCI」, 2021.11.5.

559)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영국 런던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21.11.2., 3면;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MSCI와 면담」, 보도자료, 2022.4.23.

560)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2022.

-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글로벌 국채지수, 세계국채지수)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산하의 파이낸셜타임즈 증권거래소(FTSE) 러셀(Russell)그룹이 관리하는 국채지수임
 -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3국의 정부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음⁵⁶¹⁾
 -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의 국채시장유입 및 국채의 대외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 WGBI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market size)와 신용등급(credit rating)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객관적 요건은 국채시장규모가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이고, 신용등급 기준은 S&P기준 A-, 무디스 기준 A3 이상이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은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Level)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2021년 말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잔액은 843조 7,000억원⁵⁶²⁾으로, 미화로 6,750억 달러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S&P기준 AA등급, 무디스 기준 Aa2로 평가받아서 우리나라는 국채 시장규모나 국가신용등급 면에서는 이미 그 자격을 갖추었음
- 2009년 2월 우리나라 외화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WGBI에 편입을 추진한 바 있음
 - 당시 우리나라는 WGBI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WGBI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하여 세금경감을 조건으로 내걸었음
 - 이에 따라 채권투자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음
 - 다만 2010년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이 과도하게 밀려와서 국회 의결까지 했던 비과세 방침을 백지화하고 편입도 없던 일로 하였으나 최근 다시 편입을 추진 중임⁵⁶³⁾

2 향후 논의 사항

- 2022년 6월 24일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편입에 실패함⁵⁶⁴⁾

561) FTSE Russell, FTSE Russell Announces the Results of its March 2022 Country Classification Review for Fixed Income and Equity Indices, April 1 2022.

562) 기획재정부, 「국채 2021」, 2022.3.31., 175면.

563)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42면.

564) 한경코리아, “정부 강한 의지에도 韓 결국 MSCI 선진지수 후보 편입 실패”, 2022.6.24.; 중앙일보, “한국증시, MSCI

- 이는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과 공매도 전면개방을 달성하지 못해 시장접근성 보고서 결과가 지난해 평가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⁵⁶⁵⁾
 - 향후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일부 연장하였으나⁵⁶⁶⁾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공매도 전면개방, 영문 공시 확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WGBI의 경우 지수편입으로 인한 추종자금 유입 효과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WGBI편입을 추진하여야 함
- 현 WGBI를 추종하는 자산규모가 약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발전과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WGBI편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⁵⁶⁷⁾
 - 반면,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WGBI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견고하게 유입되는 경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어도, WGBI는 영향력이 아주 높은 지수는 아니라는 견해⁵⁶⁸⁾ 및 편입 그 자체로 국고채 금리가 레벨이 크게 떨어지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⁵⁶⁹⁾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국채과
☎ : 044-215-4710·5130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관찰대상국 등재 실패, 2022.6.24.

565)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2022; 뉴스핌, “尹정부 ‘MSCI지수 편입’ 포기했다...경제정책 후순위로 밀려”, 2022.6.20.

566) 이데일리,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연다... 향후 24시간 개발 추진”, 2022.6.23.

567) 한경정치, “중국 국채는 FTSE 글로벌채권지수에 편입”, 2021.3.30.

568) 서울신문, “강만수부터 홍남기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집착이유는, 2022.4.25.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 발언}.

569) 서울신문, “강만수부터 홍남기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집착이유는, 2022.4.25. {박윤정 NH 투자증권 연구원 및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발언}.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상향조정

1 현황

- 중앙은행의 법정적립금은 중앙은행의 법적독립성을 확보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임
 -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세후 순이익의 30%를 손실보전목적의 법정적립금으로 쌓은 후, 임의적립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세입(歲入)으로 납부함
 - 최초 「한국은행법」에서의 이익금처분은 보수적이었으나, 1977년 이익금적립 상한을 폐지하고 법정적립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함⁵⁷⁰⁾
 - 2000년대 들어 외화자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율변동이 한국은행 순이익금에 미치는 효과가 대폭확대되었고 대규모 손실이 계속되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이익금규모가 위험수준으로 고갈되어 법정적립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30%로 상향조정함⁵⁷¹⁾
 - 당시 국회는 50% 상향조정 견해였고 정부는 10% 상향조정 견해여서, 절충하여 30%로 상향조정함
 - 30%의 법정적립비율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높은 수준이나, 이는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비중이 90%인 것을 고려한 것임
- 반면 「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에 따르면 법정적립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보전하게 되어 있음
 -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게 되면, 통화신용정책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정적립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함
-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국제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가격 상승과 해외 추가상승에 따른 외화유가증권 매매차익이 증가한 점을 꼽음
 - 2020년과 2021년 유가증권 매매익으로 각각 9조 8,978억원과 10조 2,567억원을 거둠⁵⁷²⁾

570) 차현진, 「법으로 본 한국은행」, 율곡출판사, 2020, 522면.

571)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8125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11.6.30; 서울경제, “한은 적립금까지 퍼주자는 與...10년전과 정반대”, 2021.5.7; 서울경제, “외환충격 '방파제' 인데.. 韓銀 적립금 손대면 통화정책 흔들린다”, 2021.5.7.; 차현진, 「법으로 본 한국은행」, 율곡출판사, 2020, 523면.

572) 한국은행, 경영정보, 재무현황, 요약손익계산서.

| 한국은행법의 이익금 적립 개정 추이⁵⁷³⁾ |

| 구 분 | | 1950년 제정 | 1962년 개정 | 1968년 개정 | 1977년 개정 | 2011년 개정 |
|-------|------|-----------------|-------------------|----------|----------|----------|
| 법정적립금 | 적립비율 | 100분의 25 | 100분의 5 | 100분의 5 | 100분의 10 | 100분의 30 |
| | 적립한도 | 5억 ^圓 | 200억 ^圓 | 20억원* | - | - |
| 임의적립금 | | 적립불가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 통화개혁(圓貨와 원貨를 10:1로 교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정 전과 차이가 없음

2 향후 논의 사항

-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 국고로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법정적립금을 하향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음⁵⁷⁴⁾
 - 반면 한국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한국은행의 적립비율 조정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⁵⁷⁵⁾
 -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조정은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므로 향후 손실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추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일몰조항으로 일정기간 법정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법 혹은 법정적립비율 조정 대신, 적립상한을 다시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작성 자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 : 02-6788-458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 : 044-215-2831

573) 차현진, 「법으로 본 한국은행」, 율곡출판사, 2020, 522면.

574) 이투데이,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2021.10.15.; 국회뉴스은, “[2021국감] 고용진 의원 “지난해 한국은행 적립금 17조원”, 2021.10.15.; 법정적립금을 10%로 하향조정하자는 의안으로는 의안번호: 202108426(양경숙 대표발의), 202109738(고용진 대표발의).

575) 서울경제, “외환충격 ‘방파제’인데 韓銀 적립금 손대면 통화정책 흔들린다”, 2021.5.7.

국세청

주류통신판매 관련 논의

1 현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酒類)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음식에 포함된 주류 배달⁵⁷⁶⁾,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⁵⁷⁷⁾, 음식점 내 주류자판기 설치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소주를 온라인에서 판매함에 따라 전통주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⁵⁷⁸⁾과 함께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주요 국가별 주류 온라인 판매 현황 |

| 국가 | 온라인 판매 현황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 및 특별구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 18개 주 및 특별구에서는 와인 외 기타 주류에 대해서도 허용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오프라인과 다른 차별적 규제 없음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판매점을 보유한 주류판매 면허권자에 한해 허용 |

576) 음식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주류(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

577) 고객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주문·결제 후 매장에 방문하여 주류를 인도받을 수 있음. 이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주류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님

578) 중앙일보, “박재범·임창정 소주 핫한건 좋은데…혼란 빠진 ‘전통주’ 무슨일”, 2022.05.09., 한국경제 “온라인 판매, 원소주 되는데…장수막걸리는 왜 안되나”, 2022.05.27

| 국가 | 온라인 판매 현황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오프라인과 다른 차별적 규제 없음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오프라인과 다른 차별적 규제 없음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오프라인과 다른 차별적 규제 없음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주류와 소규모(3,000kl 이하) 생산 국내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 통신판매 주류소매업 면허 존재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 주종 제한 없음 |
| 러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소비 우려, 생필품이 아닌 점을 이유로 통신판매 금지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소규모 주류제조업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해외 주요국의 주류 통신판매 제도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2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 주류의 통신판매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⁵⁷⁹⁾을 제시하고 있음
 - 주류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통신판매 허용 시,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주류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⁵⁸⁰⁾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은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고⁵⁸¹⁾ 볼 수 있음
 - 통신판매 허용 시, 국민건강이 저해되고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주류 도·소매업자가 타격을 받고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음

579) 국세청 제출자료(이해관계자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참고

580) 국세청 제출자료(이해관계자별 입장),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

581) OECD, 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 2020., p.74.

- 이처럼,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지연 ☎ : 02-6788-4573

관련부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 044-204-338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1 현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4년 도입된 제도임⁵⁸²⁾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임⁵⁸³⁾
 - 명단공개에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상의 안내문 발송 및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 기간을 가진 후 연말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게 됨
 - 세법개정을 통해 명단공개 기준이 완화되어 2004년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에서 현재는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으로 그 기준이 낮아짐
 - 명단공개기준 : (2004년) 기간 2년, 금액 10억원 이상 → (2010년) 2년, 7억원 → (2012년) 1년, 5억원 → (2016년) 1년, 3억원 → (2017년) 1년, 2억원
 -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는 7,016명(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원, 개인 최고액은 1,537억원, 법인 최고액은 358억원으로 나타남⁵⁸⁴⁾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⁵⁸⁵⁾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⁵⁸⁶⁾함

58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법률 제7008호, 2003.12.30., 일부개정]와 동법 시행령 제66조
국세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정보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과 관보와 관할세무서의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음

583) 「국세기본법」 [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584)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2021. 11. 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7,016명을 확정함.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함

- 사전 안내 : ('20) 7,624명, 55,178억 원 → ('21) 7,700명, 61,006억 원

- 공개제되 684명 : 개인 450명, 법인 234개 업체

| 고액상습채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계 | | 개 인 | | 법 인 | |
|-----|-------|--------|-------|--------|-------|--------|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 인 원 | 7,016 | 53,612 | 4,702 | 38,358 | 2,314 | 15,254 |
| 비율 | 100.0 | 100.0 | 67.0 | 71.5 | 33.0 | 28.5 |

자료: 국세청, 「2021년 고액·상습채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보도자료, 2021.12.16.

-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제외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으로 인하여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 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 등이 있으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액 일부납부로 인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임 - ‘체납액 30% 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공개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들을 확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공개 요건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채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을 납부한 자를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채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29

585) ('20) 28명, 6,946억 원 → ('21) 38명(10명 ↑), 11,518억 원(4,572억 원 ↑)
586) ('20) 6,965명, 48,203억 원 → ('21) 7,016명(51명 ↑), 53,612억 원(5,409억 원 ↑)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방안

1 현황

-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제도는 고액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 및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체납조세의 납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⁵⁸⁷⁾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출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⁵⁸⁸⁾
 - 동 기간의 만료 후 반복적으로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 등 업무집행 상 어려움이 있으나, 금지기간연장 등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연도별 출국금지실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은 2013년 2,698건에서 2021년 6,025명으로 약 2.3배 증가함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

(단위: 명)

| 구 분 | 전년도말 출국금지인원 | 당해연도 | |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 |
|------|----------------|--------|-----------|-----------------|
| | | 출국금지인원 | 출국금지 해제인원 | |
| 2013 | 2,557 | 1,149 | 1,008 | 2,698 |
| 2014 | 2,698 | 1,007 | 738 | 2,967 |
| 2015 | 2,967 | 1,518 | 889 | 3,596 |
| 2016 | 3,596 | 4,499 | 1,983 | 6,112 |
| 2017 | 6,112 | 5,651 | 2,811 | 8,952 |
| 2018 | 8,952 | 9,560 | 3,600 | 12,012 |
| 2019 | 12,012 | 2,395 | 6,692 | 7,715 |
| 2020 | 7,715 | 1,876 | 2,192 | 7,399 |
| 2021 | 7,399 | 567 | 1,941 | 6,025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87)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3~4, 제2조, 제2조의2, 제3조의3, 제5조, 제36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8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 출국금지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⁵⁸⁹⁾이 나왔음에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출국금지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음⁵⁹⁰⁾

2 향후 논의 사항

- 출국금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⁵⁹¹⁾
 - 첫째,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상당폭 연장하는 방안⁵⁹²⁾
 - 출국금지 기간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체납징수효과를 제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반복적인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만료의 사유로 조기에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금액기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
 - 기준금액을 더 낮출 경우 대상자가 확대되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납액 기준이 낮아지면 대상자가 증가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체납액 징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셋째, 국세청과 법무부의 업무협조 강화 방안
 -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⁵⁹³⁾
- 다만, 출국금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

589) 헌법재판소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3허가18 결정」에 의하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상덕, 「체납자 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재량통제」, 『행정판례연구』 10-1, 2014.9, pp. 105~167

590)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 2003. pp. 138~139.

591) 김완석, 「조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수단의 문제점」, 『조세연구』, 조세연구포럼, 2003. pp. 137~140

592) 추순호, 『국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세무법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6, pp. 96~97

593) 장상록정연식,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통권 제36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6, pp. 168~171

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안 이외에도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과거 납세이행정도, 체납자의 해외 생활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출국금지의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3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1 현황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되었음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징수금액 | 지급률 |
|-----------------|--------------------------|
| 5천만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20% |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 2천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
| 30억원 이상 | 4억 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

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은닉재산이란 체납으로 압류된 모든 체납자 재산 이외에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은 재산에서 제외함(「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 ①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②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③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에 의하면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은닉재산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 ②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 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100만원에서 2019년 8억 1,300만원으로

약 73.9배 증가함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20년 52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도 2006년 6억 3,800만원에서 2019년 81억 7,9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2006년 2건에 1,100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31건에 12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음. 그 결과 건당 지급금액도 2006년 550만원에서 2020년 3,900만원으로 높아졌음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 구 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 포상금 지급 | | |
|------|-------------|--------|---------|--------|-------|--------|
| | 신고건수 | 징수금액 | 건당 징수금액 | 건 수 | 지급액 | 건당 지급액 |
| 2006 | 46 | 638 | 13.9 | 2 | 11 | 5.5 |
| 2007 | 87 | 1,639 | 18.8 | 4 | 48 | 12 |
| 2008 | 81 | 842 | 10.4 | 11 | 43 | 3.9 |
| 2009 | 93 | 166 | 1.8 | 11 | 44 | 4 |
| 2010 | 97 | 191 | 2.0 | 10 | 49 | 5 |
| 2011 | 123 | 41 | 0.3 | 7 | 32 | 5 |
| 2012 | 183 | 590 | 3.2 | 7 | 82 | 12 |
| 2013 | 316 | 2,650 | 8.4 | 5 | 48 | 10 |
| 2014 | 259 | 22,813 | 10.9 | 15 | 226 | 15 |
| 2015 | 344 | 7,929 | 23.0 | 23 | 851 | 37 |
| 2016 | 282 | 7,744 | 27.5 | 25 | 839 | 34 |
| 2017 | 391 | 8,810 | 22.5 | 30 | 1,365 | 46 |
| 2018 | 572 | 8,069 | 14.1 | 22 | 813 | 37 |
| 2019 | 436 | 7,505 | 17.2 | 29 | 802 | 28 |
| 2020 | 526 | 8,179 | 15.6 | 31 | 1,206 | 39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향후 논의 사항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가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채납액 30% 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으로 인하여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채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채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채납자가 일부 채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채납액의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17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방안

1 현황

-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⁵⁹⁴⁾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3.4%에 이룸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사업자는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도소매업자,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IT관련업자(유튜버, 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신종호황분야 업자(반려동물 관련업자,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문화·스포츠 분야(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됨. 여기서는 고소득사업자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고소득사업자 중 한 부분을 지칭함
 -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인 고소득사업자 총 9,703명의 소득적출률은 49.2%이며, 부과된 세액은 6조 679억원임

|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적출률 |

(단위: 명, 건, 억원, %)

| 구분 | 착수일 | 인원 | 총소득 (①=②+③) | 신고소득 ② | 적출소득 ③ | 부과세액 | 소득적출률 (③/①) |
|----|-----------|-----|----------------|-----------|-----------|-------|----------------|
| 1차 | '05.12.22 | 422 | 5,302 | 2,286 | 3,016 | 1,094 | 56.9 |
| 2차 | '06.03.20 | 319 | 5,516 | 2,331 | 3,185 | 1,065 | 57.7 |
| 3차 | '06.08.16 | 362 | 15,459 | 7,932 | 7,527 | 2,454 | 48.7 |
| 4차 | '06.11.06 | 312 | 10,911 | 5,777 | 5,134 | 2,096 | 47.1 |
| 5차 | '07.02.26 | 315 | 11,048 | 5,795 | 5,253 | 2,147 | 47.5 |
| 6차 | '07.06.21 | 259 | 7,865 | 4,230 | 3,635 | 1,581 | 46.2 |
| 7차 | '08.01.10 | 199 | 6,688 | 3,671 | 3,017 | 1,271 | 45.1 |
| 8차 | '08.08.21 | 136 | 4,075 | 2,257 | 1,818 | 843 | 44.6 |

594) 소득적출률이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임

| 구분 | 착수일 | 인원 | 총소득 (①=②+③) | 신고소득 ② | 적출소득 ③ | 부과세액 | 소득저출률 (③/①) |
|-------|-----------|-------|----------------|-----------|-----------|--------|----------------|
| 9차 | '08.11.28 | 147 | 2,874 | 1,630 | 1,244 | 905 | 43.3 |
| 10차 | '09.05.06 | 130 | 5,160 | 3,048 | 2,112 | 883 | 40.9 |
| 11차 | '09.09.25 | 150 | 2,751 | 1,894 | 857 | 378 | 31.2 |
| 2010년 | 상시 | 451 | 10,285 | 6,267 | 4,018 | 2,030 | 39.1 |
| 2011년 | 상시 | 596 | 20,431 | 12,764 | 7,667 | 3,632 | 37.5 |
| 2012년 | 상시 | 598 | 17,967 | 10,889 | 7,078 | 3,709 | 39.4 |
| 2013년 | 상시 | 721 | 20,833 | 11,047 | 9,786 | 5,071 | 47.0 |
| 2014년 | 상시 | 870 | 23,347 | 13,296 | 10,051 | 5,413 | 43.1 |
| 2015년 | 상시 | 960 | 27,326 | 15,585 | 11,741 | 6,059 | 43.0 |
| 2016년 | 상시 | 967 | 22,626 | 12,901 | 9,725 | 6,330 | 43.0 |
| 2017년 | 상시 | 908 | 22,324 | 10,801 | 11,523 | 6,719 | 51.6 |
| 2018년 | 상시 | 881 | 23,769 | 11,066 | 12,703 | 6,929 | 53.4 |
| 합계 | | 9,703 | 266,557 | 158,763 | 131,141 | 60,679 | 49.2 |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저소득층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사업자 기획조사에 의한 대상인원, 적출 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소득적출률의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부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1.5억원 과표구간이 실시되고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향후 논의 사항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고소득사업자의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세율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50%가 아닌 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함
 - 또한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 044-204-3027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 방안

1 현황

-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지급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조정되어 왔으며,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으로는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함
 - [소득 요건] 2018년 세법개정(2019년 시행)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⁵⁹⁵⁾ 요건은 각각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됨
 -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의 가구원 재산⁵⁹⁶⁾합계액 기준액은 2018년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019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됨(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 [연령 요건] 2013년부터 연령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연령기준은 2013년 60세에서 2016년 50세, 2017년 40세, 2018년 3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2019년부터 연령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하면 연령에 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결혼 및 맞벌이 여부)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별 최대급여는 연간 150/260/300만원으로 2018년(연간 85/200/25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됨

595) 소득은 전년 귀속소득 기준 가구당 총소득으로서 연간 총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의미(비과세소득은 제외)함

596)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등을 포함함

|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

| 연 도 | 가구 수(만가구) | 가구당 금액(만원) | 총 지급액(억원) |
|------|-----------|------------|-----------|
| 2008 | 59 | 77 | 4,537 |
| 2003 | 57 | 77 | 4,369 |
| 2010 | 52 | 77 | 4,020 |
| 2011 | 75 | 82 | 6,140 |
| 2012 | 78 | 72 | 5,618 |
| 2013 | 85 | 92 | 7,745 |
| 2014 | 128 | 82 | 10,566 |
| 2015 | 144 | 73 | 10,574 |
| 2016 | 166 | 72 | 11,967 |
| 2017 | 179 | 75 | 13,381 |
| 2018 | 410 | 110 | 45,049 |
| 2019 | 432 | 103 | 44,683 |
| 2020 | 426 | 105 | 44,732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2018년 근로장려세제의 연령 및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개편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2017년 179만 가구에서 2018년 410만 가구로 2.3배 확대되었으며, 총 지급액은 1.3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26만 가구에 4.4조원(1인당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기준 폐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에 기인하여 지급규모가 확대되어 2020년 단독가구 수급가구는 267만 가구, 지급액은 2.3조원 규모임
- 2019년부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2018년 30세 이상)이 폐지됨에 따라 20대 수급자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40~50대 수급자 비중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존재함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 지급방식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지급액을 더 늘리자는 방안도 제시됨⁵⁹⁷⁾

-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을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반기별로 수급자를 구분하다 보니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도 하반기에 취업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함
- 가구유형별로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선정기준에서 ‘혼인 패널티’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⁵⁹⁸⁾
 - 단독 가구 2인이 동일한 소득을 유지한 채 혼인하고 맞벌이 가구가 됐을 때 장려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임.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수급률은 6.5%로, 단독 가구(27.0%)와 비교해 4배 이상 낮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의 차이(맞벌이 가구 3,800만원, 단독 가구 2,200만원)도 문제가 있으며, 출산율 관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맞벌이 가구 지원은 제약적인 소득상한 운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2 향후 논의 사항

- 향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를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소규모 영업장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을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평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대상 등에 대한 조정과 함께 혼인

597)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다보니, 지급액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기준을 인당 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598) 전병목, 「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 『재정포럼』제33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5.

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 확대 시 혼인 패널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절치 않은 수급자에 대한 향후 검증 등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언선 ☎ : 02-6788-4572

관련부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 : 044-204-3802

관세청

관세불복 대응역량 제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관세불복 제도는 위법·부당한 관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로서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사후적 권리구제로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관세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제기하는 관세소송이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일부 채택) 또는 재조사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채택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관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
- 관세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관세청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이, 조세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관세소송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함
- 관세불복 사건은 2020년 369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35건, 심사청구 40건, 조세심판청구 217건, 관세소송 77건)이 처리되었는데,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이뤄지는 과세전통지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59.3%, 관세소송 전단계에 이뤄지는 심사청구 및 조

세심판청구 인용률이 25%이며, 기각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관세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승소율이 26%로 관세청의 패소율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음⁵⁹⁹⁾

-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36.5%(처리 1,381건, 인용 504건)로 높은 편임
- 특히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나 관세사가 존재하는 조세심판청구의 경우 최근 7년 중 5개년의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21년 청구대리인 존재시 27.4%, 부존재시 16.7%, 2020년 각각 43.1%, 20%, 2017년 각각 49.1%, 25%, 2016년 34.7%, 26.8%, 2015년 각각 44.9%, 39.3%임⁶⁰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세소송에서의 납세자 승소율도 27.3%(판결 418건, 납세자 승소 114건)로 다소 높게 나타남(2020년 26%, 2019년 40.7%, 2018년 30.7%, 2017년 25.8%, 2016년 14.3%)

2 개선방안

- 관세불복 사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세액, 환급가산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다는 점에서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변호사나 관세사가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높은 연도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세청도 관세불복 전문가를 임용하여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액의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 부과처분 전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청구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관세부과 과정에 그 적법성 및 정당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관세청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 : 042-481-7680

599) 관세청, 「2021 관세연감」, 2021. 11. pp.108~109

600) 조세심판원,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2022. 3. p.59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사립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 제외)의 공공조달 규모는 2021년 기준 184.2조원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GDP, 명목) 대비 9.0%(정부예산 대비 30.5%)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 및 재정운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⁶⁰¹⁾
 - 공공재정의 상당 부분이 소비되는 공공조달 체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은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임.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지할 경우, 국가계약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공공조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특정 제재 기간(최대 2년)동안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당 기업 생존에 직결될 정도의 매우 강력한 처분임
 - 최근 1년간 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한 처분이 대부분을 이루며, 담합·부당하도급·뇌물공여 등의 사유로 인한 처분도 다수 있음
 - 다만, 현행 사법체계상 보장되어 있는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실제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짐

601) 조달청 보도자료,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발간”, 2022. 5. 3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별 현황 |

| 기간 | 합계 | 계약불이행·계약 조건 위반 등 | 담합 | 부당하도급 | 뇌물 | 기타 |
|-----------------|-----|------------------|----|-------|----|-----|
| 2019.7.~2020.6. | 42 | 4 | 31 | 1 | - | 7 |
| 2020.7.~2021.6. | 168 | 44 | 60 | 12 | - | |
| 2021.7.~2022.6. | 717 | 518 | 55 | 34 | 5 | 105 |

자료: 나라장터-부정당제재정보공개, 주요 제재사유별 검색을 통해 재작성(조회시점: 2022. 6. 21.)

주1: 제재만료 및 해제된 건은 미포함되므로 조회시점별로 현황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2019년 7월부터 지방계약법상 제재 현황이 시스템상 공개됨에 따라 2019. 7.부터 1년간 구분하여 작성

2 개선방안

■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계속하여 높으므로, ⁶⁰²⁾ 조달청 및 관련 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의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소송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소송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계약 관련 소송에 있어 법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청이 입증책임은 지는 요건(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에 대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⁶⁰³⁾

■ 부정당업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 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심의 일률적인 구조가 아닌 다양한 계약질서 관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경직성, 과잉규제 및 소송으로 인한 손실 등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계약제⁶⁰⁴⁾, 공정계약서약제⁶⁰⁵⁾ 등 제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 공공계약 쌍방이

602) 2020년도 1월~7월의 효력정지신청 인용률: 87.5%(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

603) 김민창·권순조,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12.

604)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금품수수·담합 및 알선·청탁을 통한 정보 제공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을 별도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도록 함

605) 발주기관 등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함

상호 견제하는 등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계속하여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042-724-7511

혁신조달 제도 활성화 방안

1 현황

- 혁신조달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2021년 기준 184.2조원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GDP, 명목) 대비 9.0%(정부예산 대비 30.5%)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 및 재정운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함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을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하여 혁신조달 제도를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계약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6%(118.9조원 규모, 2021년 기준)로 상당히 큰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의 기존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분적 성능 개발 및 특정 품질의 증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한계가 있음
- 혁신제품은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ast Track 1), ② 혁신시제품(Fast Track 2), ③ 기술인정 혁신제품(Fast Track 3)으로 구분되며,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짐
 -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⁶⁰⁶,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에게 구매 면책이 허용⁶⁰⁷되는데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와 판로지원을 위해 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
 - 구매목표제는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달성도를

6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6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제도임

-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사업임

■ 혁신조달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제품 지정 건수 및 구매 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혁신제품 지정·구매 실적 |

(단위: 건, 억 원)

| 구분 | | 유형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누계 | |
|-------|------------|-----|-------|---------|---------|---------|---------|
| 지정 품목 | | FT1 | - | 66 | 233 | 299 | |
| | | FT2 | 66 | 93 | 165 | 324 | |
| | | FT3 | - | 120 | 225 | 345 | |
| | | 합계 | 66 | 279 | 623 | 968 | |
| 구매 실적 | 조달청 시범구매 | FT1 | - | 86 | 123.1 | 209.1 | |
| | | FT2 | 22.8 | 194.3 | 250.6 | 467.7 | |
| | | FT3 | - | - | 66.9 | 66.9 | |
| | | 소계 | 22.8 | 280.3 | 440.6 | 743.7 | |
| | 수요기관 자체구매* | FT1 | - | 359.2 | 958.9 | 1,318.1 | |
| | | FT2 | 21.6 | 309.2 | 1,271.9 | 1,602.7 | |
| | | FT3 | - | 904.3 | 883.6 | 1,789.9 | |
| | | 소계 | 21.6 | 1,572.7 | 3,114.4 | 4,708.7 | |
| | 합계 | | | 44.4 | 1,853 | 3,554.9 | 5,452.3 |

*주1: 수요기관 자체구매는 중앙조달요청을 통한 구매, MAS(다수공급자계약물품)·우수제품 등 단가계약을 통한 구매, 수기실적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2 향후 논의 사항

■ 기술 연구개발과 조달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를 추구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나라 혁신조달 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서,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보다는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구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기술 연구개발 영역과 공공조달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투입 중심의 전통적인 R&D 시스템에서 수요기반형 R&D 시스템으로의 변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혁신 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향후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까지 연계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와 어느 정도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지 등 사업 성과 및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 혁신조달 활성을 위해 조직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혁신제품 지정 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등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혁신조달 제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⁰⁸⁾

■ 수요기관의 혁신수요 발굴 및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조달청을 비롯한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효율적인 혁신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시장 및 제품을 분석하며, 새로운 수요를 공공조달의 형태로 구성하는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 활용 및 사업 경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운·박인환 ☎ : 02-6788-4575/4578

관련부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과

☎ : 042-724-7347

608) 참고로, 혁신수요의 발굴·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혁신조달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789호)」가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관련

1 현황

-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광역자치단체(시·도)의 GRDP를,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기초자치단체 GRDP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음⁶⁰⁹⁾
 -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는 GRDP 통계는 생산·지출·분배 계정을 포괄한 ‘지역 소득’ 통계이며, 생산 연말 전년도의 잠정치와 다음 해에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음
 - 공표 주기는 1년이며, 공표 시기는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에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2022년 6월 기준) 시도별·경제활동별 GRDP 통계는 2020년의 잠정자료임⁶¹⁰⁾
 - 각 광역자치단체는 통계청과 달리 생산계정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별 GRDP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7개 시와 9개 도가 2019년도 자료까지 공표하였음
 - 7개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 세종시는 현재 GRDP 담당 부서가 없어 통계 자료를 작성·공표하고 있지 않음
 - 9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문제점

- 통계청의 GRDP 통계는 작성 기준시점과 공표 시점 간 시차 문제가 발생하여 현시점에서는 2020년 잠정통계까지 활용할 수 있음
 - 통계청의 확정 통계는 작성 기준년도 18개월 이후에 공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시 개별 시·도 단위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609)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GRDP를 추계하여 공표하지 않음

610) 2020년 확정자료는 국세·지방세 등 기초통계자료를 보완하여 '22년 8월말 공표될 예정

- 시의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연구기관들은 GRDP 성장률 등을 일회성으로 간접 추정하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영향 분석을 위해 광공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활용한 '20년도 지역별 실질 GRDP를 간접 추정하였음⁶¹¹⁾
- 기초자치단체의 GRDP 통계는 통계청보다도 시의성 문제가 더욱 크며, 공표 시점이 작성 기준년도 24개월 이후이어서 통계의 활용도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GRDP는 현 시점에서 '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공통적으로 시의성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정책 수립 시 필요한 평가 및 대책 마련이 지연됨
 - 이는 2016년 7월 통계청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⁶¹²⁾에서 지적된 이후 개선되지 않은 사안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시도별로 통상 담당관 1인이 GRDP 추계를 담당하고 있어 통계작성의 인력 부족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음

3 향후 논의사항

- 지역경제 정책 수립 시 GRDP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표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함
 - 시의성 제고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GRDP 통계작성 시 통계청의 잠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잠정치 및 확정치 체계의 분리 공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GRDP를 국가승인통계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효과적인 자료수집뿐 아니라 기관별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지정통계로 전환 시 각 시도별 통계작성 기관은 통계 조사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기초자료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GRDP 통계의 추계 및 공표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강화, 통계청과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네트워크 강화 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인욱 ☎ : 02-6788-4571

관련부처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 : 042-481-2599

611) 산업연구원의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021. 06. 29.) 참조

612) 제20대 국회 제34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16. 07. 01.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제고

1 현황

- 통계청은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농업면적조사와 농작물생산조사로 구성된 농업생산통계를 담당하고 있음

| 농업생산통계 |

| 목록 | 농업면적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승인번호 제114033호)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승인번호 제114004호) |
| 조사주기 | 경지면적조사: 매년 11월 재배면적조사: 매년 3, 5, 7, 9, 11월 | 7월~12월 |
| 조사기간 | 조사주기 당 약 3주 | 작물별 수확시기에 따라 실시 |
| 조사대상 | 경지면적 및 작물의 재배면적 | 표본조사 16종, 행정조사 37종 작물 |
| 조사방법 | 현지 실측 및 목측 조사 | 현지 실측 및 청취 조사(표본 16종) |

자료: 통계청 농업통계과 제출자료(2022.6.16.)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농업생산통계를 둘러싸고 통계와 관측자료의 불일치, 통계와 농업현장의 체감 수준 간 괴리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2019년~2021년 사이 통계청의 양파 생산량 및 재배면적 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613) 간 차이가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음
 - 2019년 통계청의 양파생산량 실측조사 결과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 간 27만 톤의 차이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양파 재배면적의 감소규모를 통계청은 25.6~12.9%로, 관측자료는 18.0%로 추정해 차이를 보인 바 있음
 - 2021년 양파생산량을 통계청은 약 1,577천 톤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약 1,370천 톤으로 발표하여 두 기관 자료 간 207천 톤 가량의 차이가 발생함
 - 긴 장마 및 태풍, 최악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유난히 심각했던 2020년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생산 예상량과 실수확량 간 평균의 차이가 3.4%로 크게 발생하면서 농업현장의 반발이 특히 심했음(614)

613) 통계청의 농업생산통계 외에 농업생산과 관련된 수치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하는 농업관측에 따른 관측자료가 있음

614)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쌀 예상량과 수확량의 평균 차이는 $\pm 0.8\%$ 정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통계청은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에 디지털기술 활용 확대, 현장조사 노하우 공유플랫폼 운영, 주요 정책고객, 전문가 등과 소통 및 협업 강화, 현장조사 과학화를 위한 딥러닝시스템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⁶¹⁵⁾

2 향후 논의 사항

- 통계와 관측 간 수치상 차이에만 초점을 맞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두 자료 각각의 역할과 활용목적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기본적으로 농업관측은 특정 시점의 생산 현황과 예측되는 미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수급과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생산통계와 그 조사방법과 활용목적 자체가 다름
 - 농업관측은 보통 수확 1~2개월 전의 조사를 토대로 농산물 생산 예측 자료를 발표하는데, 만약 시장이 이를 참고하여 수급을 조절할 경우 결과적으로 관측 자료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관측자료를 통해 농업생산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생산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며 그 결과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농업 자체의 특성때문에 통계 생산이 어렵고 전술한 바와 같이 통계와 관측 간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계청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함께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도 필수적임
 - 농업생산통계의 표본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객관성 확보와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기본적으로 농업 자체의 특성이나 우리나라 농업 구조 때문에 농업생산통계 업무의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계청 내 농어업통계국을 독립적으로 신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⁶¹⁶⁾

615)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제출자료(2022.6.16.)

616) 현재 농어업통계 작성에 통계청 전체 인력의 1/4 수준(통계조사 공무원 포함)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국' 단위의 조직없이 사회통계국 소속으로 농어업통계과와 농어업동향과가 농어업통계를 담당하고 있음[통계청 제출자료(2022.6.16.) 및 유선인터뷰(2022.6.28.);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최종 검색일: 2022.6.28.)]

- 농업통계 당국과 농업현장 및 농업정책 당국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농업통계 정확성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불안정한 농업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국 농업통계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계와 관측 자료의 근본적 차이, 불가피한 통계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 농업현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 : 02-6788-4594

관련부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 042-481-6954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59.6조원 규모(국가 총예산 대비 14.9%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의 16.8%인 102.3조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증가율 11.4%의 가파른 상승 폭을 보이고 있음
-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많아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및 허위 기법 발달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제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편,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인 및 업무처리자의 활동도 및 편의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e나라도움은 ①대민포털, ②업무처리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대민포털의 경우 일반인이 활용하기에 사용법이 복잡하여 고객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업무처리자가 활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등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개선방안

- 보조금 규모와 사업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 따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2년 5월,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바탕으로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과성이 미비한 사업의 경우 규모를 감축하는 등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⁶¹⁷⁾
 - 이러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2023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것임. 다만, 평가결과 통폐합 및 축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함.⁶¹⁸⁾ 합리적인 기준 및 원칙을 세워 사업 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부정수급 적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검증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모델의 탐지 정확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의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 지능형 모델은 실제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의 데이터를 통계모델이 분석하여 부정수급 설명력이 높은 핵심속성을 도출하여,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각 핵심속성별 위험도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부정수급 의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가 점검을 통해 최종 적발 및 환수조치 등 제재 처분하는 것임
 - 적발사례 및 보조사업 수행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탐지패턴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 보조금 사업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부처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의 활용 만족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정보원은 업무처리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 부분은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2024년까지 전체 영역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 장기계획상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

6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 지출 구조조정 추진”, 2022. 5. 30.

618) 2021년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 평가대상 사업의 43.2%를 통폐합·감축(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보조금 전체 사업수('21년 1,814개 → '22년 1,852개, 세부사업 기준) 및 예산규모('21년 97.9조원 → '22년 102.3조원)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수급 등의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보다 쉽고 친숙한 사이트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 : 02-6312-8310
한국재정정보원 보조금관리부
☎ : 02-6908-8760

차세대 디브레인의 안정적인 정착

1 현황 및 개요

- 2019년 12월부터 착수된 총사업비 1,557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브레인이 2022년 1월 정식 개통함.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업무 범위가 넓어진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과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등이 도입된 것이 특징임
 -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음. 챗봇을 통한 연중 상담이 가능해지고 멀티태스킹 및 업무 진행 알림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함
 - 13개 재정업무 처리에 국한되었던 기존 시스템에 부담금, 용자출연 사업 등 11개 재정업무 관리체계를 신규로 추가하는 등 총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재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함
 - 또한 AI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KODAS) 및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구축하여, 디브레인의 재정데이터에 사회경제행정 지표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함. 또한 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일자리·민생 등 주요 정책지표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하여 정책결정 및 상황 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한편, 지방재정(e호조), 지방교육재정(에듀파인)의 경우 별도의 재정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보조금사업(e나라도움), 복지사업(복지로) 등 대국민 수혜사업 역시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차세대 디브레인을 중심으로 각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연계·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짐
 - 특히,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합재정통계인 통합재정수지(GFS)와 국가부채통계(PSDS) 산출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각각의 재정정보를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수기작업을 통해 작성하였으나 차세대 디브레인에서는 시스템간 연계 및 통계산출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산출이 가능해짐
 - 또한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인 '열린재정'을 통해 개별 시스템의 주요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시각화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재정정보 공개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됨

2 향후 과제

- 시스템의 기능 확대 및 연계 강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신속히 교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보면, 시스템 개통 초기에 새로운 시스템과 외부 환경과의 연계 오류에 따른 수납지연 또는 수납결과 반영 지연 등이 발생함. 이에 대해 한국재정정보원 및 관계 기관은 기존 방식으로의 변경,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즉시 조치를 통해 시스템 오류 개선 및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또한 새로이 구축된 데이터분석 플랫폼 및 정책상황 관리시스템의 사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⁶¹⁹⁾
 - 데이터분석 플랫폼(KODAS)은 차세대 디브레인의 재정정보 및 그 외 경제·사회 데이터를 연계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석 패키지가 제공됨. 보안성이 낮은 데이터의 경우 온라인에서 활용하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오프라인 센터(올해 7월 세종 설치 예정)를 통해 제공됨.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전국 총 14개소 설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의 경우,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해당 시스템은 개별 분야별 권한이 있는 일부 공무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다양한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관련 재정정보 공개 및 활용 정도는 달리 설정되어야 할 것임. 보안문제 및 사용자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및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 : 044-330-1542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시스템운영기획부
☎ : 02-6908-8651

619)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1. 10.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활용도 개선 등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수출입 기업의 FTA활용 부담 완화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운영하고 있음. FTA-PASS는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발급 및 관리하는 시스템임
 - 대부분의 영세기업은 자체적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FTA-PASS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다만, 기본적으로 FTA절차가 복잡하고,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져 FTA-PASS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원산지정보원에서는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자격 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도 수행·관리하고 있음
 - 원산지관리사는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서 FTA관세법령에 의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 내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역할의 자격을 부여받음. 원산지실무사는 FTA 활용준비를 위해 원산지판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요건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저조하고 기업의 자격증 수요가 떨어지는 등 각 자격에 대한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개선방안

- FTA-PASS에 대한 기능 개선과 함께 외부 홍보활동을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수산물식품은 농어민의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물품 특성상 원산지 입증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가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⁶²⁰⁾
- 한편, 원산지정보원에서는 관세청 위탁교육 사업으로 FTA체계 전반 및 원산지증명 등의 교과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바탕으로 FTA-PASS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YES FTA 전문교육 집합과정 실적(2022. 1. ~ 2022. 6.) |

| 과정 | FTA 첫걸음 | FTA 활용 | FTA-PASS | 품목 분류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증명 | 인증 수출자 | 원산지 검증 | 합계 |
|------|---------|--------|----------|-------|----------|--------|--------|--------|--------|
| 교육횟수 | 19 | 13 | 10 | 7 | 8 | 8 | 11 | 9 | 85회 |
| 수료인원 | 315 | 199 | 76 | 77 | 95 | 90 | 103 | 72 | 1,027명 |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등 전문 자격의 수요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특히 원산지실무사의 경우,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출입기업의 취업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어야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것임. 이에 기업에 대한 자격 설명·홍보 등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원산지실무사에 대한 수요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관리사와의 통합 또는 전문교육 및 수료 위주의 전문인력 양성 등 해당 자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박인환 ☎ : 02-6788-4578

관련부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 : 031-600-0742

620) 관세청 고시(「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사항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하여 목록을 정비하여야 함(최근 2022년 1월 1일 개정)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음

| 상임위원회 | 정부부처 | 피감기관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
|-------------|-------|----------|--------|--------|--------------------------------|-----|
| 기획재정 위원회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74 | 96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 | 한국은행 | 20 | 26 | | |
| | | 한국수출입은행 | 13 | 15 | | |
| | | 한국조폐공사 | 6 | 8 | | |
| | | 한국투자공사 | 6 | 8 | | |
| | | 한국재정정보원 | 5 | 9 | | |
| | 국세청 | 국세청 | 31 | 88 | | |
| | 관세청 | 관세청 | 28 | 44 | | |
| | | 국제원산지정보원 | 6 | 5 | | |
| | 조달청 | 조달청 | 15 | 15 | | |
| | 통계청 | 통계청 | 11 | 14 | | |
| | | | 계 (건수) | 215 | | 328 |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 기획재정부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년 연속 | 1 |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관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 결방안,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 안 검토 | 다양한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설정 필요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2 | 기획재정부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 정확한 예측치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 수립 필요 | |
| | 3 |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수도권 분산 방안 마련 등 정책 다변화 필요 | |
| | 4 |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산제도 | 부처별 사업 성과목표 재점검 등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성인지 예산제도 전담 부서 신설 등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제도 개 선 검토 | |
| | 5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 |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마련 | |
| | 6 | 기획재정부 지방 재정분권 | 차질없는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 수행 필요 | 재정분권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
| | 7 |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산업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판 뉴 딜정책 운영 필요 | |
| | 8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 한 법령 개정 면밀 검토 | |
| | 9 | 기획재정부 공공계약 | 공공계약 입찰 및 관련 위원회 운 영 개선 필요 | 공공계약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 마련 | |
| | 10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인사 개선 | 공공기관 조직 및 인사운영의 관 리·감독 강화 | |
| | 11 | 기획재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 |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및 공무 직제 인사기준 마련 필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에 공정성 제고 필요 | |
| | 12 | 기획재정부 조직 관리 | 연구용역 공개비율 개선 등 기획 재정부 조직 및 운영관리 개선 |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등 기획재 정부 조직 및 운영관리 개선 | |
| | 13 | 기획재정부 조세제도 |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개 편 방안 검토 필요 |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 화 필요 | |
| | 14 | 기획재정부 신규 세원 확보 | 유튜버 등 신규 세원 출현에 대응 한 과세체계 및 제도 정비 필요 | 유튜버 등 디지털 신산업 관련 세 원 확보 | |
| | 15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등 조세지 출예산제도 개선 필요 | 조세지출예산서 정확도 제고 필 요 등 | |
| | 16 | 한국은행 가계부채 관리 정책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 |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 책 필요 | |
| | 17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 저금리·저물가에 대응한 물가안 정목표제 운영 필요 |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한 물가 안정목표제 운영의 전환 필요 |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18 | 한국은행 |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필요 | |
| 19 |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실효성 제고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
| 20 | 한국은행 | 화폐 수급 및 관리 | 원활한 화폐수급 및 적극적인 화폐관리정책 필요 | 원활한 화폐수급 및 화폐관리 강화 필요 | |
| 21 | 한국은행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정책대안 제시 필요 |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지표의 정확성 제고 필요 | |
| 22 | 한국은행 |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 |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직원 복리후생 개선 필요 | |
| 23 | 한국은행 |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 |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 | |
| 24 | 한국은행 | 지역본부 역할 |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수행 필요 |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수행 및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 |
| 25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 필요 | |
| 26 | 한국수출입은행 | 남북협력기금 운용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개선 필요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운용전략 점검 등 필요 | |
| 27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 관련 |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비율 감축 및 사업 재검토 필요 |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 중단 검토 | |
| 28 | 한국조폐공사 | 수익률 제고 | 수익률 제고, 공정경쟁 활성화 및 자회사 인력 처우 개선 필요 | 수익률 제고, 부채 및 성과에 대한 관리 필요 | |
| 29 | 한국투자공사 | 사회적 책임투자 |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및 선진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전략 참고 필요 | 국부펀드로서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필요 | |
| 30 | 한국투자공사 | 인사 관리 |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현직 인사 관리 강화 등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 31 | 한국재정정보원 | 기관 운영 | 공공기관 평가 등 조직 전반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재정정보원 기관 운영상의 개선 방안 마련 | |
| 32 | 국제원산지정보원 | 원산지 관리사 등 자격시험 | 문제오류 방지대책 등 원산지관리사·실무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필요 | 시험의 공정 관리 등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시험 개선방안 마련 | |

2 국세청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2년 연속 | 1 | 국세청 | 고액상습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2 | 국세청 | 역외탈세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 | 3 | 국세청 | 탈세 | 탈세 방지 및 적발 위한 노력 |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 등 대응 강화 필요 | |
| | 4 | 국세청 |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하기 위한 개선 필요 |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 |
| | 5 | 국세청 | 부동산 탈세 관련 | 부동산 관련 탈세 등 대응 강화 |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 및 불법 증여에 대한 단속 | |
| | 6 | 국세청 | 조세불복수단 | 조세불복수단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일원화 방안 검토 | 조세불복수단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일원화 방안 검토 필요 | |
| | 7 | 국세청 | 조세소송 관련 |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 | 8 | 국세청 | 납세자보호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 행정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 행정 개선 | |
| | 9 | 국세청 | 기관 청렴도 | 국세청 청렴도 개선 | 국세청 청렴도 개선 필요 | |

3 관세청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2년 연속 | 1 | 관세청 | 수입물품 안전 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감염병 관련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2 | 관세청 |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
| | 3 | 관세청 | 위해물품 통관 관리 | 위해물품에 대한 철저한 통관 관리 필요 | 위해물품 통관 관리 철저 필요 | |
| | 4 | 관세청 | 관세 체납액 대응 | 관세 체납액 징수를 제고 방안 마련 | 관세 체납 징수 강화 | |
| | 5 | 관세청 | 다국적기업 대응 | 과세자료 회피 다국적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

4 조달청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년 연속 | 1 | 조달청 |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의 실효 성 제고 방안 마련 | 입찰대행사의 행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 | 2 | 조달청 | 나라장터 경쟁체제 강화 | 나라장터의 공정성·경쟁성 제고 | 나라장터 쇼핑몰의 경쟁체제 강화 | |
| | 3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 | 4 | 조달청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 강화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환수 강화 | |

5 통계청

| | | 기관 | 정책주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2년 연속 | 1 | 통계청 | 공무직 근로자 등 처우개선 | 통계 도급조사원 근무조건 개선 | 공무직·기간제 조사원 및 도급 조사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 |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2일
발행 김만흠
편집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 6788. 4570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 2079. 9200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nars.go.kr>) '연구 보고서'의 '국정감사관련(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671-9444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712-10

© 국회입법조사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712-10

ISSN 2671-944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